차 례

제1장 일반현황 3

제1절 단양군의 일반현황 3
1. 단양군의 연혁 5
2. 단양군의 기본현황 6

제2장 의회현황 7

제1절 의정기본방향 9
제2절 의회연혁 10
제3절 의회조직 11
1. 기구표 11
2. 의장단 구성 11
3. 직원 정·현원표 12
4.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현황 12
5. 의회예산규모 12
6. 직원현황 13

제3장 의회구성 15

제1절 의원선거현황 17
1. 의원유형별 현황(연령, 학력, 직업) 17
2. 의원 입후보자 현황 18
3. 의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19
제2절 의회 개원현황 22

제4장 의정활동내용 27

제1절 회기운영 현황 29
제2절 각종의안 처리현황 45
1. 연도별 조례안 처리현황 47
2. 예산안 처리현황 109
— 1996년도 당초예산안 111
— 1997년도 당초예산안 119
— 1998년도 당초예산안 127
3. 결산검사 처리현황 137
— '94회계년도 결산검사 139
— '95회계년도 결산검사 144
— '96회계년도 결산검사 150
4.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155
— 환경시설물 현지조사 157
— '97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160
—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 167
— 공공시설물 전기이용 실태조사 174
5. 건의문 채택현황 185
—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인가 건의문 187
— 영월댐건설과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소 건의문 189
—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192
— 지역개발세 개정안에 관한 건의문 193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한문 195
—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삭도시설에 관한 건의문 198
—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을 위한 건의문 202
—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비 지원 건의문 205
제3절 행정사무감사 207
제4절 군정질문답변 239
제5절 의정일지 315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30

제1장 일 반 현 황

제1절 단양군의 일반현황

1. 단양군의 연혁
2. 단양군의 기본현황

1. 단양군의 연혁

▣ 연 혁

- o 삼 국 시 대 - 고구려의 적산현(단양)
  고구려의 을아단현(영춘)
- o 통일신라시대 - 한주 내제군의 속현(단양)
  신문왕대에 자춘현으로 개칭(영춘)
- o 고 려 시 대 - 고려초 단산현으로 개칭(단양)
  현종9년 원주의 속현(단양)
  공민왕대에 단산부(단양)
  강원도 원주군의 속현(영춘)
- o 조 선 시 대 - 태종대에 단양군으로 개칭(단양)
  태종대에 자춘, 세종3년 영춘으로 개칭(영춘)
- o 대 한 민 국 - 1914년 영춘면 편입으로 단양군(7개면)
- o 1976. 10. 1 - 영춘면 별방출장소 설치
- o 1979. 5. 1 - 단양면을 단양읍으로 승격
- o 1980. 12. 1 - 매포면을 매포읍으로 승격
- o 1985. 6. 1 - 단양읍 구단양 출장소 설치
- o 1985. 11. 1 - 적성면 각기출장소 설치
- o 1992. 1. 1 - 단양읍 구단양 출장소를 단성면으로 승격
- o 현 재 - 2읍 6면 2출장소

2. 단양군의 기본현황

▣ 위 치

- ㅇ 동 : 동경 128° 39′ 북위 37° 03′
- ㅇ 서 : 동경 128° 13′ 북위 37° 02′
- ㅇ 남 : 동경 128° 20′ 북위 36° 48′
- ㅇ 북 : 동경 128° 21′ 북위 37° 09′

▣ 인 구

- ㅇ 42,812명(남 21,726 여 21,086)

▣ 세대수

- ㅇ 13,534세대(농가 4,489 세대 9,045)

▣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 ㅇ 행정구역 : 2읍 6면 150개리 668개반
- ㅇ 행정조직 : 2시 13과 2사업소 2읍 6면
- ㅇ 공무원수 : 580명
  - 본청 239명, 의회 11명, 사업소 133명, 읍면 197명

▣ 면적 : 781.30㎢(도시계획구역 : 35.10㎢)

- ㅇ 임 야 : 646.72㎢(82.8%)
- ㅇ 농 지 : 80.62㎢(10.3%)
- ㅇ 기 타 : 53.96㎢(6.9%)

제2장 의 회 현 황

제1절 의정기본방향
제2절 연 혁
제3절 의회조직

1. 기구표
2. 의장단 구성
3. 직원 정·현원표
4.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현황
5. 의회예산규모
6. 직원현황

제1절 의정기본방향

의 정 방 향

1.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변하는 의회
2. 지방자치 역량을 증대하여 봉사하는 의회
3. 군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세부실천목표

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임시회, 정기회 운영
2. 군민의 여론과 의견에 부합되는 의회운영
3. 의회운영에 대한 홍보로 군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의회운영
4.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
5. 의정활동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의회상 정립

5만 군민과 함께하는 단양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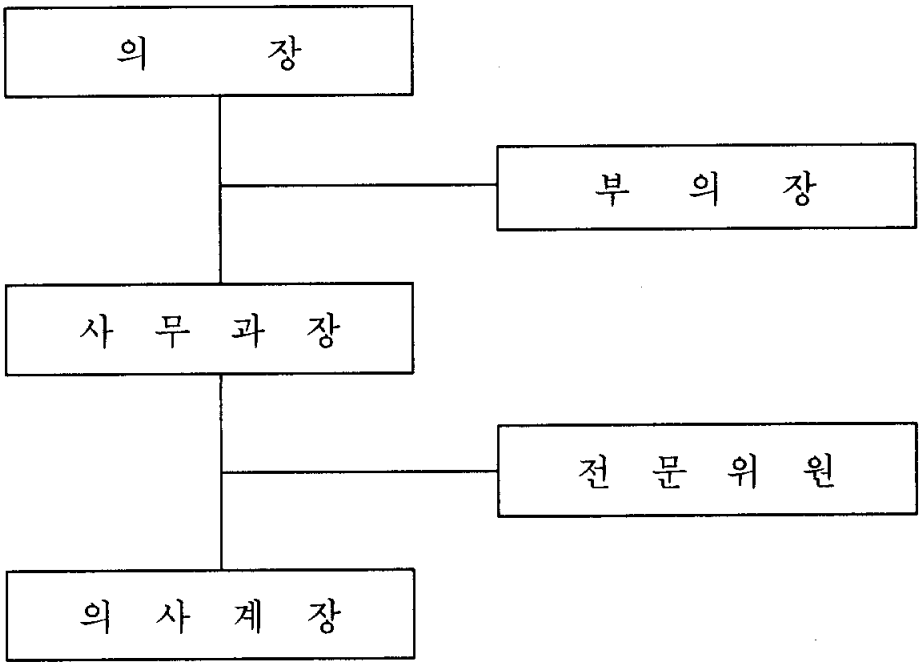
제2절 의회 연혁

▣ 연 혁

- ㅇ 1991. 3. 26 - 제1대 단양군의회 의원선거(7명 의원선출)
- ㅇ 1991. 4. 15 - 제1대 단양군의회 개원 및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완영, 부의장 조동형)
- ㅇ 1993. 4. 9 - 제1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지성구, 부의장 장용두)
- ㅇ 1994. 7. 2 - 지성구의장 사퇴
  제1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보선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 ㅇ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 ㅇ 1995. 7. 10 -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 및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완영, 부의장 최상우)
- ㅇ 1997. 1. 9 - 제2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김수영, 부의장 허수일)

제3절 의회조직

1. 기구표



2. 의장단구성

구 분	의 장		부 의 장	
	성 명	재임기간	성 명	재임기간
전반기	이완영 (李完永)	1995. 7. 8~ 1997. 1. 8	최상우 (崔相祐)	1995. 7. 8~ 1997. 1. 8
후반기	김수영 (金壽永)	1997. 1. 9~ 1998. 6. 30	허수일 (許樹日)	1997. 1. 9~ 1998. 6. 30

3. 의회사무과 직원 정·현원표

구 분	정 규 직						비정규직	
	계	5 급	6 급	7 급	8 급	기능직	계	일용직
정 원	10	2	1	2	-	5		
현 원	9	2	1	2	-	4	3	3
결 원	1	-	-	-	-	1		

4.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조 성 덕 (趙成悳)	1995. 3. 22~ 1996. 1. 31	사무과장
임 은 식 (林殷植)	1996. 2. 1~ 1998.6.30(현재)	사무과장
김 동 진 (金東鎭)	1995. 1. 1~ 1998.6.30(현재)	전문위원

5. 의회예산규모

(단위 : 천원)

연도순 / 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72,307	431,538	555,614	563,826	521,329 (6월30일 현재)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성덕	1995.3.22～1996.1.30
〃	〃	임은식	1996.2.1～1998.6.30(현재)
전문위원	〃	김동진	1995.1.1～1998.6.30(현재)
의사계장	지방행정주사	한상동	1994.1.1～1996.1.30
〃	〃	김중환	1996.2.1～1998.6.30(현재)
직 원	지방행정주사보	엄재창	1995.1.1～1997.1.2
〃	〃	송종호	1994.1.19～1998.6.30(현재)
〃	〃	박용택	1997.1.3～1998.6.30(현재)
속기사	기능9등급	김희제	1992.12.16～1997.3.31
〃	〃	박영분	1992.11.1～1998.6.30(현재)
〃	〃	박윤재	1997.4.1～1998.6.30(현재)
운전기사	〃	임해길	1992.8.1～1998.6.30(현재)
〃	〃	서정덕	1991.5.20～1998.6.30(현재)
직 원	〃	윤소영	1996.8.26～1998.3.9
일용직		이점순	1996.1.1～1998.6.30(현재)
〃		오영주	1997.1.3～1998.6.30(현재)
〃		신정숙	1997.4.1～1998.6.30(현재)

제3장 의 회 구 성

제1절 의원선거현황

1. 의원유형별 현황
   (연령, 학력, 직업)
2. 의원 입후보자 현황
3. 의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제2절 의회 개원현황

제1절 의원 선거현황

초대 단양군의회 의원 정수는 7명 이었으나 1992년 1월1일 단양읍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되면서 의원정수가 1명 증가된 8명으로 늘어나면서 명실공히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총 8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양군에서는 22명이 입후보하여 2.7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개 지역구(매포읍)에서는 이완영후보가 단독 입후보함으로 무투표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1. 의원 유형별현황

가. 연령별 현황

의원정수	계	35세 이하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비고
8	8	-	-	6	-	1	1	-	

나. 학력별 현황

의원정수	계	초졸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중퇴	대졸	대학원	비고
8	8	-	1	5	-	2	-	

다. 직업별 현황

의원정수	계	농업	상업	회사원	건설업	운수업	요식업	비고
8	8	5	2	1	-	-	-	

2. 의원입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단양읍(1)	1	趙道熙	남	52. 6. 7	도전리 185	상 업	단양공고졸	자유총연맹단양군지부장 민자당단양제1협의회장	1,761(25.7)	
	2	李揆陽	남	34.2.14	별곡리 463	무 직	단양초졸	단양군의원 별곡리장 농공단지유치추진위원장	1.384(20.2)	
	3	鄭文壽	남	46.6.6	별곡리 508	농 업	단양고퇴	민자당중앙상무위원 한국동굴환경연구회부회장	사퇴(95.6.21)	
	4	金圭泳	남	49.11.25	금곡리 85-3	제조업	경기공고졸	단양청년회의소회장 단양문화원감사	1.206(17.6)	
	5	金壽永	남	54.8.13	상진리 990	상 업	인천체전졸	단양청년회의소회장 단양초교육성회장	2.497(36.5)	당선
매포읍(1)		李完永	남	53.5.13	평동리 272	상 업	조선대 체육학과졸	단양군의원 민주평통단양군협의회장	무투표	당선
대강면(1)	1	朴昌洙	남	44.12.3	장림리 121	회사원	국립체신고졸	대강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 대강우체국장 단양군정자문위원	935(43.0)	당선
	2	金鎭浩	남	53.8.25	장림리 147-2	운수업	단국대 체육학과졸	충북택시조합이사 단양군체육회이사 단양군문화원이사	801(36.9)	
	3	崔勝培	남	56.6.17	용부원리 331	농 업	단양공고졸	13대대선대책본부기획실장 민자당중앙청년위원회장	437(20.1)	
가곡면(1)	1	李壽燮	남	45.7.10	보발리 594	농 업	보발초졸	보발리장	630(38.0)	
	2	李元奉	남	50.3.3	어의곡리 451	농 업	인천 선인상고졸	예비군중대장 재향군인가곡분회장 새마을가곡지회장	300(18.0)	
	3	金鍾泰	남	55.4.20	사평리 522-1	농 업	황지고졸	단양군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당중앙대의원	730(44.0)	당선
영춘면(1)	1	趙誠浦	남	42.6.28	상리 409-15	양조업	서울대 수의과졸	영춘양조장대표 영춘면자율방범대협의회장 영춘공수의사	462(16.6)	
	2	崔相祐	남	37.11.25	별방리 520	농 업	임현재건중중 퇴	별방의용소방대장 단양군재향군인회이사	1.211(43.4)	당선
	3	趙東衡	남	48.8.28	상리 106-1	농 업	충주고졸	단양군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1.115(40.0)	

선거구명	기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어상천면(1)	1	許樹日	남	53.4.6	임현리 242	농 업	제천농고졸	민자당어상천면협의회장 재향군인회어상천면회장	846 (51.7)	당선
	2	金榮珠	남	41.4.5	석교2 411-2	농 업	원주대 법학과2퇴	단양군의원 민자당단양특별자문위원	789 (48.3)	
적성면(1)	1	張用斗	남	54.5.2	각기리 17	농 업	제천농고졸	단양군의원 평통자문회의단양군간사	764 (55.8)	당선
	2	林龍源	남	52.2.28	소야리 65	농 업	선인고졸	적성면개발위원회부회장 단양군축우회장	606 (44.2)	
단성면(1)	1	張翊煥	남	56.2.24	가산2리 730	농 업	단양공고졸	단성면번영회장 단양군농민후계자협의회장	624 (37.1)	당선
	2	金泰成	남	35.9.8	북하리 156-8	농 업	단양공고졸	단양읍농협조합장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581 (34.5)	
	3	洪金植	남	43.3.20	하방리 156-6	건설업	취평초졸	바르게살기단성면협의회장 단성면하방리장	479 (28.4)	

3. 의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단양읍〉

단양군의회의원선거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보자별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조도희	이규양	김규영	김수영	계				
부재자	389	369	80	69	31	128	308	61	20	94.9	83.5
제 1	1.796	1.435	321	293	185	582	1.381	54	361	79.9	96.2
제 2	1.589	1.227	351	301	157	369	1.178	49	362	77.2	96.0
제 3	1.136	858	204	159	124	324	811	47	278	75.5	94.5
제 4	1.747	1.309	307	212	283	402	1.204	105	438	74.9	92.0
제 5	1.926	1.451	320	232	271	525	1.348	103	475	75.3	92.9
제 6	317	227	56	37	47	65	205	22	90	71.6	90.3
제 7	644	455	122	81	108	102	413	42	189	70.7	90.8
총 계	9.544	7.331	1.761	1.384	1.206	2.497	6.848	483	2.213	76.8	93.4

〈단성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장익환	김태성	홍금식	계				
부 재 자	65	61	26	15	13	54	7	4	93.9	88.5
제 1	769	623	178	131	280	589	34	146	81.0	94.5
제 2	613	484	117	296	56	469	15	129	79.0	96.9
제 3	237	187	58	65	57	180	7	50	78.9	96.3
제 4	526	404	245	74	73	392	12	122	76.8	97.0
총 계	2.210	1.759	624	581	479	1.684	75	451	79.6	95.7

〈대강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박창수	김진호	최승배	계				
부 재 자	63	60	20	18	16	54	6	3	95.2	90.0
제 1	1.594	1.324	565	431	270	1.266	58	270	83.1	95.6
제 2	505	402	162	144	76	382	20	103	79.6	95.0
제 3	509	420	160	178	57	395	25	89	82.5	94.1
제 4	87	79	28	30	18	76	3	8	90.8	96.2
총 계	2.758	2.285	935	801	437	2.173	112	473	82.9	95.1

〈가곡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이수섭	이원규	김종태	계				
부 재 자	50	49	18	14	12	44	5	1	98.0	89.8
제 1	1.313	993	329	120	486	935	58	320	75.6	94.2
제 2	619	482	120	158	184	462	20	137	77.9	95.9
제 3	320	235	163	8	48	219	16	85	73.4	93.2
총 계	2.302	1.759	630	300	730	1.660	99	543	76.4	94.4

〈영춘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조성포	최상우	조동형	계				
부 재 자	103	97	21	29	42	92	5	6	94.2	94.9
제 1	1.805	1.429	189	580	591	1.360	69	376	79.2	95.2
제 2	227	165	38	14	102	154	11	62	72.7	93.3
제 3	459	365	93	62	178	333	32	94	79.5	91.2
제 4	1.182	905	121	526	202	849	56	277	76.6	93.8
총 계	3.776	2.961	462	1.211	1.115	2.788	173	815	78.4	94.2

〈어상천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허수일	김영주	계				
부 재 자	61	61	31	28	59	2	0	100.0	96.7
제 1	790	690	384	261	645	45	100	87.3	93.5
제 2	230	195	113	75	188	7	35	84.8	96.4
제 3	666	512	179	300	479	33	154	76.9	93.6
제 4	338	280	139	125	264	16	58	82.8	94.3
총 계	2.085	1.738	846	789	1.635	103	347	83.4	94.1

〈적성면〉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 표 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수	투 표 율	유 효 투표율
			장용두	임용원	계				
부 재 자	69	63	45	16	61	2	6	91.3	96.8
제 1	677	550	328	184	512	38	127	81.2	93.1
제 2	584	485	220	246	466	19	99	83.1	96.1
제 3	464	368	171	160	331	37	96	79.3	90.0
총 계	1.794	1.466	764	606	1.370	96	328	81.7	93.5

제2절 제2대 의회개원

1. 의원등록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8명의 의원 모두 의회사무과에 의원등록을 마쳤다.

의원등록 결과 최연소 의원은 단성면 장익환의원(39세)이었으며 최연장의원은 영춘 최상우의원(58세)이었다.

의원등록을 모두 마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의원보감, 예산서등)와 의원명패등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4년(지방자치법 제31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규정(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94. 4.20)에 의하여 제2대의회의원 임기는 3년이다.

2. 최초 임시집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일 단양군수가 집회공고(제49회임시회)하여 '95년 7월 7일 10시에 제2대 단양군의회 원구성을 위한 최초 집회를 갖게 되었다.

최초의 임시집회에서는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원구성을 모두 마쳤다.

3. 의장,부의장 선출(전반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최상우의원이 의장선거를 주재하여야되나 최상우의원님의 사의 표명으로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 장용두의원님의 의사진행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1인과 부의장1인을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출하게 됨을 알리고 감표위원 1명(김종태의원)을 지명한 후 조성덕 의회사무과장 설명에 따라 의장선거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이완영의원이 7표, 김수영의원이 1표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이완영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으며(의장석교체) 뒤이어 실시된 부의장선거에서는 1차투표에서는 최상우의원이 4표, 박창수의원이 3표, 김종태의원이 1표로 과

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최상우, 박창수의원이 각 4표를 득표함으로서 과반수이상 득표한 분이 안계시므로 3차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최상우, 박창수의원이 2차와같이 동수이므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최상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4. 개원식

1995년 7월 10일 원구성(의장.부의장선출)을 마치고 11:30시에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의원 선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통하여 5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뒤이어 이완영 의장님의 개회사 및 정하모군수님의 축사를 마치고 곽일섭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인사소개를 끝으로 개원식을 마쳤다.

5. 개원사(의장 이완영)

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공사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하모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내빈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되었던 초대의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초대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반쪽의 지방자치로써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27 지방4대 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러한 역사적 중요한 시기에 제1대에 이어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에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본인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오직 군민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우리를 오늘 이자리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만 군민의 대변자이자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개인의 이익과 지역적인 이익을 떠나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과 지난 6월27일 4대 선거시 후보자로서 유권자이신 군민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겸허하고 의욕이 넘치는 자세 항시 유지하면서 군민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항시 귀를 기울이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전반에 만연하였던 권위주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상호견제와 대립보다 이해와 협력으로 군정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성숙한 모습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가운 질책을 통하여 올바른 군정이 수행되어 군민 복지 증진은 물론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이룩하는데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초대 의정활동시 군민여러분께 미숙하고 부족하게 보여 드렸던 점 개선하여 군민여러분 곁에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이 우리 의원들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곁들일 때만이 원만한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기탄없으신 충고와 지적을, 잘한 일에 대하여는 격려의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을 축하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양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이 완 영

6. 축사(군수 정하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을 5만군민과 함께 축하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지난 6월27일 실시한 4대 지방동시선거에서 민의에 의해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오늘 의원석에 함께 자리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초대 군의회 의원여러분의 공로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군민에 의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성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완성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정하여 지역의 살림과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율과 책임의 시대이며,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과 의회,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슬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밝고 희망찬 새단양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군은 지금까지 충주댐 수몰이주와 반복되는 수해 및 공해이주등 많은 시련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키워왔으며, 이제 그 꿈을 실현할 때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21세기 단양 비젼을 정립하고 군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떠나간 군민을 되돌아오게 하고 하늘이 주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단양관광을 세계 일류 명소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전국 제일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단양을 건설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남이 대신하여 주지 않는 만큼 우리 스스로 모든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열악한 지방재정도 튼튼한 자립경영 기반으로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민주적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을 쇄신하면서, 군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어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 및 군민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제2대 단양군의회 개원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열어줄 수 있는 희망찬 새단양 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여론이 집약되는 민의의 전당이 되고, 군정발전을 숙의하는 지혜의 전당으로 출발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10일

단 양 군 수 정 하 모

제4장 의정활동 내용

제1절 회기운영 현황
제2절 각종의안 처리현황

1. 조례안 처리현황
2. 예산안 처리현황
3. 결산검사 처리현황
4.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5. 건의문 채택현황

제3절 행정사무감사
제4절 군정질문 답변
제5절 의정일지

제1절 회기운영 현황

의회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제49회 임시회	1차 (7.7)	○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 ○ 제49회 단양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가 결
제50회 임시회 ('95.7.20 ~7.29)	1차	○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결 가 결
	2차 (7.21)	○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3차 (7.25)	○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4차 (7.26)	○ 군정질문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가 결
	5차 (7.27)	○ 군정질문의 건	
	6차 (7.28)	○ 군정질문의 건	
	7차 (7.29)	○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 (총9건 : 원안가결7,수정가결1,부결1) ○ '9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제51회 임시회	1차 (8. 4)	○ 제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후보 선출의 건 ○ 제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제52회 임시회	1차 (9.12)	○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53회 임시회 ('95.9.20 ~ 9.26)	1차 (9.20)	○ 제5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4.'95수해복구사업장 및 '95일반사업장 현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9.26)	○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5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54회 임시회 ('95.11.14 ~ 11.18)	1차 (11.14)	○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5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1.18)	○ '95.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55회 정기회 ('95.11.25 ~ 12.29	1차 (11.25)	○ '95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4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1.27)	○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업무계획 보고의 건	
	3차 (11.28)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4차 (11.29)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업무계획 보고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5차 (12.8)	○ '96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4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의 건 ○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인가 건의문 채택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6차 (12.14)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7차 (12.19)	○ '96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 ○ '95, '96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8차 (12.23)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5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 군정질문의 건	가 결 가 결
	9차 (12.26)	○ 군정질문의 건	
	10차 (12.27)	○ 군정질문의 건	
	11차 (12.28)	○ 군정질문의 건	
	12차 (12.29)	○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28건 : 원안가결22,수정가결5,부결1) ○ 제5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56회 임시회 ('95.3.5 ~3.9)	1차 (3.5)	○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매포 도시계획사업관련 의견제시의 건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2차 (3.6)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결
	3차 (3.7)	○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3차 (3.9)	○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8건: 원안가결4.수정가결2.부결2)	가 결
		○ 매포 도시계획 사업관련 의견제시 채택의 건	가 결
		○ '96.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가 결
		○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 건	가 결
		○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가 결
		○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57 임시회 ('95.4.22 ~4.29	1차 (4.22)	○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 환경시설물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 휴회의 건	가 결
	2차 (4.29)	○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가 결
		○ 환경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가 결
		○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원안가결
		○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	부 결
		○ '9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가 결
		○ 매포도시계획시설(도담삼봉 유원지)결정 및 도시 자연공원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가 결
		○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58회 임시회 ('96.6.13 ~6.21)	1차 (6.13)	○ 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2차 (6.19)	○ 군정질문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각종 공사계약과 군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3차 (6.20)	○ 군정질문의 건	
	4차 (6.21)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위 활동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14건: 원안가결10,수정가결2,부결1,유보1) ○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위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제59회 임시회 ('96.7.24 ~7.31)	1차 (7.24)	○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해외연수계획 승인의 건 ○ '95년도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7.25)	○ '96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3차 (7.26)	○ '96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4차 (7.31)	○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4건: 원안가결2,수정가결2) ○ '9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4차 (7.31)	○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60회 임시회 ('96.10.8 ~10.17)	1차 (10.8)	○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0.17)	○ '96.제5차 공유재산 변경동의안 ○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조례심사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7건: 원안가결4,수정가결2,부결1)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61회 임시회 ('96.10.29 ~11.2)	1차 (10.29)	○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6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1.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 ○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62회 정기회 ('96.11.25 ~12.28)	1차 (11.25)	○ '96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 '9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2차 (11.26)	○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9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결
	3차 (12.6)	○ 군정질문의 건	
	4차 (12.7)	○ 군정질문의 건	
	5차 (12.9)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6차 (12.11)	○ '97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5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7차 (12.20)	○ '96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6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8차 (12.24)	○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9차 (12.28)	○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5건: 원안가결1,수정가결2,유보1) ○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 ○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제63회 임시회 ('97.1.8)	1차 (1. 8)	○ 제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64회 임시회 ('97.3.5 ~3.11)	1차 (3. 5)	○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결
	2차 (3.6)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차 (3.7)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4차 (3.11)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조례심사특위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10건 : 원안가결7.수정가결2.유보1) ○ '97.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 단양군지역의료 보건계획 의결안 ○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65회 임시회 ('97.5.7 ~5.16)	1차 (5. 7)	○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수자원공사관련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5. 16)	○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제66회 임시회 ('97.7.10 ~7.18)	1차 (7.10)	○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6회계 단양군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가 결
	2차 (7.11)	○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차 (7.14)	○ 군정질문의 건	
	4차 (7.16)	○ 군정질문의 건	
	5차 (7.18)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단양군사무의 읍면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의 건 ○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원안가결 가 결
제67회 임시회 ('97.9.2 ~9.6)	1차 (9.2)	○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2차 (9.6)	○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11건 : 원안가결8, 수정가결3) ○ '97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 건 ○ 제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제68회 임시회 ('97.10.10 ~10.16)	1차 (10.10)	○ 제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2차 (10.16)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단양군의회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69회 임시회 ('97.11.10 ~11.15)	1차 (11.10)	○ 제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1.15)	○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6건 : 원안가결4,수정가결1,유보1) ○ '97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70회 정기회 ('97.11.25 ~12.29)	1차 (11.25)	○ 제70회 단양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 ○ '9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교통안전시설물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11.26)	○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3차 (11.27)	○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차 (11.28)	○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 ○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가 결 가 결
	5차 (12.11)	○ 군정질문의 건	
	6차 (12.12)	○ 군정질문의 건	
	7차 (12.22)	○ '98년도 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가 결 가 결
	8차 (12.24)	○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교통안전시설물현지조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댐관련지역현안문제해결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	가 결 가 결
	9차 (12.29)	○ '9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4건 : 원안가결4) ○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제71회 임시회 ('98.2.10 ~2.14)	1차 (2.10)	○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7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2차 (2.16)	○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의 건	
	3차 (2.17)	○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의 건	
	4차 (2.18)	○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의 건 ○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매포·단양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72회 임시회 ('98.4.20 ~4.29)	1차 (4.20)	○ 제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4.29)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총12건 : 원안가결6,수정가결2,유보4) ○ 제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가 결
제73회 임시회 ('98.5.6 ~ 5.8)	1차 (5.6)	○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휴회의 건	가 결 가 결 가 결
	2차 (5.8)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회 기	차수	부 의 안 건	처리결과
제74회 임시회 ('98.6.25 ~ 6.26)	1차 (6.25)	○ 제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차 (6.26)	○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제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 결

제2절 각종의안 처리현황

1. 연도별 조례안 처리현황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 연도별 조례안 처리현황

년 월 일	원안가결	부결	유보	수정가결	계
총 계	75	7	8	21	111
'95년도					
7. 7	6	1	0	1	8
7. 29	1	0	0	0	1
12. 29	21	1	0	5	27
'96년도					
3. 9	4	2	0	2	8
4. 29	4	1	0	0	5
6. 13	10	1	1	2	14
7. 24	2	0	0	2	4
10. 17	4	1	0	2	7
12. 28	1	0	2	2	5
'97년도					
9. 6	8	0	0	2	10
11. 10	4	0	1	1	6
11. 25	4	0	0	0	4
'98년도					
4. 29	6	0	4	2	12

■ 조례안 처리현황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	489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조례 제명중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로 개정	'95. 8. 제50회 임시회	가 결
2	490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재무과 소속 토지관리계 및 지적계 이체조정 ·지적 정보계 신설	"	가 결
3	491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본청 208명을 209명으로 조정(증1명):제2조 제1호 ※지방서기관 : 감 1명 지적직 : 증 2명	"	가 결
4	492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관계 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 위임사항을 붙임 별표와 같이 일괄정비	"	가 결
5	493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제2조 제3항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조인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사항"을 제3조로 함.	"	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	494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단양군수	본조례 조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하며 기구개편에 따라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함	'95. 8. 제50회 임시회	가 결
7	495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95. 7.	단양군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 수용정원, 시설 및 종사자 관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	수정가결
8	496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95. 7.	단양군수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설치된 노인회관을 노인회 단양군지회로 하여금 무상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노인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운영비는 노인회에서 부담하도록하여 노인회의 자율적 운영 및 노인회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므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함.	"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	541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11.	단양군수	본 조례 제7조(공포방법)에 조례등을 공포할 때에는 군보에 게재함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함.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10	542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11.	단양군수	본 조례 제3조(결정사항)중 제4항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를 삭제	"	원안가결
11	543	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5.11.	단양군수	·기금의 조성(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금 ·사업(제5조) : 기금조성에 필요한 수익사업(담배판매)을 수행 ·연간운용계획(제6조) : 기금관리자는 장학회와 협의 군수에게 출연기금의 액수, 방법, 시기등을 명시한 연간운용계획을 작성 ·기금의 관리(제9조) :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자의 지정(제10조) :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업부서의 실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으로 임명.	"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2	544	단양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장학생의 자격중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 · 장학생의 정원중 "15%(23명)이내"를 "20%(30명)이내"로 상향조정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13	545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기금의 조성(제2조) -군수가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 학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 · 융자대상(제3조) -융자대상 원칙을 준수하여 지원 · 위원회 설치(제4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상의 위원회 설치 · 융자한도 및 이율(제5조) -가구당 융자한도액: 소득자금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 1천만원이하 -2년거치 2년균등분 상환 -융자금의 대부이율: 연5%	"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4	547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재무과장	·지체장애인(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등급 1급내지 4급)의 조항을 장애인(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으로 확대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조례 4조)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16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15	549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단양군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10%로 상향조정 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시	발의자(제출자)	주요골자		
16	548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재무과장	·지급대상의 적정조정과 과년도 미수액 1년차 1% 지급(조례 제2·3조)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지급(조례제3조) ·징수포상금 금액은 개인당 분기별 150만원 이하 1건당 30만원을 초과 못하는 지급한도 금액 설정(조례제3조제2항) ·포상금지급은 군 인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도록 개정(조례4조)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17	551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	'95. 11.	단양군수	과태료 부과대상별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한 기준마련 1. 유휴지의 개발·이용·처분계획서 미제출자 : 500만원이하 2.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하 토지 미신고자 : 200만원이하 3. 토지거래 신고필증 교부전 계약 체결자 : 200만원이하 →적용기준 : 토지가액(50%), 토지소재지(10%), 학력(10%), 이유(30%)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8	546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	'95. 11.	단양군수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	'95. 11. 제55회 정기0회	원안가결
19	550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조례 제4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 명시조항 삭제 (조례 제13조제2항)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이내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규정추가 (조례 제22조) ·대부료 사용 요율 재조정(조례제2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상위법과 일치 및 중복조항 삭제(조례 제37조의1)	"	수정가결
20	552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폐지안	'95. 11.	단양군수	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1990. 3. 9 제1220호)를 폐지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21	553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쓰레기봉투 조달구입에 따라 조달청과 제조회사간에 체결된 쓰레기봉투 용량별 크기 및 두께를 변경 (조례 제11조 제3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중 용기수거폐기물의 롤온박스 1대당 부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3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 조정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선풍기, 타이어 등 대형폐기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22	557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장 포함 5인이내) ·단성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및 임차료 상환을 단양읍에서 분리조정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23	554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또는 계도할 수 있도록 정함(조례 제6조 제1항)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하도록 규정함(조례 제7조 제1항)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조례 제10조) ·폐금속류, 폐종이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조례 제14조 제1항)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24	555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95. 11.	단양군수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관·단체·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지원사업은 노인회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충·효·예절등 충효사상 고취,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며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25	556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5. 11.	단양군수	단양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노인회관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50회 단양군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바 제명을 비롯한 일부 조문 내용이 부적합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26	558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도예원의 기능 및 육성지원 근거 규정 · 관리 운영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리 운영계획 규정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27	559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제11조(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운반비 및 유류대)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 복구에 책임을 진다.	"	수정가결
28	561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일부 업종의 통·폐합단순화(6종→5종) -기준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기준 『영업1종』적용대상은 『업무용』으로 전환 -기준『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환 요금사용구간(2단계→5단계) -상수도 요율조정 23.5%인상 -시설분담금 50.4%인상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29	560	단양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5. 11.	단양군수	단양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30	563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기타수가)에 열구전색사업의 진료수가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토록 개정한다.	"	원안가결
31	564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단양군수	· 실과조정 -사회진흥과와 관광기능 통합⇒관광진흥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사회복지과 -산업과를⇒농정과로 명칭변경 -민방위과를⇒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	수정가결
32	565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본청 209명 ⇒212명(증3명) · 사업소 44명 ⇒31명(감13명) · 읍면 195명 ⇒206명(증11명)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33	566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95. 11.	단양군수	· 목적: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치: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 사업소의 관할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및 노인회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목군락지, 수질·위생처리장, 단양취수·정수, 배수지, 평동배수지 · 주요업무 -하수,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단양상수도 및 일반시설지의 운영관리 · 소장:지방행정사무관 · 공무원: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함. · 조례폐지 -단양군위생환경사업소, 단양군수질환경사업소, 단양군상수도사업소	'95. 11. 제55회 정기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34	567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단양군수	· 리장 정원 150⇒148(△2) -매포읍 매포1리, 우덕1,2리⇒우덕리(△2) -매포읍 안동 1,2리⇒안동리(△1) -대강면 용부원 1,2,3리⇒용부원 1,2,3, 4리(증1)	'95. 11. 제55회 정기회	원안가결
35	568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단양군수	· 668개반을⇒664개반 -신설 16개반→매포읍 평동리 5·6·8리(아파트신축) 대강면 당동리(연립신축) -폐지 20개반→매포읍 매포1리, 우덕1·2리, 하괴리, 안동1·2리, 영천리, 고양리(인구감소) 대강면 미노, 용부원리(인구감소 및 분구)	"	원안가결
36	577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2.	단양군수	·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본청 212명⇒본청 215(증3명)으로 개정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농업 9급 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37	578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6. 1.	단양군수	· 제2조(여비의 종류)와 제3조(국내여비 정액) 제5조(이전비) 제6조(현장지도여비)등 현실성 없는 부문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 · 제7조(준용규정)을 국내여비 규정준용과 국외여비 규정준용으로 세분화 하고 이를 명문화	'96. 3. 제56회 임시회	원안가결
38	579	단양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6. 1.	단양군수	·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하여 사고 방지와 비상사태에 대비 · 법정 연가일수를 근무년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최고 23일) · 연가 계획 수립시 부모생신일과 기일이 포함되도록 명문화 ·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허가	"	원안가결
39	580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6. 2.	단양군수	· 근속기간이 20년이상된 자중 군정에 기여한 자를 포상대상으로 규정(조례 제2조)	"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40	581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1.	단양군수	·사용료 일부신설 및 요금인상 :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 조례개정 ·입장료인상 : 다리안지구에 한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 조례개정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단양군민에 한하여 국민관광지 이용시 주민등록증등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를 감면	'96. 3. 제56회 임시회	수정가결
41	582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1.	단양군수	·주차장 사용료 인상 :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조례 개정 ·주차장 사용료 감면 : 단양군민에 한하여 단양군 지정관광지내 주차장 이용시 주민등록증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료의 50%를 감면	"	수정가결
42	583	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	'96. 1.	단양군수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충청북도 환관 31720-290('93. 3.9)호에 의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 조례준칙안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43	601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 4.	단양군수	·종전까지는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를 읍·면. 출장소에서만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에서도 군수명의로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교부토록 함.	'96. 4 제57회 임시회	원안가결
44	602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96. 4.	단양군수	·기금의 조성(제2조) ⇒군수가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이자 수입. 기타자금. ·융자대상(제3조) ⇒융자대상 원칙을 준수하여 지원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융자시기(제4조)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한 반기말 년2회 구분시행 ·융자한도 및 이율 (제5조) ⇒마을단체 : 2,000만원~1억원이하 ⇒가구 : 1,000만원이하 ⇒융자조건 및 이율 : 2년거치 2년균분상환 (년3%)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45	603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 4.	단양군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동법 제196조의 5, 동법 제238조의2 동법 제279조, 동법 제290조 ·단양군군세조례 6조의 2, 15, 19, 21, 51, 54조	'96. 4 제57회 임시회	원안가결
46	604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96. 3.	단양군수	·제3조(정비계획 수립)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제5조(점검)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보존 한다. ·제9조(유지보수)관리자는 유지·보수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한다.	"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47	605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 4.	단양군수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내용중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감면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짚형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조정.	'96. 4 제57회 임시회	원안가결
48	616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본청215명⇒217명으로 개정(순증 2명) ※정원승인 -민방위재난관리 안전지도·점검 및 상황관리 인력보강 : 1명 -가스 안전관리 인력보강 : 1명	'96. 6 제58회 임시회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49	617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 85㎡→100㎡)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중복감면 배제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여 보완	'96. 6 제58회 임시회	원안가결
50	618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본 조례 제6조 제4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함.	"	원안가결
51	619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본 조례 제5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함.	"	원안가결
52	620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본 조례 제3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53	621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본 조례 제2조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96. 6 제58회 임시회	원안가결
54	622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용어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공업용지⇒산업단지로 규정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규정 -현 적용대상 :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가 적용규정 : 군수가 조성하는 산업용지(소규모용지)	"	수정가결
55	623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용어의 정비 : 농공지구⇒산업단지로 규정	"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시	발의자(제출자)	주요골자		
56	624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조례상 별도로 규정된 시장 사용료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고시하여 징수토록 함.	'96. 6 제58회 임시회	원안가결
57	625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	'96. 6.	단양군수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 보
58	627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명칭중 "두항지구보건진료소"를 고평지구보건진료소"로하고 ·두항지구보건진료소 및 가산지구보건진료소, 노동지구보건진료소의 소재지중 "단양두항"을 "단성 고평"으로 "단양 가산"을 "단성 가산"으로 "대강 노동"을 "단양 노동"으로 하며 ·제4조(보건진료원)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59	626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 5.	단양군수	·건폐율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하였음. ☞ 일반공업, 전용공업, 군공업지역 : 60%에서 8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음. ☞ 용도지역외 지정이 없는 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 : 60%에서 8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음. ·용적율(건축법 시행령 제79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400%로 개정하였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96. 6 제58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59	626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 5.	단양군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 제72조의2)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인근주민간의 분쟁등을 조정하고자 신설하였음.	'96. 6 제58회 임시회	원안가결
60	628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의 제3조(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원안가결
61	629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6. 6.	단양군수	·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의 제2조(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2	642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96. 7.	단양군수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횟수 : 연 2회(제2조) ·주민공개대상(제3조) ·공개방법 : 주민이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제4조) ·공개의 제한(제5조) ·사무인계 인수로 인한 공개 :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제6조)	'96. 7. 제59회 임시회	수정가결
63	643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7.	단양군수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본청 215명⇒217명으로 개정(순증 2명) ※정원승인 -민방위재난관리 안전지도·점검 및 상황관리 인력보강 : 1명 -가스 안전관리 인력보강 : 1명	"	원안가결
64	644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6. 7.	단양군수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5	645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96. 7.	단양군수	·기금의 조성(제3조):단양군의 출연금. 회원의 회비 ·기금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제5조):농촌지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이내 구성 ·기금의 관리(제10조):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식금으로 사업추진 ·운용기금의 사용(제12조):농촌후계세대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	'96. 7. 제59회 임시회	수정가결
66	658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내무과 감사기능 및 재무과 경영사업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 〈기구〉 -내무과 감사계 및 재무과 경영사업계→기획실로 이관(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 〈정원〉 -기획실장 지방행정 5급→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4~5급으로	'96. 10. 제60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7	657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경기장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농촌문화체육센타, 테니스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이용할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국가 또는 국경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청소년대상 행사, 체육동호인 행사 등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96. 10. 제60회 임시회	부 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7	657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96. 10. 제60회 임시회	부 결
68	659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건축물관리대장 이관에 따른 지적과 인력보강 -본청 217명→218명으로 (증 1명) ※지방지적·건축7급 1명(순증)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69	660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96. 10.	단양군수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규정 ·기금의 지원사업은 노인회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기타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96. 10. 제60회 임시회	원안가결
70	661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용조례안	'96. 10.	단양군수	·처리센타의 설치 장소: 단양군청 농정과(제2조) ·처리센타의 업무(제4조) -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구제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에 조정권고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수 7명(제5조, 제6조)	"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1	662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요금감면 대상추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100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 국가유공자중 보철대상자 운전 차량에 대하여는100/100 ·주차거부 대상추가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삭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음. ·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삭제 -법 개정으로 주차장정비지구 조항 삭제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적용 -부설주차장설치(시행령 제6조제1항)	'96. 10. 제60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1	662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6. 10.	단양군수	·부설주차장 설치거리 관련규정완화 -주 건축물로부터 설치가능거리 완화(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현행 200m⇒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일반이용 제공 관련사항 구체화 규정 ※이용대상, 이용시간, 주차요금등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님으로 주차장법을 따르도록 삭제함.	'96. 10. 제60회 임시회	원안가결
72	663	단양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96. 10.	단양군수	·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의 보고,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규정	"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3	695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경기장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농촌문화체육센타, 테니스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국가 또는 국경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청소년대상 행사 체육동호인 행사 등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96. 12 제62회 정기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3	695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센타내 볼링장 시설공간 면적은 임대계약에 의해 관리 운영하며 임대계약자는 본 조례의 제반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6. 12 제62회 정기회	수정가결
74	696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96. 11.	지적과장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	"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5	697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징수요율조정기준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 : 50~100원 조정 -징수요율이 350원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 : 100원 조정 -징수요율이 600원 초과인 경우 : 200~500원 초과 ·요율조정효과 -원가보상율 : 28.7%(현요율/원가분석액) -인상율 : 21.2%(요율감액/현요율) -현실화율 : 37.0%(요율조정액/원가분석액) ·징수요율조정 내역 -총괄 : 16항 75종 -항목조정 : 16항 69종 ·항목신설 : 12개항 39종 -가축자가 사육 사실증명 : 1통당 400원 -미분배농지 증명 : 1통당 400원 -공부열람 및 공부 부본열람	'96. 12 제62회 정기회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5	697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기본통(시간당)1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건당 1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연도별 필지당 400원 나. 토지, 임야 대장기재 : 연도별 필지당 200원 -행정 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1통당 500원 -병의원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료 : 1건당 70,000원 나. 병원료 : 1건당 50,000원 다. 의원료(치과, 한의원, 조산소 포함) : 1건당 30,000원 -의료기관 개설 장소의 변경 : 1건당 2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 1건당 10,000원 -영업허가 ~이하생략~	'96. 12 제62회 정기회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76	698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96. 12.	단양군수	·계곡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 지정운영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관찰 ·계곡수 보호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고취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등	'96. 12 제62회 정기회	수정가결
77	699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12.	단양군수	·농촌지도기구(농촌지도소)지도직 공무원 지방직화 (33명)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27명. 지방생활지도사 3명 ·시설관리사업소 기계직 보강 -본청 전기 기계 9급 1명을 →사업소로 조정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 제3호. 제4호 -군본청 : 218명을 → 217명으로 -직속기관 : 80명을 → 113명으로 -사업소 : 31명을 → 32명으로 조정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시	발의자(제출자)	주요골자		
78	701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97. 3.	단양군수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 매포 공공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척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하며,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도서관장은 소재지 읍장이 겸직하며,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97. 3. 제64회 임시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 (제출자)	주 요 골 자		
78	701	단양군매포도서관 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97. 3.	단양군수	·도서관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도서관 이용열람료는 무료로하며 다만 복사료 이용수수료는 유료로 한다.	'97. 3. 제64회 임시회	수정가결
79	702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7. 3.	단양군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신설 (제16조의2) ·"근속"기간을 "재직"기간 정정 (제26조6항)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 및 3항 규정을 적용 (제18조3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3항) ·5일이내 재해구호 휴가신설 (제23조9항)	"	원안가결
80	703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7. 3.	단양군수	·제4조제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하고 제2항중 "별표"를 "별표 1"로 개정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1	705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97. 3.	단양군수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이내 임기 4년 (제2조, 제4조)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보건소장 ·기능 :군수의 자문기관 (제3조) ·회의 (제7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결정 ·의견청취 : 필요시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 (제8조)	'97. 3. 제64회 임시회	수정가결
82	709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11.	지적과장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1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3	708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 징수요율조정기준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 : 50~100원 조정 -징수요율이 350원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 : 100원 조정 -징수요율이 600원 초과인 경우 : 200~500원 조정 · 요율조정효과 -원가보상율 : 28.7%(현요율/원가분석액) -인상율 : 21.2%(요율감액/현요율) -현실화율 : 37.0%(요율조정액/원가분석액) · 징수요율조정 내역 -총괄 : 16항 75종 -항목조정 : 16항 69종 · 항목신설 : 12개항 39종 -가축자가 사육 사실증명 : 1통당 400원 -미분배농지 증명 : 1통당 400원 -공부열람 및 공부 부본열람	'97. 3. 제64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3	708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1.	단양군수	☞기본통(시간당)1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건당 1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연도별 필지당 400원 나. 토지. 임야 대장기재 : 연도별 필지당 200원 -행정 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1통당 500원 -병·의원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료 : 1건당 70.000원 나. 병원료 : 1건당 50.000원 다. 의원료(치과. 한의원. 조산소 포함) : 1건당 30.000원 -의료기관 개설 장소의 변경 : 1건당 2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 1건당 10.000원 -영업허가 ~이하생략~	'97. 3. 제64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4	710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	'96. 6.	단양군수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7. 3. 제64회 임시회	유 보
85	712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 2.	단양군의회의장	·제8조제1항의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란 "6,500"을 각각 "10,000"으로 하며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의장, 부의장란의 숙박비 "20,700"을 "41,000"으로 식비 "11,000"을 "25,000"로 하고 의원란의 숙박비 "16,200"을 "19,500"으로 식비 "10,500"을 "18,000"로 함. ·제8조2항의 별표2(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의장, 부의장란의 "130"을 "137"로 의원란의 "114"를 "120"으로 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6	711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 2.	단양군의회의장	·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중 "3일이내"를 "7일이내"로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도모코자 함.	'97. 3. 제64회 임시회	원안가결
87	738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7. 7.	단양군수	· 관계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그 권한 위임사항을 별표와 같이 일괄정비코자 함. · 총 34건중 개정 건수 11건 -위임사무명개정 4건 (재무과 1, 환경위생과 2, 산림과 1) -관계법령개정 2건 (농정과 1, 산림과 1) -삭제 4건 (농정과 2, 도시과 2) -신설 1건 (도시과 1)	'97. 7. 제66회 임시회	유 보
88	747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 현행 조례중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 전반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천동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총칙 및 명칭, 규칙, 위치, 관리구역과 관리운영, 위탁관리, 공과금 부담등을 내용으로하여 각 조항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함.	'97. 8. 제67회 임시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89	745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 제3조(결정사항)중 -제6호의 "군납"을 삭제하고 -제10의 "물가대책"은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11호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심사"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 별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에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협의회,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심사 위원회, 대여 양곡 결손처분 위원회, 자동차 운수인면허심사 위원회, 취락지역개발 위원회는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관리 위원회와 가정의례심의 위원회를 사회복지과로, 농지위원회와 농지개발 심의 위원회를 농정과로 하고자 함.	'97. 8. 제67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0	746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 제5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조정 ·단양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조정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조정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조정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 : 제5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조정	'97. 8. 제67회 임시회	원안가결
91	748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현행 조례중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반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유료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인등을 내용으로 조항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2	749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입식자 선정시 현행 집단마을 선정이 곤란하여 자활의욕이 높은 영세민 가구중에서 선정(제2조) ·영세민 입식 한우의 입식 기준 두수를 현행 가구당 1두에서 가구당 5두이내로 입식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3조)	'97. 8. 제67회 임시회	수정가결
93	750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공동(공설)묘지 추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제3조4항) -"산림조합장"을 "임업협동조합장"으로 "단위농협장"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명칭변경	"	원안가결
94	751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97. 8.	단양군수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입 및 세출 : 따로 붙임 "조례(안)"과 같음.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5	752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97. 8.	단양군수	· 기금의 조성:적립예산금, 기금의 운영이자, 기타 잡수입 · 기금의 운용관리:운영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탁관리 · 기금의 용도: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 회계공무원:기금 운용관, 기금분임 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정 · 결산 및 보고:다음 회계년도 3월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97. 8. 제67회 임시회	원안가결
96	753	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7. 8.	단양군수	· 재해대책본부의 운영: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등 기타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7	754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7. 8.	단양군수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단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제2조)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제3조)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임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제4조, 제5조) ·전문인력등의 배치(제6조) -군수는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전문인력을 따로 정함.	'97. 8. 제67회 임시회	원안가결
98	774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별표 1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중 -제2항 가호 5번밑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삽입 -제2항 라호 1번인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삭제	'97. 11. 제69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99	773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법정리간 경계조정 -단양읍 심곡리 22필지(공업단지내)→단양읍 상진리로 편입 -대강면 두음리 2필지(국도 우회도로 신설지역)→대강면 장림리로 편입 -적성면 하리 8필지(경지정리지구)→적성면 현곡리로 편입 -적성면 상리 11필지(경지정리지구)→적성면 하리로 편입 -적성면 현곡리 12필지(경지정리지구)→적성면 하리로 편입	'97. 11. 제69회 임시회	원안가결
100	775	단양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임무: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 위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협조, 재해응급조치, 방재의 날 행사참여등 · 조직: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관련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등 · 단장:읍면장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 · 편성:본부 및 경계반(10명 내외), 복구반(30명 내외), 구호반(10명내외)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01	776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97. 11.	단양군수	·점용료의 산정기준:회계연도별 년액(1년미만일때에는 월액) ·점용료의 감면: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기준 ·점용료의 징수시기:점용허가연도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로 하고 그이후 연도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로 함. ·징수: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 징수 ·점용료등의 반환	'97. 11. 제69회 임시회	유 보
102	778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조례중개정영조례안	'97. 11.	단양군수	·현행 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조례제명을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내용중 "천동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하며 관리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리구역에 온달국민관광지를 포함하여 개정함.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03	777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의 유지. 보수. 개량.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람요금은 성인 2,500원 군경 및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며 단체관람자는 성인 2,000원 군경 및 학생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한다. · 관람료의 면제자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증서 또는 수첩 소지자 -기타 군수(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금액 결정권자)가 허가한 자	'97. 11. 제69회 임시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04	812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의 임기 및 수당에 관한 사항	'97. 12. 제70회 정기회	원안가결
105	813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조례책자참조	"	원안가결
106	814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 12.	단양군수	·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 ·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 1을 개정하며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2를 신설 ·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함.	"	원안가결
107	815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7. 11.	단양군수	·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08	830	단양군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	'98. 4.	단양군수	·제2조(대상):보상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군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선정방법):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4조(보상기준):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 ·제5조(연구지원):연구수행에 필요할 경우 행·재정지원 ·제6조(사후관리):보상된 논문의 군정반영	'98. 4. 제72회 임시회	유 보
109	834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의 확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차량소유여부 판단 보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함.	"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0	831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공인의 종류 및 정의 -종전 단양군 공인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고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는 규정신설 ·공인의 비치사용 -군수 공인은 내무과에 보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서 비치 -군수의 읍·면 전용공인 및 읍·면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 비치조항 삭제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재료 -군수 공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한 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 세로 같은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신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신설	'98. 4. 제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0	831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 공고내용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사유 -신조, 개각 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신조, 개각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98. 4. 제72회 임시회	원안가결
111	832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 4.	단양군수	· 협의회 심의사항 -취약지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협의회구성 및 운영 -협의회 의장 포함 10인이상 20인이내 -분야별 간사를 둔다(총무, 민방위, 심리전 담당간사) ·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 -지원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은 부읍면장)이 된다.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기획감사실장(읍면은 총무계장)이 상황실장이 된다. -지원반은 반장과 4~9인으로 구성하며 유관과장(읍면은 계장급)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가 반장이 된다.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2	833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납세자권리보호 관련 규정 신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납부제도 도입 ·군세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확대 ·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로 조례의 체계화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체계 구축	'98. 4. 제72회 임시회	수정가결
113	83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조례제4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규정추가(조례제22조)	"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3	83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납허용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조례제23조)	'98. 4. 제72회 임시회	유 보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3	83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상위법(지방재정법)과 일치 및 중복사항 삭제(조례제37조의1)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추가신설(조례제37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조례제39조의2)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져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 함(조례제39조의3)	'98. 4. 제72회 임시회	유 보
114	836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98. 4.	단양군수	·청결의날 -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함. ·운영방법 -참여대상: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 -활동장소:거주지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 주변	"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5	837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목으로 분류함.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정함. · 폐기물관련 영업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 배부할 때 1인당 매월 60ℓ를 공급하던 것을 1세대당 매월 60ℓ로 정함. -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98. 4. 제72회 임시회	수정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6	838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98. 4.	단양군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정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우선 실시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98. 4. 제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일련번호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내용			심의일자	심의결과
			일 시	발의자(제출자)	주 요 골 자		
117	839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8. 4.	단양군수	· 기금의 조성:적립금, 기금의 운영이자, 기타 수입금등 · 기금의 관리:재난관리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 · 기금의 용도:재난관리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기금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정 · 결산 및 보고: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운용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98. 4. 제72회 임시회	원안가결
118	841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4.	단양군수	·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9조제2항 별표1의 수수료 대인 700원을 현실정에 맞게 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대인 700원→1.000원)	"	원안가결

2. 예산안 처리현황

- 1996년도 당초예산안
- 1997년도 당초예산안
- 1998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96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96당초예산		'95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57,203,605	100.00	50,846,629	100.00	6,356,976
세입	지방세수입		5,218,400	9.12	4,974,518	9.78	243,882
	세외수입		7,811,263	13.66	7,726,940	15.20	84,323
		경상적세외수입	4,346,326	7.60	3,974,916	7.82	371,410
		임시적세외수입	3,464,937	6.06	3,752,024	7.38	△287,087
	지방교부세		23,359,001	40.83	19,650,001	38.65	3,709,000
	지방양여금		6,808,500	11.90	4,968,320	9.77	1,840,180
	조정교부금						
	보조금		14,006,434	24.49	10,326,839	20.31	3,679,595
		국고보조금	6,279,281	10.98	5,570,397	10.96	708,884
		시·도보조금	7,727,153	13.51	4,756,442	9.35	2,970,711
	지방채		7		3,200,011	6.29	△3,200,004
	경상예산		21,767,312	38.05	19,168,407	37.70	2,598,905
		인건비	10,764,340	18.82	10,205,443	20.07	558,897
		기준경비	4,514,757	7.89	3,427,498	6.74	1,087,259

세출		관서운영비	644,150	1.13	652,435	1.28	△8,285
		경상적경비	5,844,065	10.22	4,883,031	9.60	961,034
	사업예산		31,747,215	55.50	29,026,675	57.09	2,720,540
		국고보조(경상)사업	375,049	.66	802,354	1.58	△427,305
		국고보조(사업)사업	9,431,268	16.49	7,554,721	14.86	1,876,547
		지방양여금사업	5,588,034	9.77	5,030,755	9.89	557,279
		시·도비보조사업	9,722,372	17.00	9,059,142	17.82	663,230
		자체(신규)사업	5,642,465	9.86	6,085,774	11.97	△443,309
		자체(계속)사업	988,027	1.73	493,929	.97	494,098
	채무상환		1,904,421	3.33	1,619,928	3.19	284,493
		지방채(국내)상환	1,904,421	3.33	1,619,928	3.19	284,493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1,784,657	3.12	1,031,619	2.03	753,038
		예비비	1,775,555	3.10	1,025,619	2.02	749,936
		기타	9,102	02	6,000	.01	3,102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6당초예산		'95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53,952,137	100.00	46,789,592	100.00	7,162,545
세입	지 방 세 수 입		5,218,400	9.67	4,974,518	10.63	243,882
	세 외 수 입		5,088,137	9.43	4,283,694	9.16	804,443
		경상적세외수입	2,835,581	5.26	2,361,754	5.05	473,827
		임시적세외수입	2,252,556	4.18	1,921,940	4.11	330,616
	지 방 교 부 세		23,359,001	43.30	19,650,001	42.00	3,765,045
	지 방 양 여 금		6,808,500	12.62	4,968,320	10.62	1,840,180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3,478,093	24.98	9,713,048	20.76	376,045
		국 고 보 조 금	5,858,898	10.86	5,081,575	10.86	777,323
		시·도 보 조 금	7,619,195	14.12	4,631,473	9.90	2,987,722
	지 방 채		6		3,200,011	6.84	△3,200,005
	경 상 예 산		21,309,534	39.50	18,790,906	40.20	2,518,628
		인 건 비	10,764,340	20.00	10,205,443	21.80	558,897
		기 준 경 비	4,514,757	8.40	3,427,498	7.30	1,087,259

세출		관서운영비	644,150	1.20	652,435	1.40	△8,285
		경상적경비	5,386,287	10.00	4,505,530	9.60	880,757
	사업예산		30,310,245	56.20	26,565,961	56.80	3,744,284
		국고보조(경상)사업	375,049	.70	802,354	1.70	△427,305
		국고보조(사업)사업	8,898,800	16.50	6,937,398	14.80	1,961,402
		지방양여금사업	5,588,034	10.40	5,030,755	10.80	557,279
		시·도비보조사업	9,722,372	18.00	9,059,142	19.40	663,230
		자체(신규)사업	5,465,990	10.10	4,576,312	9.80	889,678
		자체(계속)사업	260,000	.50	160,000	.30	100,000
	채무상환		591,932	1.10	407,106	.90	184,826
		지방채(국내)상환	591,932	1.10	407,106	.90	184,826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1,740,426	3.20	1,025,619	2.20	714,807
		예비비	1,740,426	3.20	1,025,619	2.20	714,807
		기타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6당초예산		'95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3,251,468	100.00	4,057,037	100.00	△805,569
세입	지 방 세 수 입						
	세 외 수 입		2,723,126	83.75	3,443,246	84.87	△720,120
		경상적세외수입	1,510,745	46.46	1,613,162	39.76	△102,417
		임시적세외수입	1,212,381	37.29	1,830,084	45.11	△617,703
	지 방 교 부 세						
	지 방 양 여 금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528,341	16.25	613,791	15.13	△85,450
		국 고 보 조 금	420,383	12.93	488,822	12.05	△68,439
		시·도 보 조 금	107,958	3.32	124,969	3.08	△17,011
	지 방 채		1				1
	경 상 예 산		457,778	14.08	377,501	9.30	80,277
		인 건 비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457.778	14.08	377.501	9.30	80.277
	사업예산		1.436.970	44.19	2.460.714	60.65	△1.023.744
		국고보조(경상)사업					
		국고보조(사업)사업	532.468	16.38	617.323	15.22	△84.855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	176.475	5.43	1.509.462	37.21	△1.332.987
		자체(계속)사업	728.027	22.39	333.929	8.23	394.098
	채무상환		1.312.489	40.37	1.212.822	29.89	99.667
		지방채(국내)상환	1.312.489	40.37	1.212.822	29.89	99.667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44.231	1.36	6.000	0.15	38.231
		예비비	35.129	1.08			35.129
		기타	9.102	.28	6.000	0.15	3.102

□ 삭감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합 계	-	1,102,482	△656,035	446,447	
(02)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단체 보조금	173,000	△20,000	153,000	물량조정
(01)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일간지	96,948	△2,370	94,578	"
(01)일반수용비	군정시책 광고료	63,360	△21,120	42,240	"
(01)일반수용비	월 중점홍보 수수료	36,960	△12,320	24,640	"
(03)운영수당	군정홍보위원 수당	4,800	△4,800	0	지침위배
(01)보상금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160	△160	0	"
(05)연금지급금	부조 급여금	50,000	△20,000	30,000	물량조정
(03)기타직보수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	58,000	△48,000	10,000	"
(03)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600	△600	1,000	단비조정
(10)재료비	지방세전산화 추진임부임	24,450	△9,780	14,670	물량조정
(02)공공요금제세	중선암초소 전기사용료	600	△400	200	단비조정
(02)공공요금제세	군민관광지 전기사용료	4,800	△3,000	1,800	"
(01)자산취득비	소형승합차 대체구입	28,000	△14,000	14,000	물량조정
(07)연료비	연립관사 연료비	1,858	△1,858	0	지침위배
(01)자산취득비	청사 에어콘 구입(42개소)	102,100	△51,050	51,050	물량조정
(03)토지매입비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보상	210,000	△210,000	0	지침위배
(04)일용인부임	주목군락 감시원 인부임	33,075	△24,806	8,269	물량조정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11)기타운영비	영세민지원예방접종약품대	3,906	△3,906	0	이중계상
(01)일반수용비	쓰레기 불법투기방지경고판제작	2,000	△1,000	1,000	단비조정
(03)토지매입비	군도편입 미불용지 보상	191,295	△191,295	0	지침위배
(08)시설장비 유지비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	570	570	0	이중계상
(05)시설비	쓰레기매립지 선별장전기시설	15,000	△15,000	0	지침위배

'97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97당초예산		'96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64,557,170	100.00	57,203,605	100.00	7,353,565
세입	지 방 세 수 입		5,680,113	8.80	5,218,400	9.12	461,713
	세 외 수 입		10,201,922	15.80	7,803,971	13.64	2,397,951
		경상적세외수입	4,695,046	7.27	4,353,191	7.61	341,855
		임시적세외수입	5,506,876	8.53	3,450,780	6.03	2,056,096
	지 방 교 부 세		25,908,001	40.13	23,359,001	40.83	2,549,000
	지 방 양 여 금		6,655,000	10.31	6,808,500	11.90	△153,500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5,612,127	24.18	14,013,726	24.50	1,598,401
		국 고 보 조 금	9,214,365	14.27	6,286,573	10.99	2,972,792
		시·도 보 조 금	6,397,762	9.91	7,727,153	13.51	△1,329,391
	지 방 채		500,007	0.77	7		500,000
	경 상 예 산		23,806,101	36.88	21,796,566	38.10	2,009,535
		인 건 비	11,764,635	18.22	10,262,305	17.94	1,502,330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661.941	1.03	696.277	1.22	△34.336
		경상적경비	11.379.525	17.63	10.837.984	18.95	541.541
	사업예산		36.126.744	55.96	31.719.961	55.45	4.406.783
		국고보조사업	14.706.754	22.78	9.764.117	17.07	4.942.637
		지방양여금사업	6.421.075	9.95	7.238.616	12.65	△817.541
		시·도비보조사업	7.132.786	11.05	8.728.643	15.26	△1.595.875
		자체사업	7.866.129	12.18	5.988.585	10.47	1.877.544
	채무상환		3.492.560	5.41	1.904.421	3.33	1.588.139
		지방채(국내)상환	3.492.560	5.41	1.904.421	3.33	1.588.139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1.131.765	1.75	1.782.657	3.12	△650.892
		예비비	1.127.362	1.75	1.775.555	3.10	△648.193
		기타	4.403	0.01	7.102	0.01	△2.699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7당초예산		'96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59,660,449	100.00	53,952,137	100.00	5,708,312
세입	지 방 세 수 입		5,680,113	9.52	5,218,400	9.67	461,713
	세 외 수 입		7,119,372	11.93	5,088,137	9.43	2,031,235
		경상적세외수입	3,165,156	5.31	2,835,581	5.26	329,575
		임시적세외수입	3,954,216	6.63	2,252,556	4.18	1,701,660
	지 방 교 부 세		25,908,001	43.43	23,359,001	43.30	2,549,000
	지 방 양 여 금		6,655,000	11.15	6,808,500	12.62	△153,500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4,297,958	23.97	13,478,093	24.98	819,865
		국 고 보 조 금	8,485,719	14.22	5,858,898	10.86	2,626,821
		시·도 보 조 금	5,812,239	9.74	7,619,195	14.12	△1,806,956
	지 방 채		5		6		△1
	경 상 예 산		23,358,652	39.15	21,354,745	39.58	2,003,907
		인 건 비	11,764,635	19.72	10,262,305	19.020	1,502,330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661,941	1.11	696,277	1.29	△34,336
		경상적경비	10,932,076	18.32	10,396,163	19.27	535,919
	사업예산		33,130,319	55.53	30,265,034	56.10	2,865,285
		국고보조사업	13,795,948	23.12	9,231,649	17.11	4,564,299
		지방양여금사업	6,421,075	10.76	7,238,616	13.42	△817,541
		시·도비보조사업	6,129,426	10.27	8,725,783	16.17	△2,596,357
		자체사업	6,783,870	11.37	5,068,986	9.40	1,714,884
	채무상환		2,087,546	3.50	591,932	1.10	1,495,614
		지방채(국내)상환	2,087,546	3.50	591,932	1.10	1,495,614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1,083,932	1.82	1,740,426	3.23	△656,494
		예비비	1,083,932	1.82	1,740,426	3.23	△656,494
		기타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7당초예산		'96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4,896,721	100.00	3,251,468	100.00	1,645,235
세입	지 방 세 수 입						
	세 외 수 입		3,082,550	62.95	2,715,834	83.53	366,716
		경상적세외수입	1,529,890	31.24	1,517,610	46.67	12,280
		임시적세외수입	1,552,660	31.71	1,198,224	36.859	354,436
	지 방 교 부 세						
	지 방 양 여 금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314,169	26.84	535,633	16.47	778,536
		국 고 보 조 금	728,646	14.88	427,675	13.15	300,971
		시·도 보 조 금	585,523	11.96	107,958	3.32	477,565
	지 방 채		500,002	10.21	1		500,001
	경 상 예 산		447,449	9.14	441,821	13.59	5,628
		인 건 비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447.449	9.14	441.8218	13.59	5.628
	사업예산		2.996.425	61.19	1.454.927	44.75	1.451.498
		국고보조사업	910.806	18.60	532.468	16.38	378.338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1.003.360	20.49	2.860	0.09	1.000.500
		자체사업	1.082.259	22.10	919.599	28.28	162.660
	채무상환		1.405.014	28.69	1.312.489	40.37	92.525
		지방채(국내)상환	1.405.014	28.69	1.312.489	40.37	92.525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47.833	0.98	44.231	1.36	5.602
		예비비	43.430	0.89	35.129	1.08	8.301
		기타	4.403	0.09	7.102	0.22	△2.699

□ 삭감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합 계		8,379,289	△409,652	7,969,637	
(01)기본급	인건비(본청,사업소,읍면)	7,886,824	△214,434	7,645,390	예산절감
(04)일용인부임	본청 일용인부임	291,219	△26,058	265,161	예산절감
(10)재료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2,130	△2,130	0	예산절감
(01)자산취득비	서울연락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외 21대	22,000	△5,500	16,500	수량조정
(02)물품및도서구입비	사진기 휠터 및 후드 홀더구입(1조)	800	△800	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구입비	회의 전용마이크	5,200	△2,600	2,600	단비조정
(10)재료비	전자주민사업카드 인부임	1,541	△1,541	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구입비	일반전화기 대체구입	600	△6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도민새기상창조교육 교재유인	600	△6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도민새기상 창조운동	2,380	△2,380	0	예산절감
(10)재료비	지방세 전사운영 및 토지과표현실화 추진인부임	23,112	△7,704	15,408	대상조정
(01)일반수용비	선사유적 전시관 안내홍보물제작	4,000	△2,000	2,000	수량조정
(01)자치단체출연금	지방문예 진흥기금	10,000	△10,000	0	예산절감
(10)재료비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10,435	△5,434	5,001	예산절감
(10)재료비	잔디 식재지 비료구입	500	△250	250	예산절감
(10)재료비	쓰레기 매립장 잡목제거 인부임	652	△652	0	예산절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04)시설비	상수도 청사 정화조 시설	3,000	△3,000	0	예산절감
(10)재료비	충혼탑 위패제작	20,000	△20,000	0	시기조정
(10)재료비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5,136	△5,136	0	예산절감
(10)재료비	지가조사 전산인부임	4,109	△4,109	0	예산절감
(10)재료비	고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인부임	4,623	△4,623	0	예산절감
(10)재료비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인부임	36,979	△24,652	12,327	일수조정
(10)재료비	토양검정 인부임	3,914	△3,914	0	예산절감
(01)민간자본보조	자라양식(내수면 양식)	20,000	△20,000	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 구입	물품 및 도서구입비	5,250	△2,250	3,00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 구입	방곡도예촌 전화시설	200	△200	0	예산절감
(04)시설비	시설비(대추나무 병해충방제)	3,730	△3,730	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 구입	재해 상황판 제작	3,500	△3,500	0	예산절감
(02)물품및도서 구입	재해상황실 의자구입	420	△420	0	예산절감
(10)재료비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2,055	△2,055	0	예산절감
(01)보상금	민방위 창설 참가자 급식비	1,120	△320	800	대상조정
(02)물품및도서 구입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비품 구입	860	△860	0	예산절감
(01)자산취득비	상수도 염소투입기 구입	2,400	△1,200	1,200	수량조정

'98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98당초예산		'97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70,129,875	100.00	64,557,170	100.00	5,5712,705
세입	지 방 세 수 입		6,663,100	9.50	5,680,113	8.80	982,987
	세 외 수 입		13,966,367	19.92	10,201,922	15.80	3,764,445
		경상적세외수입	5,186,210	7.40	4,695,046	7.27	491,164
		임시적세외수입	8,780,157	12.52	5,506,876	8.53	3,273,281
	지 방 교 부 세		27,675,000	39.46	25,908,001	40.13	1,766,999
	지 방 양 여 금		5,917,009	8.44	6,655,000	10.31	△723,991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5,908,394	22.68	15,612,127	24.18	296,267
		국 고 보 조 금	8,584,730	12.24	9,214,365	14.27	△629,635
		시·도 보 조 금	7,323,664	10.44	6,397,762	9.91	925,902
	지 방 채		5		500,007	0.77	△500,002
	경 상 예 산		24,191,266	34.49	23,806,101	36.88	385,165
		인 건 비	12,572,218	17.93	11,764,635	18.22	807,583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662.008	0.94	661.941	1.03	67
		경상적경비	10.957.040	15.62	11.379.525	17.63	△422.485
	사업예산		39.698.634	56.61	36.126.744	55.96	3.571.890
		국고보조(경상)사업	12.604.498	17.97	14.706.754	22.78	△2.102.256
		지방양여금사업	4.969.179	7.09	6.421.075	9.95	△1.451.896
		시·도비보조사업	10.174.622	14.51	7.132.786	11.05	3.041.836
		자체사업	11.950.335	17.04	7.866.129	12.18	4.084.206
	채무상환		3.346.878	4.77	3.492.560	5.41	△145.682
		지방채(국내)상환	3.346.878	4.77	3.492.560	5.41	△145.682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2.893.097	4.13	1.131.765	1.75	1.761.332
		예비비	2.889.071	4.12	1.127.362	1.75	1.761.709
		기타	4.026	0.01	4.403	0.01	△377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당초예산		'97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65.177.985	100.00	59.660.449	100.00	5.517.536
세입	지 방 세 수 입		6.663.100	10.22	5.680.113	9.52	982.987
	세 외 수 입		10.255.286	15.73	7.119.372	11.93	3.135.914
		경상적세외수입	3.646.301	5.59	3.165.156	5.31	481.145
		임시적세외수입	6.608.985	10.14	3.954.216	6.63	2.654.769
	지 방 교 부 세		27.675.000	42.46	25.908.001	43.43	1.766.999
	지 방 양 여 금		5.917.009	9.08	6.655.000	11.15	△737.991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4.667.587	22.50	14.297.958	23.97	369.629
		국 고 보 조 금	7.714.771	11.84	8.485.719	14.22	△770.948
		시·도 보 조 금	6.952.816	10.67	5.812.239	9.74	1.140.577
	지 방 채		3		5		△2
	경 상 예 산		23.723.452	36.40	23.358.652	39.15	364.800
		인 건 비	12.572.218	19.29	11.764.635	19.72	807.583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662.008	1.02	661.941	1.11	67
		경상적경비	10.489.226	16.09	10.932.076	18.32	△442.850
	사업예산		37.117.032	56.95	33.130.319	55.53	3.986.713
		국고보조사업	11.517.054	17.67	13.795.948	23.12	△2.278.894
		지방양여금사업	4.969.179	7.62	6.421.075	10.76	△1.451.896
		시·도비보조사업	9.871.262	15.15	6.129.426	10.27	3.741.836
		자체사업	10.759.537	16.51	6.783.870	11.37	3.975.667
	채무상환		1.963.003	3.01	2.087.546	3.50	△124.543
		지방채(국내)상환	1.963.003	3.01	2.087.546	3.50	△124.543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2.374.498	3.64	1.083.932	1.82	1.290.566
		예비비	2.374.498	3.64	1.083.932	1.82	1.290.566
		기타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당초예산		'97당초예산		증 감 액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4.951.890	100.00	4.896.721	100.00	55.169
세입	지 방 세 수 입						
	세 외 수 입		3.711.081	74.94	3.082.550	62.95	628.531
		경상적세외수입	1.539.909	31.10	1.529.890	31.24	10.019
		임시적세외수입	2.171.172	43.85	1.552.660	31.71	618.512
	지 방 교 부 세						
	지 방 양 여 금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1.240.807	25.06	1.314.169	26.84	△73.362
		국 고 보 조 금	869.959	17.57	728.646	14.88	141.313
		시·도 보 조 금	370.848	7.49	585.523	11.96	△214.675
	지 방 채		2		500.002	10.21	△500.000
	경 상 예 산		467.814	9.45	447.449	9.14	20.365
		인 건 비					
		기 준 경 비					

세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467.814	9.45	447.449	9.14	20.365
	사업예산		2.581.602	52.13	2.996.425	61.19	△414.823
		국고보조사업	1.087.444	21.96	910.806	18.60	176.638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303.360	6.13	1.003.360	20.49	△700.000
		자체사업	1.190.798	24.05	1.082.259	22.10	108.539
	채무상환		1.383.875	27.95	1.405.014	28.69	△21.139
		지방채(국내)상환	1.383.875	27.95	1.405.014	28.69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국내)상환					
		차관(해외)상환					
	예비비등		518.599	10.47	47.833	0.98	470.766
		예비비	514.573	10.39	43.430	0.89	471.143
		기타	4.026	0.08	4.403	0.09	△377

□ 삭감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합 계		2,467,382	△1,171,759	1,295,803	
(03)국외여비	해외견학 국외여비(pool)	15,000	0	15,000	국내여비로
(02)임의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Pool)	133,000	△33,000	100,000	예산절감
(11)재료비	사업체기초조사인부임	1,982	△1,982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군청사 와이드칼라 홍보판 제작	8,400	△8,400	0	예산절감
(07)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800	△200	600	지급대상조정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사장 탁자 및 소파구입	2,000	△2,000	0	예산절감
(02)위탁교육비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교육비 부담금	60,000	△60,000	0	예산절감
(05)피복비	기동봉사대 피복구입	1,229	△1,229	0	예산절감
(05)피복비	청원경찰 피복구입	1,985	△1,985	0	예산절감
(02)공로해외연수비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9,000	△6,000	3,000	국내연수
(04)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수당	1,200	△750	450	대상조정
(11)재료비	지방세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인부임	49,616	△49,616	0	예산절감
(04)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5,000	△2,000	3,000	대상조정
(04)시설비	관사 도색(3개소)	25,000	△25,000	0	시기미도래
(04)시설비	청사후관 증축	133,204	△133,204	0	예산절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05)시설부대비	청사후관 증축 시설부대비	1,030	△1,030	0	예산절감
(06)감리비	청사후관 증축 감리비	4,190	△4,190	0	예산절감
(02)실시설계비	주목군락 감시초소 신축	120,000	△18,000	102,000	군비부담조정
(08)연료비	농촌문화체육센타 연료비	6,240	△5,420	1,000	예산절감
(01)정액보조금	도민체전 출전경비	50,000	△10,000	40,00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향토음식대회 책자발간	3,000	△3,0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수거용봉투 제작	22,140	△3,990	18,150	예산절감
(02)실시설계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464,000	△46,000	418,000	군비부담조정
(01)기본조사설계비	하수도 사용료 용역	15,000	△15,000	0	예산절감
(11)재료비	국민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조경수 전지 인부임	2,706	△1,353	1,353	물량조정
(01)민간자본보조	도전1리 경로당 보수비 지원	50,000	△35,000	15,000	물량조정
(02)민간경상보조	사랑의반찬 나누기 운동 재료구입비 지원	9,600	△4,800	4,800	단비조정
(01)자산물품취득	도시과 직원 의자구입	1,105	△765	340	물량조정
(04)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600	△600	1,000	대상조정
(04)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400	△600	800	대상조정
(04)운영수당	등록사항 정정사항 정리위원회 운영수당	450	△150	300	대상조정
(11)재료비	건축물관리 조사요원 인부임	12,759	△12,759	0	예산절감
(11)재료비	어상천수박축제 수박왕 시상품	2,300	△800	1,500	물량조정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01)자산및물품취득	짚형 승용차 대체구입	24.000	△24.000	0	예산절감
(01)민간자본보조	단양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8.640	△8.640	0	예산절감
(01)민간자본보조	수박접목부위 보호터널 재배단지 시범	7.200	△7.200	0	예산절감
(01)민간자본보조	전통토종 가축사육	20.000	△20.000	0	예산절감
(10)민간실비보상	4-H도경진대회 참가보상	9.840	△4.920	4.920	예산절감
(04)운영수당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0	△200	1.800	대상조정
(01)일반수용비	우리고장 공예품 홍보 팜프렛 제작	6.000	△6.000	0	예산절감
(04)운영수당)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500	△900	600	대상조정
(01)자산및물품취득	직원사무용 의자구입	935	△595	340	물량조정
(01)자산및물품취득	방곡도예원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	500	△200	300	단비조정
(01)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6.000	6.0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온달국민관광지등 관광시설물 등기수수료	1.520	△1.52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 테이프 제작	600	△6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 사진인화 및 필름	800	△8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온달국민관광지 쓰레기 봉투구입	5.900	△5.900	0	예산절감
(01)일반수용비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	30.000	△10.000	20.000	물량조정
(09)시설장비유지	관광안내소 전면창 버디칼 설치	1.500	△1.500	0	예산절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조정액	사정액	조정사유
(03)공공요금제세	산불진화 도구구입	1,600	△800	800	물량조정
(05)피복비	청원산림직 피복구입	361	△361	0	예산절감
(07)임차료	철쭉꽃묘 및 꽃묘이식 토지트랙타 임차료	1,000	△1,000	0	군청차량 이용
(03)시험연구비	임산물(수액)채취재료구입	3,500	△1,750	1,750	물량조정
(03)시험연구비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	2,500	△2,500	0	예산절감
(03)시험연구비	철쭉삽목사 객토구입	4,500	△3,500	1,000	물량조정
(11)재료비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	6,000	△3,000	3,000	단비조정
(03)토지매입비	경영기반조성 토지매입비	1,000,000	△500,000	500,000	물량조정
(01)자산물품취득	교통업무 추진용 무전기 구입	1,200	△1,200	0	예산절감
(05)기타포상금	민방위행정 역점시책 우수기관 시상	1,000	△1,000	0	예산절감
(01)자산물품취득	로원,공원관리 예취기 구입	350	△50	300	단비조정
(01)자산물품취득	참만족 행정써비스 물품 구입	400	△400	0	예산절감
(01)자산물품취득	로원관리용 예취기 구입	500	△100	400	단비조정
(01)자산물품취득	상수도 실험실 에어콘 구입	4,500	△4,500	0	예산절감
(01)정액단체보조	바르게살기 단체보조 정액	29,600	△17,600	12,000	예산절감
(01)학술용역비	태장이묘 발굴 조사	50,000	△30,000	20,000	예산절감
(01)자산물품취득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	4,400	△4,400	0	예산절감
(04)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수당	3,500	△1,200	2,300	대상조정
(04)시설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10,600	△10,600	0	예산절감

3. 결산검사 처리현황

- '94회계년도 결산검사
- '95회계년도 결산검사
- '9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 산 검 사 실 시)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 개 요

○ 검사기간 : '95. 9. 15 ~ 9. 29(15일간)

○ 검사장소 : 단양군청 상황실

○ 검사위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단양군의회	박창수	44.12.3	단양.대강.장림	(현)군의회 의원
민간인	손선수		단양. 단양. 별곡	(전)단양군 재무과장
"	양병대	54.6.11	제천. 고명. 823	(전)세무사 사무실

□ 결 과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A)	세입 결산액(B)	세출 결산액(C)	비율 A:B	비율 A:C	비율 B:C	세계잉여금
합 계	71,766	71,531	48,045	99	66	67	23,486
일반회계	68,292	68,290	45,290	99	66	66	23,000
특별회계	3,474	3,241	2,755	93	79	85	486
상수도사업	1,280	1,278	1,097	99	85	85	181
주택사업	710	502	431	70	60	85	71
의료보호기금	465	465	459	100	98	98	6
새마을소득사업	363	367	182	101	50	49	185
영세민생활안정	122	106	77	86	63	72	29
농공지구조성	534	523	509	95	95	97	14

○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과년도지방세 징수부진 - 지방세 : 25,102천원 - 세외수입 : 152,493천원	시정	○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평가회 개최 - 일시 : '98. 10. 6 - 참석 : 부군수, 재무과장,읍면 재무계장 ○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간 : '95. 10. 1~11. 30 - 징수반 편성 : 3개반 28명	재무과
○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정산서 미징구 - 농어민후계자 : 3,000천원	시정	○ 농업인후계자 연합회 정산서 징구	산업과
○ 수입증지 출납부 미비치	시정	○ 수입증지 출납부 작성 비치 (사본 첨부)	재무과
○ 세입예산액 계상소홀 - 기타재산매각대 미징수액 : 1,044,164천원	시정	○ 향후 기타재산 매각대 세입예산 계상철저 이행	재무과
○ 재산임대료 세입 소홀 - 예산액 : 537,438천원 - 징수결정액 : 274,103천원 - 부족액 : 263,335천원	시정	○ 재산임대료 수입 세입예산 계상시 당해연도, 익년도 임대수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계상 및 징수결정으로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겠음	재무과
○ 주택융자금 회수부진 - '94미수액 : 67,329천원 - 과년도 : 50,098천원	시정	○ 납부촉구 공문발송(3회) ○ 3차 납부 촉구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물건은 강제경매 실시	도시과
○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부진 - '94미수액 : 4,582천원 - 과년도 : 15,661천원	시정	○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 체납 사유파악, 가정방문 독려	사회진흥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부진 - '94미수액 : 1,854천원 - 과년도 : 14,707천원	시정	○ 채납자 재산조회후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융자금 회수추진 ('96년 3월까지)	사회과
○ 사업계획 사전 PR로 예산낭비 및 행정불신 초래 - 온달지구 개발 토지매입 - 양벵이 앞산 인공폭포토지 매입	주의	○ 특정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시 의회 사전승인후 시행토록 시정 ○ 특정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홍보 지양으로 군정이익 도모	각실과 공통
○ 예산편성지침 목해소 위배지출 - 판공비과목을 급량비에서 지출 : 760천원 - 판공비과목을 보상금에서 지출 : 182천원	주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업무편람 연찬으로 엄정한 세출업무 확대 ○ 연찬계획수립 시행	기획실, 내무과
○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부적정 - 보조사업비를 월례회 및 식대보조금 기타 소모성으로 사용	주의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획실
○ 각종 시설공사 하자점검 소홀 - 하자검사 미실시 . '92년 : 91건 . '94년 : 46건	시정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 기간 : '95.10.5~10.20 - 대상 : 보증기간 미완료 사업 (186건) - 하자검사결과 : 이상없음(181건) - 하자보수공사 별도시행(5건)	재무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개발부담금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 누락 - '94년도 개발부담금 8,145천원을 '94.12.27일 세입조치 하고 추경예산에 미반영	주의	○ 향후 세입추경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실과소별 세입확인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재무과
○ 설계변경 과다 - '94년도 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96건중 70건이 설계변경되었음	주의	○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 설계변경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기획실, 사회진흥과
○ 영조물 관리소홀 - 본청누수공사 : 45백만원 - 읍면복지회관 : 미활용	주의	○ 공공건물 일제점검 실시 - 기간 : '95.10.9~10.14 - 대상 : 우리군 소유 건물	재무과
○ 군정추진 연구개발비 예산반영 미흡 - 군정 전문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전무함	주의	○ 철저한 세목별 세수관리로 재원의 효율을 가하겠음	기획실
○ '94순세계잉여금 이월 부적정 - '94잉여금 2,237025천원이나 '95당초예산편성시 300,000천원만 계상	주의	○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히 계상토록 하겠음 ○ '95.2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음	기획실, 재무과
○ 지방채 운영 부적정 - '95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45건 16,201,65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평동택지사업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성하여 원금 30억원중 이자 108천만원이 발생	주의	○ 금후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겠음	기획실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불용액 과다발생 - '94년도 불용액 2,607,573천원발생 - 예산운영 소홀	주의	○ '95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집행 및 자금운영 상황을 정밀분석하여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기획실
○ 공유재산 관리 소홀 - 잡종재산 1097건을 관리함에 있어 대장의 세항별 내역을 전혀 기록 유지하지 않고 있음	시정	○ 공유재산의 목록작성 - 대상 : '92년이후 , 취득, 처분, 변동재산 - 지적전산 출력분 읍면대조 및 목록작성 - 완료예정일 : '95.12.31	재무과
○ 공사비 내역서 작성소홀 - 대잠교 수해복구공사의 공사내역서 작성시 철근부분 조립인건비 누락 490천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 것은 설계소홀	주의	○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시 계약체결 이전 조정시행하고 ○ 향후 설계시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직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음	건설과
○ 사업장현지조사 결과 조치소홀 - 소하천공사외 15건의 사업장확인결과 발견된 9건의 문제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나 7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없음	주의	○ 사업장 현지지도 확인조치 - 1차 : 현장에서 시정 조치 - 2차 : 해당실과장 통보후 조치 - 3차 : 기획실에서 필히 확인조치 ○ 지적사항 시정에 틀림없도록 조치하겠음	기획실
○ 국고 보조금 운영소홀 - '94년도 국비보조금중 434,496천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	주의	○ 국고보조금 운영 철저 - 예산편성 및 집행운영 철저로 과다반납액 사전 방지하고 - 국고보조금 사업의 해당부서별 집행철저를 기하겠음	각실과 공통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 개 요

○ 검사기간 : '96. 10. 1 ~ 10. 15(15일간)

○ 검사장소 : 단양군청 상황실

○ 검사위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단양군의회	장익환	56.2.24	단양.단성.가산 730	(현)군의회 의원
민간인	박병래		단양. 단양. 별곡	(전)단양읍장
"	조동형	48.8.28	단양.영춘.상리106	(전)군의회 의원

□ 결 과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A)	세입 결산액(B)	세출 결산액(C)	비율 A:B	비율 A:C	비율 B:C	세계 잉여금
합 계	93,097	92,946	65,093	99.8	69.9	70.0	27,854
일반회계	88,382	88,336	62,420	99.9	70.6	70.6	25,917
특별회계	4,715	4,610	2,673	99.7	56.6	57.9	1,937
상수도사업	2,125	2,126	1,166	100	54.8	54.8	960
주택사업	450	445	366	98.8	81.3	82.2	78
의료보호기금	624	623	620	99.8	99.3	99.5	3
새마을소득사업	391	400	0	100	0	0	400
영세민생활안정	408	397	144	97.3	35.2	36.2	253
농공지구조성	717	618	377	86.2	52.5	61.0	242

○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94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이행 - '94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 조치 미흡	시정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 - 기간 : '96.8.1 ~ 10.31 - 체납액 : 701,368천원 - 징수반 편성운영(9개반,군읍면) - 부동산 압류 : 350건 107백만원 - 현금징수 : 3,984건 371백만원 - 번호판 영치 : 47건 8772천원	재무과
○ 공유재산 업무 소홀 - 공유재산 경영화 저조 -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용도별, 종류별 세수 증대 표기 없음	시정	○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연구하겠음 ○ 재산평가액 부적정 - 결산서 정정 - 추후 재산평가액 주요변동사항을 결산서에 기재하겠음	재무과
○ 기금운영의 부적정 - 이자계산 시점과 회계연도말 기준이 없음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출연금과 이자분 명기하지 않아 적립액을 장학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 청소년자립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를 적립기금 조성하고 있으나 기금지급이 한번도 안되고 있음	시정	○ '90~'94년까지 해마다 별도 적립된 금액을 '95년 목표액(1억) 조성되어 별도 예치된 금액을 한곳으로 합쳐 관리하며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시 원금은 지급안되었으며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지급(통장에 예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자계산후 장학금 지급) ○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회복지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과오납 환불 및 부과 취소 과다발생 - 환불 : 225건 29백만원 - 부과취소 225건 94백만원	주의	○ 향후 지방세 및 관계법규의 숙지와 세정 민원처리부서의 운영내실화로 과오납 환부 및 부과취소사례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음 ○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시행 모든 세목의 수시분 직권과세시 과세표준, 세액들을 예고하여 나가겠음	재무과
○ 물품관리 업무소홀 - 물품증감 및 현재액 오자 - 농촌지도소 모터싸이클 16대중 사용불능7대 폐기처분 미이행	주의	○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서 오자 정정 조치 ○ 정기 재물조사시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음	재무과 지도소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부적정 - 융자실적 전무 - 연대보증 요구 불합리	시정	○ '97생활보호대상자 전수조사 실시후 융자('96.12월중) ○ 연대보증인 및 보증보험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음	사회복지과
○ 평동택지분양 및 온달국민관광지 사업부진 - 평동택지분양 93필지 중 10필지만 분양 - 온달국민관광지 사업비 확보미흡	시정	○ 각기 농공단지 입주업세 사원주택 부지로 분양토록 하겠으며 ○ 관내 한일, 성신등 시멘트 3사와 협력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음 ○택지분양 홍보대책 - 중앙일간지 분양공고 1회 - 유명기업체 홍보문 송부(27개업체) - 지역생활정보지 홍보 (3회) ○ 동굴개발과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군비 투자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도시과, 관광진흥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사회단체 및 민간인 경상보조 집행소홀 - '95년도 집행현황 : 63단체 726,872천원 - 예산배부전 선집행	시정	○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음 ○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관광진흥과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 기한경과 보관금 방치: 89년이후 총22건 12,862천원	시정	○ 보조금 반환조치 실과 통보 : 재무45181-2008('96.10.28) - 완료 1건 (8,111천원) - 추진중 21건 (4,752천원)	각실과 공통
○ 부대비 집행 소홀 - 온달국민관광지조성사업 사업비 115,310천원 이월되었으나 부대비는 전액 소모	주의	○ 앞으로 사업비 이월시 부대비도 동시에 이월하여 잔여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사업추진 진도에 맞게 부대비 집행토록 하겠음	관광진흥과 건설과
○ 예산집행 소홀 - 마들보 수해복구공사 (245,018천원)가 '95.12.18일 준공검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비는 '96.2.29 지연 지출함 - 각기 파랑지구 소류지 지체상환금 444,584원 세입조치 안함	주의 (추징)	○ 향후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준공처리후 조기에 지급토록 하겠음 ○ 지체상환금 세외보관금에서 인출하여 세입조치 - 세입금액 : 444,580원	재무과
○ 예산배정액 초과 지출 - 예산성립이 되더라도 배정후 지출이 이루어	주의	○ 실과소별 사업 추진에 따른 시기별 적절을 기하여 예산배정후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	재무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저야 함에도 산림행정 비등 4건 3.413천원을 초과 지출		여하 함에도 예산배정 요구 소홀로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배정초과 지출하였으나 ○ 회계담당자 교육실시로 배정예산내에서 지출되도록 하겠음	
○ 예산편성 지침적용 소홀 - 단양군재무회계규칙의 도급경비정리부 미사용 - 과목별 집행결과 보고 미이행 - 장부마감 소홀	주의	○ 회계장부 서식 통일 사용실시 ⇒ '97년부터 시행 ○ 결과보고 이행 조치 ○ 회계공무원 수시 교육으로 회계업무 연찬	각실과
○ 당초 예상편성 소홀 - 목설정 부적정 : 수용비 및 수수료를 피복비로 계상 - 당초예산을 추경예산 편성과 같이 착오 부기	주의	○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타 목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등의 정리에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기획실
○ 예산낭비 요인 초래 - '95년도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단속실적이 86건에 불구함에도 5,000매를 유인 ○ 교통대책과 관련 사진대가 예산편성되어 있음에도 무단방치 차량을 추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대장에 부착해야 할 사진이 미첨부 되어있는등 예산집행 소홀	주의	○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작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겠음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진대를 무단방치 차량관리 및 교통행정 업무 추진(불법 주정차, 밤샘주차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업무 효율에 만전을 기하겠음	지역경제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예산운용 불합리 - 총예산액 93,097백만원중 7.4%에 해당하는 6,930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재정운영을 빈약하게 함	주의	○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조치	기획실
○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소홀 - '95융자금 부과액은 517,717천원이나 징수액은 444,583천원으로 징수율 저조 - 고액 채납자 15명에 대한 조치 미흡	주의	○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운영 - 독려반원 : 8명(군1,읍면7)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 계획 이행 - 강제징수 예정통보 : 23명	도시과
○ 신세원 발굴과 세원탈루 방지대책 미흡 ○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부족	주의	○ 지방세 세무조사 확대 ○ 지방세 담당자 실무연찬 기회 부여로 신세원 발굴을 위한 대책강구 - 실무연찬교육 참여 : 12명 - 기간 : '96.11.22~11.23	재무과
○ 예비비 지출 부적정 - 예비비는 가뭄대책이나 수해복구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할것임에도 민선구수 이·취임식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함	주의	○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사용토록 관계부서와 업무개선 처리토록 조치하겠음	내무과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 개 요

○ 검사기간 : '95. 7. 22 ~ 8. 5(15일간)

○ 검사장소 : 단양군청 상황실

○ 검사위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단양군의회	김종태	55.4.20.3	단양.가곡.사평	(현)군의회 의원
민간인	신상용	46.12.17	단양.단양.별곡413	(현)단양의료보험조합
"	연규화	54.6.11	제천.동현. 30-15	(현)정한건설(주)

□ 결 과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A)	세입 결산액(B)	세출 결산액(C)	비율 A:B	비율 A:C	비율 B:C	세계 잉여금
합 계	94,422	94,246	72,093	99.8	76.3	76.5	22,153
일반회계	87,507	87,671	68,291	100	78.0	77.9	19,380
특별회계	6,916	6,575	3,802	95	54.9	57.8	2,722
상수도 사업	3,453	3,491	2,018	100	58.4	57.8	1,473
주택 사업	610	464	417	76.0	68.3	89.3	47
의료보호기금	740	740	736	100	99.4	99.4	4
새마을소득사업	462	446	0	96.5	0	0	446
영세민생활안정	356	356	300	100	84.2	84.2	57
농공지구조성	1,294	1,078	332	83.3	25.6	30.7	746

○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생활보호 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 및 폐기하여야 할것임 - 통합기금 : 4H 후원기금,농촌지도자회기금 - 폐기기금 : 생활보호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시정	○ 통폐합 가능한 기금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부서와 협의 검토중에 있음 ○ 농촌지도자회 기금과 4H후원회 기금은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대상단체와 조성액이 상이하여 군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생활보호기금은 '79년이후 군비 출연실적 및 기금운영 실적이 없고 폐지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어 현재 기금폐지를 위해 추진중에 있음	기획감사실
○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 세출예산액 720억9천만원중 일반회계 54억8천만원, 특별회계15억9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자금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함	시정	○ 향후 예산운영시 자금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기획감사실
○ 공공시설물 관리대장 정리 소홀 - 단양군영조물관리규정	시정	○ 공공시설물 관리기록부와 재산의 실지 등기부등본,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대장을 정리하였으며	재무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관리등)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령 제20조(등기수속등)에 의거 군공유건물을 등기관리 하여야 함에도 의회건물등 47건이 미등기로 관리하고 있음	시정	○ 대장의 작성연월일, 작성책임자, 사진부착, 사용허가연월일 등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완정리 하였음 ○ 미등기건물 48동중 41건에 대하여는 등기완료하였음	
○ '95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미흡 - '9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에도 총 19건중 10건만 처리하고 9건은 조치하지 않고 있음	시정	○ 지적사항 미처리 9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의 조치를 촉구하여 조치완료 하였음	기획실
제5조제5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영조물 및 공공시설물을 대장 기록관리 하여야 하나 소요재원,작성년월일,작성책임자등 기록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시정	○ 대장의 작성년월일, 작성책임자, 사진부착, 사용허가연월일등 누락된 부분을 보완정리 하였음	재무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 공유재산 증감액 결산 소홀 - 공유재산 증감액 결산에 있어 당해연도중 증감액내역중 감액부분의 표시는 취득이 아니라 처분이 되어야 함에도 취득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 공유재산 종류별 단위 표시에서 가격은 금액, 면적은 ㎡,건물은 동, 선박은 척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종류에 맞지않게 부기되어 있음	시정	○ 지적사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적정한 표기가 되도록 정리 완료하였으며 ○ 종류별 분류와 단위표시등은 현실에 맞도록 재작성 완료하였음	재무과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미수납분 징수소홀 -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환경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 판매함에 있어 1,299천원을 미수납 관리하고 있음		○ 미수납액 1,229,660원에 대하여 '97. 6. 19일자로 완납처리하였음 ○ 체납액에 대한 특별관리로 미수액이 없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과
○ 주택관리 특별회계 업무소홀 -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과 융자를 받아	시정	○ 고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등 강제 징수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이며	도시과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조치		
들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 '72~'76년도 융자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20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42건 32,847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결산에 있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불용액, 과년도수입액에 대한 개념이 현실성 없이 이루어 지고 있음		○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정기 평가보고회를 확행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장부 정리 소홀 - 상수도 사용료 및 기타 사업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관리함에 있어 일자별, 건별 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 하여야 함에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결산 및 부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시정	○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즉시 완결조치하였고 ○ 특히 직제조정으로 착오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검을 통해 수정하였음	도시과

4.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 환경시설물 현지조사
- '97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
- 공공시설물 전기이용 실태조사



(조 사 활 동)

환경시설물현지조사

◑ 조사기간 : '96. 4. 22 ~ 4. 28

◑ 조 사 자 :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업명	위 치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알 유스호스텔	단양읍 천동리	○ 하수구 설치한 PVC관 지상 50M노출부분을 땅속으로 배관설치 바람 ○ 하수구 부문 최종방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하수구 지상노출 PVC관에 대해 땅속을 매설토록 개선명령 촉구(공문사본 첨부) ○ 하수구 입구부문에 최종 방류관 절단(사진 첨부)
천동 양어장	단양읍 천동리	○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 ○ 폐사송어 처리후 사진첨부 제출 ○ 시설기준 미달 및 침전지 미사용에 대한 조치후 결과 통보	○ 과태료 50만원부과 및 개선명령 (공문사본 첨부) ○ 폐사송어 처리(관련사진 첨부)
쓰레기 매립장	매포읍 어의곡리	○ 쓰레기 매립장 방역 철저 (1일 1회실시 조치바람)	○ 쓰레기 매립장의 1일1회 소독은 업무상 곤란하며 주2회 실시토록 보건소에 협조의뢰 (공문사본 첨부)
한일시멘트 공업(주)	매포읍 우덕리	○ 전기정전시 포장실 및 상차실등은 자가발전기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제거장치를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배출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함 * 정전시는 모든 사업장을 중지하든지, 비산먼지 제거장치를 가동토록 조치바람	○ 전기 정전시 모든 사업장은 중지되며, 자가발전기 전력 또한 극히 미약하여 공작가동이 불가능함

사업명	위 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성신양회 공업(주)	매포읍 하괴리	○ 전기정전시 포장실 및 상차실등은 자가발전기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제거장치를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배출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함 * 정전시는 모든 사업장을 중지하든지, 비산먼지 제거장치를 가동토록 조치바람	○ 전기 정전시 모든 사업장은 중지되며, 자가발전기 전력 또한 극히 미약하여 공작가동이 불가능함
신성화성(주)	대강면 당동리	○ 산업폐기물을 노상방치 하지말고 보관창고 설치 요함	○ 사업장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창고를 정비하여 사업장 폐기물 보관활용하겠음 (사진첨부)
수질환경 사업장	단양읍 상진리	○ 침사지 침사물 제거시설 개선 . 수거된 침사물을 탈수후 건조된 상태로써 쓰레기 매립장에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침사물 제거시설로의 개선보완 요망	○ 침사지 설비 자동화 추진 . 수거된 침사물을 탈수후 건조된 상태로써 매립장에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침사물 제거시설로의 보완 조치 검토중에 있음 (자동화 설치 소요금액: 120,000천원)
상수도 사업소	단양읍 상진리	○ 계획적인 물관리 공급대책 시급 . 염소 및 약품투입시 비과학적임 . 식수검사를 위한 실험 기자재 및 전문직원 충원이 시급함	○ 염소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잔유염소 측정기준에 항시 적합토록 투입량을 조정하겠음 ○ 정수약품 투입량 설정은 실험실 기자재가 보완되는 대로 원수 실험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투입기준을 마련하여 투입량을 조정하겠음

사업명	위 치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실험기자재는 금년 예산 28,000천원으로 전자현미경 외 15종을 구입하여 상수도 신축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실험실을 설치, 운영하겠음 ○ 전문인력 충원은 추후 실험실 운영시에는 1명이 부족하게 되므로 인사부서와 협의 실험실 운영 이전에 충원토록 하겠음

'97주요사업장현지조사

◑ 조사기간 : '97. 6. 10 ~ 6. 21

◑ 조 사 자 :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재활용품선별창고 신축	매포읍 어의곡	174.79㎡	○ 시설물의 설치목적이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을 위한 것이므로, 작업차량의 진입을 돕고 작업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벽이 없고 천장이 높게 시공되었어야 할 것임 ○ 스치로풀 압출기 및 캔선별기의 효율이 저조	○ 지금까지의 사용실적 . 캡선별압축기 :23톤, PET병 압축기 : 3.5톤, 스티로폴 감용기 : 1.5톤등이며 ○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 전량을 선별창고에서 선별처리할 계획이며, 발생먼지 및 냄새 제거를 위하여 환풍기 5조를 설치할 계획임
상시리 하수도 설치공사	매포읍 상시리	하수도 117M	○ 현지확인시 하수도내 하수량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수도 너비 60CM, 깊이 70~80CM는 현지의 하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설계임	○ 앞으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음
대가천 옹벽설치 공사	매포읍 평동리	옹벽 38.9M	○ 사업장 하부 약 20M 지점과 석축의 높이 차가 심하며, 옹벽이 높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 난간대 설치가 요구됨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40M의 보호난간대 설치에 소요되는 8백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 시공하겠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발1리 포장공사	가곡면 성금리	포장 240M	○ 농로포장시 차량진입으로 소하천 교량(암거)을 부분적으로 파손후 방치	○ 현재 이 도로는 석재 운송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운송이 끝나는 대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음
어의곡1리 도로포장 공사	가곡면 어의곡리	포장 654M	○ 농지전용을 위해 투입된 중장비(궤도포크레인)가 차량이동이 안닌 자체이동하여 기포장된 도로를 전구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파손한후 방치하고 있음	○ 도로 입구에 제한중량 경고문을 설치하여 과적차량 및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공사	가곡면 사평리	3.163평	○ 비탈면 FRP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고 배수로와 지면사이의 틈이 메꾸어지지 않았음 ○ 주차장 포장요망 ○ 비탈면 조경식재 요망	○ 지난 6.13일 비탈면 배수로를 30~50CM낮추는 한편 배수로와 지면사이 메우기를 완료하였음 ○ 주차장 포장과 비탈면 조경은 현재 공사중에 있어 곧 완공될 것임
대대리 경지정리 사업	가곡면 대대리		○ 도수로 옆 비탈면 경사가 심하여 토사압역을 많이 받고 유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조립시 도수로는 부적정함	○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성격상 농한기인 겨울철 공사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조립식으로 시공하였음 ○ 향후 사업여건에 적합한 자재사용토록 하겠음
두음제 수해복구 공사	대강면 두음리	자연석쌓기 518㎡	○ 상부의 기존용수로 훼손후 미복구	○ 훼손된 용수로 부지는 개인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응하고 있어 복구가 불가능한 실태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방곡도에촌 전시관 설치	대강면 방곡리		○ 용광로 지붕이 짧아 용광로 1식이 우천에 노출됨 ○ 전시관의 창과 출입문이 조잡하여 전시관 이미지에 적당하지 않으며. 출입문 개폐시 틀이 맞지 않아 바닥이 긁힘	○ 가마가 우천시 노출되지 않도록 정비완료하였으며 출입문도 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수리하였음 ○ 단 전시관 창문과 출입문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도예원의 미관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임
덕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강면 덕촌리	포장 240㎡	○ 포장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아 미관이 나쁘며. 하천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대 설치가 필요함	○ 포장면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하여는 이후 공사부터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 추락방지 난간대(가드레일)는 예산을 투입하여 '97. 8월중 설치하겠음
소뜰 교량 설치공사	대강면 두음리	교량 54M	○ 교량의 시초점을 당초 석축지점에서부터 하지 않고 석축 4M안쪽에서부터 과다 설계함 ○ 교량 양쪽 날개벽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에 불편을 초래함	○ 공사시점을 석축 안쪽 4M지점으로 한 이유는 '95.10월 수립된 남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계획 홍수량(50년빈도)이 배제될 수 있는 단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하폭보다 넓게 시공하였으며 ○ 협소한 날개벽에 대해서는 농로 정비시 시정할 계획임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곡2리 용수로 설치공사	어상천면 연곡2리	용수로개거 174M	○ 도수로와 도로가 인접해 있고 도수로가 도로보다 낮아 보호난간대가 필요하며, 농기계 출입을 위한 출입구 도수로 복개가 필요함 ○ 도로변 갓길까지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어 차량사고가 우려됨	○ 가드레일 설치 및 도수로 복개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인 충청북도 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공사토록 하겠으며 ○ 농경지의 도로 갓길 침해에 대하여는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관계로 추수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음
임현3리 도로확포장 공사	어상천면 임현3리	확장 880M	○ 도로상태 양호하나 도로포장시 기존 소하천 석축을 일부 파손후 방치	○ 파손후 방치된 부분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였으며 ○ 파손되지 않은 잔여 200M 역시 재정비가 요구되어 예산반영 추진하겠음
덕문곡리 오수처리 시설공사	어상천면 덕문곡리	정화조 15㎥, 트레치 250M	○ 오수처리 시설내 FRP 배수관이 지면보다 높고, 배수로와 지면사이가 메꾸어지지 않았음 ○ 정화조 보호철망(휀스)설치에 있어 출입문 앞에도 꽃나무를 식재하여 출입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음	○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시공완료토록 하겠음
대전2리 농로개설 공사	어상천면 대전2리		○ 배수로 미설치로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발생	○ 미설치된 배수로는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상방리 하수도 수해복공	단성면 상방리	하수구10M 하수도125M	○ 하수구 흄관 이음새의 조인이 맞지 않아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	○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안도로 덧씌우기 공사	단성면 상방리	도로포장 69M	○ 도로 상.하행선 중앙 연결부분 이음 불량 ○ 기존 하수도의 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덧씌우기하여 하수도 보수시 어려움 있음	○ 도로 상.하행선 중앙 연결부분 이음은 AP재료로 보완토록 하였음
벌천리 도수로 설치공사	단성면 벌천리	도수로 260M옹벽 7M	○ 레미콘 차량 진입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도수로설치로 견고성과 내구성이 낮음 ○ FRP관 임시설치로 방치하고 있음	○ 설계 당시에는 토사 측구(도수로 점용)이었으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조립식 개거로 교체하였으므로 ○ FRP관 설치 역시 하천 상류부분의 유량, 유속을 고려한 주민들의 건의로 설치한 사항으로 개량요구가 있을 시에는 검토후 교체토록 하겠음
대잠리 뚝다리골 소하천석축 공사	단성면 대잠리	석축 118M	○ 소교량 설치지역을 흄관2본 매설후 복개하여 하천너비가 감소되어 폭우시 범람우려됨	○ 예산확보하여 암거를 설치하겠음
상진지구 관광수변 개발	단양읍 상진리	수변개발 600M 보도정비	○ 경계석 연결시 방향을 달리하여 미관이 나쁘며, 적벽돌 화분대 흙메꾸기시 포크레인 사용으로 무리한 압력으로 화분대 형태가 변형되고 모서리 붙임이 떨어짐	○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음
단양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단양읍 별곡리	송수관 2.3㎞ 배수지1식	○ 부서별 업무협의 미비로 송수관설치를 위해 '96년도 포장한 도로를 훼손하여 이중공사 부담 요인 발생	○ 앞으로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 폐 경계석 및 보도블럭은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하여 재활용토록 하겠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성면 상2리 도로포장	적성면 상2리	도로포장 9.8km	○ 도로옆 배수로 미설치로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범람함	○ 적성상수도 정수장 배수로 배출구에 맨홀을 설치 완료하였음
단양국궁장 진입도로 설치공사	단양읍 고수리	포장 220M	○ 차후 국궁장 설치시 많은 중장비의 진입이 예상되므로 도로를 먼저 설치함으로써 중장비에 의한 도로 파손이 예견됨	○ 당초 확보된 사업비로는 진입로 포장밖에 할 수 없어 우선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 시멘트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은 없을 것으로 봄
대전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어상천면 대전1리		○ 상수도 관로 매설시 커팅한 농로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민원발생	○ 공사 당시에는 상수도 관로 교체후 농로를 복구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방치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시 반영하여 복구토록하겠음
향산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가곡면 향산리	FRP승강장 1식	○ 우천시 빗물이 의장에 고여 배수구멍 설치가 요구됨	○ 현지확인후 배수구멍을 뚫어 조치완료하였음
가곡중학교 테니스장 백보드설치	가곡중학교	백보드14M	○ 면예산으로 중학교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당함	○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토록 조치하였음
관사담장 설치공사	영춘면 상리	담장9M 난방44.5㎡	○ 고나사의 활용도가 저조함에도 관리소홀로 매년 보수해야 하는 것은 행정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음	○ 행정건물 일제점검을 통한 건물 이용실태를 파악후 효율적인 건물관리 대책을 강구하겠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지적사항	조치결과
영춘면 게이트볼장 담장설치	영춘면 상리	담장32경간	○ 게이트볼장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담장과 옹벽시설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순위 결정의 개선이 요구되며, 부대시설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개선	○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주사업을 먼저 시행한후 부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사지원2리 경로당 주변정비 공사	영춘면 사지원리	중력식 옹벽32M	○ 옹벽의 두께와 높이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경로당 자체보다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	○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부대시설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면청사 차고 및 재활용품 창고신축	영춘면 사무소	콘크리트 25평	○ 차고의 천장을 필요이상으로 높게 설계하여 예산낭비	○ 추후 관공서 건물을 신·개축함에 있어서 용도를 고려한 적정설계로 미관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음
심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단양읍 심곡리	옹벽 37M 포장 160M	○ 옹벽의길이를 과소계상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하며, 진입로 포장은 다짐과 배수처리의 불량으로 미세한 크랩이 전구간에 발생하여 진입로 파손 가속화함	○ 추가공사가 요구되는 옹벽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곧 시공하겠으며 ○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배수로와 지반다짐공사가 설계에 누락되어 크랙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음

교통안전시설물현지조사

◑ 조사기간 : '97. 12. 29
◑ 조 사 자 : 전의원
◑ 참 여 자 : 충북도로교통안전협회, 단양교통운수(주), 관계공무원
◑ 주요점검사항
- 도로선형 및 노면상태
- 신호등 운영체계
- 교통안전 표지판 및 이정표 관리상태
- 기타 교통시설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매포읍 고양리	○ 김산군부대 입구 경보등18개작동 (제천·단양방면 각9개)	○ 4차선 도로로서 과속 및 S자형도로로 사고위험 예방차원으로 타지역보다 많은 등을 설치하였지만 운전자들은 지키지 않고 있음	○ 타지역 설치등을 감안하여 등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직영터 철길건널목	○ 왕복4차선 도로로 차단기가 1차선만 막을수 있는 길이가 짧고 철길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있음	○ 차단기가 1차선만 막고 있어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다른 차선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음	○ 차단기를 길게 하고 철로와 간격을 좀더 띄어 설치
5번국도 교량설치 (평구간)	○ 교량의 보도측구 (양끝)가 "ㄱ"자형으로 되어 있음	○ 차량진출입시 하륜부분 충돌로 차량 전복우려	○ "ㄱ"자형 보도양측 끝면 유선형(아루)으로 절단처리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현대시멘트 입구 삼거리	○ 제천→단양방면 운행중 현대시멘트 출입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 . 현대시멘트 진입 좌회전 신호주기 동안 단양방면 차량 정차	○ 좌회전·직진신호가 분리작동되므로 현대시멘트진입 신호주기 시간동안 단양방면 운행차량 불편	○ 직·자동시 신호처리 불가한 관계로 육교 설치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대시멘트 진·출입시 좌회전 주기 작동시 양측 횡단보도 신호기 보행신호 작동
현대시멘트 입구 삼거리	○ 단양→제천방면 운행차량중 삼곡1리 진입시 사고위험	○ 직진구역으로 좌회전시 차량추돌 우려	○ 좌회전 비보호 표지판 설치
5호국도 교량부위	○ 5호국도상 다리 구조물과 일반도로 접지부분 틈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승객 불편	○ 대형차량 운행으로 접지부분 이격 및 하중에 의한 도로 굴곡으로 충격에 의한 이용승객 및 운전자 불편초래	○ 5번국도상 교량과 도로 접지부분 포장으로 이격 최소화 조치
상시리 팔경주유소앞	○ 제천↔단양 운행차량과 광진,백광,진흥,건화광물 수송차량 진출입시 급경사 및 커브지역임	○ 양방향 진출입시 시야장애 및 가변차도 없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큼	○ 석회광물 수송차량 진출입 용이토록 가변차로 확보 시급
평동리 돌고개 (정상주유소 앞)	○ 제천→단양방면 차량운행시 도곡리 진입삼거리 부근 커브길 노면 구배가 낮음	○ 겨울철 결빙시 가드레일 방향 추돌 및 전복 위험	○ 제천→단양방면 우측차로 구배를 높여 사고위험 방지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한일사택 삼거리(평동우회 도로)	○ 단양↔제천방면 운행차량중 평동·적성방면 이용차량 좌회전차로 없음	○ 평동·적성방면 이용차량 차선 변경시 편도1차선에서 정지 ○ 1·2차선 동시운행 차량 평동·적성방면 대기차량과 추돌위험(경사지)	○ 앞으로 2001년 개통 예정인 적성 IC진입 도로로 좌회전 가변차로 확보 및 우측도로 확포장 ○ 단양→제천차량 안전성 확보 ○ 진입전방 100M지점에 도로안내 예고준비판 설치
성신 삼거리	○ 제천→단양방면 차량중 성신양회 수송차량 진입시 좌회전 신호주기 방법에 따라 운행	○ 직·좌회전 신호주기 별도작동으로 단양방면 차량이 좌회전 주기시간 정차로 단양방면 운행차량 불편	○ 횡단보도 이용 주민안전 측면에서 직·좌 동시 신호 불가
백광소재 삼거리	○ 백광소재에서 5호국도상 출입시 가변차로가 없음	○ 백광소재 차량 5호국도 진입시 단양↔제천방면 운행차량 급정차 및 추돌우려	○ 양측도로 가변차로 확포장
단양역 앞 삼거리	○ 단양역앞 버스 승강장 없음	○ 열차이용 승객(관광객) 버스 승강장이 없어 우천시등 불편	○ 기존 승강장 위치에 설치 시급
단양심곡리 꽃거리가든 앞 삼거리	○ 단양→영주방면 우행시 심곡리 하차승객 위한 승하차 표지판이 없어 불편	○ 안내표지판이 없어 하차승객 교량위 정차요구 ○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	○ 이용승객 불만해소 위한 승하차 승강지역 표지판 설치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단성면 북상교 앞	○ 영주→단양방면 버스운행시 단양 공고학생 승차대기 장소없음	○ 단양공고학생 단양방면 시내버스 이용의 경우 우천시 대피 및 대기장소가 없어 불편	○ 승강장 설치 요망
대강면 장림리 대강휴게소 앞	○ 영주→단양운행시 차선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지역임	○ 대강소재 구도로에서의 우회도로 진입 및 영주→단양방면 우회도로 동향운행에 따른 병목현상 사전에고 표지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 초래	○ 영주→단양방면 우측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및 소재진입도로 부근 차선폭이 좁아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 노면안전지대 및 노면표시병 설치로 1차선 유도
대강소재지 진입 삼거리	○ 소재지(면사무소)진입3거리(단양→대강소재지) 우측차선 노면 구배가 낮고 빗물이 고이는 지역임	○ 대강소재지→단양진입시 노면이 낮아 우회도로(영주→단양)운행차량과 추돌위험 ○ 노면이 낮은 지역, 눈비가 올 경우 겨울빙판에 의한 교통사고 상존	○ 배수구 설치 및 노면 경사도 조정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 휴게소앞	○ 노면이 고르지 않아 물이 고임	○ 집중호우 및 결빙시 커브지역으로 사고위험이 있음	○ 노면정리
단성면 대잠리→가산리	○ 대잠리에서 가산방면 1㎞지점 낙석	○ 우천시 및 해동기 낙석발생상습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	○ 낙석방지시설 설치필요(30M)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단양읍 고수삼거리	○ 가곡→단양방면 고수삼거리 우회도로가 없음	○ 관광 성수기시 고수·천동방면 차량 정차로 단양시가지 운행차량우회차로가 없어 운전자가 불편	○ 우회도로 갓길 확포장 · 현 보도블럭 제거 (가곡→단양방면우측) · 신호등시설부분 제외 ○ 교차로 부근 교통사고 빈발로 단양시가지 전역 정기신호 작동 교체
가곡면 사평리 시가지	○ 소재지 및 마을 진출입시 중앙선이 없어 법규위반 사례 많음	○ 중앙선 설치로 법규위반사례 발생 및 교통사고 발생시 주민피해	○ 중앙선 제거 및 일단정지 양방향 표시
가곡면 가대1리 커브지역 (궁골)	○ 커브지역으로 겨울철 결빙상존 위험	○ 겨울내내 음지지역으로 결빙시 운행차량 사고 위험	○ 지속적인 재설작업 및 모래작업 실시 ○ 위험지역 전후방면 위험 결빙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영춘면 오사리 (화산골 급커브)	○ 경사가진 급커브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 선형을 바로잡지 못한 경사진 급커브 도로로 겨울철 빙판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임	○ 도로선형 변경
영춘면 유암리 (상유암 급커브길)	○ 경사가진 급커브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 선형을 바로잡지 못한 경사진 급커브 도로로 겨울철 빙판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임	○ 도로선형 변경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영춘면 별방1리 (학교앞 교량 건너편)	○ 급커브길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임	○ 급커브길로 과속 운행시 추락사고 다발지역임	○ 도로선형 변경
임현2리 횡단보도 지역	○ 횡단보도(어상천→가곡방향)일단정지 미표시 및 중앙선 설치로 좌회전 불가	○ 보행자 횡단시 인사사고 위험	○ 양방향 일단정지 및 차량 좌회전 토록 중앙선 제거
임현리 단산중고 앞	○ 학교 학생 진출입 부근 안전표지 전무	○ 학생 등하교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사사고 위험	○ 속도제한 표지판 및 요철(과속방지)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어상천 초등학교 앞	○ 학교학생 안전시설 전무	○ 학생 등하교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사사고 위험	○ 과속방지 요철 설치
어상천면 석교1리 선암분교 앞	○ 급경사 및 "S"자형 도로로 겨울철 결빙시 사고의 위험 상존	○ 도로선형이 "S"자로 차량전복 발생(겨울철)	○ 도로선형 직선으로 변경(임야절개)
영월군남면토교삼거리 (사택앞)	○ 토교 삼거리 단양방면 도로안내 표지판 없음	○ 제천·영월지역에서 단양방면(구인사등)운행차량이 도로안내표지판이 없어 남면 토교리 마을로 진입	○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이용승객편의 및 래방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설치

위 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어상천면 소재지(녹연 삼거리앞)	○ 어상천 대전→단양·제천방면 삼거리 교통안내 표지판이 작게 설치 ○ 전후방 각100M .30M지점에 안내 표지판 설치	○ 도로안내표지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 소재 삼거리 진입시 운행방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운행자 불편 ○ 현재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작고 낮게 설치되어 차량주차시 식별곤란	○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어상천면 소재지 우회도로 설치시 재조정 검토
연곡2리 옹골교 부근	○ 연곡2리 중거리→연곡1리방면 중간지점 커브지역 반사경이 없음	○ 식별곤란으로 운행차량 및 경운기 운행시 잦은 추돌발생	○ 반사경 설치
연곡1리 (꿩사육장) 앞	○ 도로폭 협소와 갓길이 없고 도로와 농경지 높이 편차가 1.5M~2M정도임	○ 야간 가드레일이 없어 차량 전복 우려 및 농경지 경작민 인사사고 위험	○ 가드레인 설치 필요 (200M)
연곡1리 삼거리	○ 연곡·매포방향 및 제천방향 안내 표지판 없음	○ 도로 확포장 공사시 안내표지판 철거(파손) ○ 운행자 불편초래	○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연곡1리 (초등학교) 앞	○ 연곡 초등학교 앞 급커브 지역에 차량유도 표지판이 없음	○ 초행운전자 과속으로 위험지역 통과시 급커브로 차량전복 발생	○ 차량유도 표지판(갈매기 표지판)설치
임현2리, 율곡리, 석교2리	○ 중앙선 설치로 좌회전 불가	○ 마을 진출입 불가	○ 좌회전(마을)진출입 토록 중앙선 제거

공공시설물 전기이용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8. 2. 10 ~ 2. 15

◑ 조 사 자 :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

◑ 참 여 인 :
- 박완순 박사(대덕에너지 기술연구소)외 연구원2명
- 박봉일 대표 (대양전기(경기.김포))

◑ 필요성
- IMF 체제하에 정부에서는 초긴축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등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국민모두의 솔선과 참여를 바라고 있음
- 이러한 국가의 경제난국 해결을 위해 총체적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작은 실천과제이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전기)운영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 에너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알뜰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분석결과 (예산절감 방안)

Ⅰ. 심야시간대 전기를 이용한 동력비 절감

□ 현 황
- ○ 대 상 : 단양상수도 정수장(610KW고압전류)
- ○ 정수량 : 15,000톤/1일
- ○ '97년간 전기 사용료 : 155,721천원

[2] 절약을 위한 이행조건

① 근무자들의 확고한 사명감과 근무의식으로 하고자 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
- 계절별, 시간대별 수용가의 물 소비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간 소비량 만큼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물확보
※ 펌핑용 모타를 심야시간대 주로 운영

② 배수지 물 확보능력 부족시는 주간 및 저녁시간대의 낮은 전력요금을 최대한 이용

※-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

계절구분	여름철(7월~8월) 봄,가을철(4월~6월, 9월) 겨울철(10월~익년3월)	시간대별	심야 (22:00~08:00) 주간 (08:00~18:00) 저녁 (18:00~22:00)

구 분		기본요금 (KW당)	전 력 량 요 금 (KW/H당)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6월	4,5,9월	
선택(1) 요금	고압 A	3,960	심 야	29.20	29.20	29.20	29.20
			주 간	79.40	54.50	45.30	51.10
			저 녁	54.50	45.30	54.50	61.30
	고압 B	3,660	심 야	28.80	28.80	28.80	28.80
			주 간	76.70	52.70	43.70	49.40
			저 녁	52.70	43.70	52.70	59.20
선택(2) 요금	고압 A	4,560	심 야	26.20	26.20	26.20	26.20
			주 간	76.40	51.50	42.30	48.10
			저 녁	51.50	42.30	51.50	58.30
	고압 B	4,220	심 야	26.00	26.00	26.00	26.00
			주 간	73.90	49.90	40.90	46.60
			저 녁	49.90	40.90	49.90	56.40

[3] 기대효과

o 전기요금 및 에너지 절약과 국가시책 참여

Ⅱ.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무 자체인력 활용

1 전기안전관리 업무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4조
- 수수료율 : 별표 1과 같음

※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
시설별 규모에 따라 월 2~3회정도 현지 출장하여 테스타기 등으로 전압 상태 등 이상유무를 파악 이상이 있을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잘못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님)

○ 대행검사 및 '98예산액
- 대 상 : 17개소 (군본청, 온달동굴, 농촌문화체육센타, 보건소, 지도소, 상수도 시설, 수질처리장, 위생처리장, 군민회관, 읍면)
- 금 액 : 33,296천원 (별표 2)

2 개선방안

○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58·59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중 전기기사 2급을 갖춘 전기직 공무원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할 시 1,000KW까지 자체점검이 가능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이 불필요

○ 자체인력 현황 : 3명 (기사2급 1명, 기능사2급 2명)

※ 업무 수행자 위험업무 수당지급 : '98예산편성 지침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 월 30,000원이하
-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 월 15,000원이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확보도 선행되어야 함

3 기대효과

○ 자체인력 활용시 예산절감 기대

별표 1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수수요금표

구분 / 계약전력	수수료 (원)		비고
	저압	고압	
50(80)KW미만	51,800	66,500	1. 부가가치세별도임 2. 전압 299KW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KW미만의 수수료를 적용
50(80)~100KW미만	59,200	72,700	
100~150KW미만	66,000	86,900	
150~200KW미만	67,100	90,800	
200~300KW미만	70,200	100,500	
300~400KW미만		145,200	
400~500KW미만		159,400	
500~600KW미만		230,100	
600~700KW미만		289,200	
700~750KW미만		328,500	
750~800KW미만		376,300	
800~900KW미만		447,900	
900~1,000KW미만		513,600	
1,000~1,200KW미만		647,800	
1,200~1,500KW미만		777,300	

별표 2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단위 : 천원)

담당부서	금 액	비 고
총	17개소 33,296	
문화공보실	총 4,320 . 온달동굴 : 2,160 . 농촌문화체육센타 : 2,160	
재 무 과	7,680	
보 건 소	4,400	
지 도 소	216	
시설관리사업소	총 14,520 . 상수도(6개소) : 8,640 . 수질처리장 : 2,880 . 위생처리장 : 1,800 . 군민회관 : 1,200	
읍 면	2,160	

Ⅲ. 수력을 이용한 자가 전력생산 활용

1 현 황

- ○ 자가전력 가능지점 : 3개소 (수질처리장, 온달동굴, 상수도배수지)
- ○ 위치별 이용방안
  - 수질처리장 : 시설물 주변가로등, 관리사무소 및 근무직원 후생 복지시설 (에어콘, 샤워온수)
  - 온달동굴 : 동굴내부, 주변 물레방아 및 편익시설물
    ※ 온달동굴 원 전기사용료 : 1,000천원 ~1,200천원 소요
  - 상수도 배수지 : 시설물 주변가로등 및 관리사 사용전력

2 수질처리장의 경우

- ○ 폐수로 1일 방류량 : 5,000톤
- ○ 자가전력 생산 가능량 : 4.5KW ('98. 1. 21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3 전문가 현지조사

- ○ 일 시
  - '98. 1. 21 : 대덕 에너지 기술연구소 (박완순 박사외 2인)
  - '98. 2. 7 : 경기 김포 수력시설 전문업체
- ○ 현지조사 : 온달동굴, 수질처리장, 상수도 배수지
- ○ 조사결과

〈에너지기술관리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와 수력시설 전문업체의 시설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수력시설전문업체〉

수력시설의 감가계산 기준을 15~20년으로 보아 본시설의 경우 30백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년간 4백만원정도의 전기절감 예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Ⅳ. 행정장비(PC. 복사기) 및 TV등 미사용시 절전의 생활화

1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시간

(자료제공 : 재무과 98.2)

계	PC		복사기	TV
	모니터	프린터기		
615	285	214	51	65

○ 사용시간(평균)
- 사 용 : 10시간 (08:30 ~ 18:30)
- 미사용 : 14시간 정도

2 절전이용 실태

○ TV는 거의 벽단자의 프러그를 뽑지 않고 TV내 스위치만 크고 있는 상태이며 PC 및 복사기는 일부 벽단자의 프러그를 뽑고 있으나 그 이행 상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체전기 소모량이 전자제품의 경우 시간당 평균 5~6W의 전력이 소모
※ 자료제공 : 에너지관리공단
※ 실제 프러그 미제거후 퇴청시 14시간×6W = 84W의 전기가 소모 금액으로 환산하면.
- 615대×14H/일×5~6W/H×30일/월×66.8월 = 103.526원(월)
- 103.526원 ×12월 = 1.242.319원(년)

3 기대효과

○ 요금절약 : 년 1.242천원정도와
○ 행정장비 및 TV등 내구연한 이상 사용가능으로 장비구입 예산절약

V. 절력사용 PEAK치 제어를 위한 비상발전기 활용

1 현 황

○ 비상발전기란?
재난이나 비상시 전기가 단전되었을 경우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발전장치에 의한 전기를 자가생산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 을지연습시 지적 및 '97. 7월 실제 전기가 단전되어 통신소통이 잠시 중단되어 혼선을 초래한바 '98당초예산에 발전기 구입비로 50백만원 확보

○ 설치장소 : 군본청 (위치 : 추후결정)

○ 군본청 전기상용 추세

○ '96. 1월 변압기 승압공사 (125KW →375KW) ○ 에어콘 각실과 설치 및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냉장고 등 증가

2 전력 기본요금 산정

○ 군본청의 경우 일반 고압전류로 년중 최고 PEAK치를 기준하여 (시간당 최고로 많이 쓰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년 기본 요금을 산정하고 있음

3 기대효과

○ 여름철(하절기) 에어컨(냉동기)을 사용할 때 전력사용이 가장 많아 부분적으로 발전기를 사용 최고PEAK치를 제어해 줌으로 기본요금 절약 기대

※ 사례 : 제천시청의 경우 비상발전기를 이용하고 있음

Ⅵ. 가로등 계약체계 개선

[1] 전기수용계약 종별구분 (전기공급규정 제62조)

1. 주택용 전력
2. 업무용 전력(가.전압전력, 나.고압전력(A), 다.고압전력(B)
3. 산업용 전력
   가. 산업용 전력(갑) (1.저압전력, 2.고압전력(A), 3.고압전력(B)
   나. 산업용 전력(을) (1.고압전력(A), 2.고압전력(B)
4. 농사용 전력 (농사용전력(갑),(을),(병))
5. 가 로 등 (가.가로등(갑), 나.가로등(을))

[2] 가로등 기준 (전기공급규정 제68조)

>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교량, 공원등에 조명용으로 설치된 전등 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海空路)표시등, 기타에 준하는 전등(도형기기를 포함) 수용에 적용

1. 가로등 (갑)은

   ○ 사용설비 1KW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전기계기의 설치가 곤란한 수용에 적용 (다만 주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수용은 제외)

   ※ 가로등(갑)에 대하여는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정액제」로 요금을 계산(150W→ 월3.800원, 200W→ DNJF 4.150원)

2. 가로등(을)

   ○ 가로등(갑)이외의 수용에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 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

3 문제점

○ 국가의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 운영을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로등(갑)을 적용받고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전액 전기요금을 납부 및 징수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는 절약이 되고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수입이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의 납부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읍면별 총 가로등 수〉

계	단양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2,814	618	731	199	247	137	368	239	275

4 개선 및 기대효과

○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한전 또는 중앙 부처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 격등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시 예산절약 기대

5. 건 의 문 채 택 현 황

-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인가 건의문
- 영월댐건설과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소 건의문
-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 지역개발세 개정안에 관한 건의문
-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한문
-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삭도시설에 관한 건의문
-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을 위한 건의문
-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비 지원 건의문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인가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건의드리옵니다.

평소 단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지난 1985년 충주댐 완공과 더불어 신단양으로 이주한지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21C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군민모두 지혜를 모아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에서는 소백산과 월악산의 국립공원, 그리고 단양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조화있게 개발하여 지금은 전국제일의 내륙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연간 4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내의 3개 시멘트 공장에서는 전국 시멘트의 30%를 생산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농특산품인 마늘, 도자기, 석공예등은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지난 8월에 제천까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천년대초에 제천~영주간의 공사가 완공되어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다면 우리 단양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앙에 위치한 관광과 공해없는 첨단산업지역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될것입니다.

우리 단양군민 모두는 중앙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완공되기를 염원하면서 단양과 서울간의 고속버스 운행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인구는 비록 5만여명에 불과하지만 단양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년간 4백만명을 넘어 조만간 5백만명을 육박할 것이므로 전국에서 단양군을 찾아주는 관광객의 편의와 우리 단양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고속버스 운행은 아주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태고의 역사와 70만년전의 수양개 구석기 유적지가 숨쉬고 있는 단양군은 앞으로 우리나라 21C세계의 중심역할을 완수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염원하건데 단양과 서울간의 고속버스 노선인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군민과 의회의원 모두는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국가발전과 지방화시대에 특성있는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있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5만군민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채택 이송합니다.

1995. 12. 9.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영월댐건설과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소 건의문

존경하는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장원공사장)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 지역사회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 환경문제를 비롯한 기상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와

물부족 현상등은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국민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차원의 해결에 고심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영월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중앙 관계부처의 보도 내용을 보면

'96년 3월 24일 환경부에서는 KBS 정책진단 「물 이대로 좋은가」에서 한강의 남는 물을 낙동강으로 보낸다는 내용등이 보도되었으며,

4월 2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1년 목표 물부족 해소를 위하여 중소댐 34개 건설내용중 수량이 풍부한 한강의 물을 낙동강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강~낙동강 연계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5월 2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5대강 「물길」 통합추진 계획에 따르면 계획중인 영월댐의 공급수량을 5억4천만톤에서 6억5천만톤으로 늘리고 직경 4M의 터널 21㎞를 뚫어 도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부처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정부의 일관성없는 발표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국민모두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사실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댐으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커다란 실망과 피해의식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수계를 타 유역으로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계절별, 강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천 유출량 자체의 변화가 심하여 물은 수질적인 면이나 수량적인 면 양쪽 다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수계의 물리적 유역변경 발상은 정부시책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781.304㎢ 면적중 (임야 82.8%, 농경지 10.3%, 기타 6.9%)27.6%에 해당하는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음은 물론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0.5㎢ 토지가 수몰되는 등 경제기반이 상실되었고 수질보존을 이유로 주변 개발제한의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나가 인구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관광성수기(6~9월)또한 우기를 대비한 댐의 무제한 방류로 유람선이 운항되지 못하는 등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역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침체지경에 처해 있고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사적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의 악화등으로 지난 91년부터 녹조현상이 발생 1급수에서 2,3급수로 전락되어 가는등 이용 가능한 토지 또한 대부분이 댐보상지역으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85년 충주댐 건설당시 정부에서는 그림과 같은 「전국 제1의 호반도시」」건설을 약속하여 당시 8만 군민은 정부를 믿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 군민모두가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모든 약속과 기대는 하나의 허망과 꿈으로 나타났으며,

그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한 관계 여러 부처에 청원, 건의등을 하였으나 무엇하나 해결된 것 없고

하나같이 검토,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10년이상을 끌어온 현실임을 볼 때 우리 단양군민들은 정부에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신단양 지역에서부터 33KM상류지점에 새로운 영월댐 건설의 발표 또한 댐 건설의 기본 논리인 하류지방의 수해예방과 농업용수의 공급, 이지역 유람선의 적정운항에 기여한다는 등의 학술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수몰민들을 위한 설득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장)님!

이상과 같이 이 지역은 지금까지 경기, 서울 등 2천만 수도권 시민을 위하여 피해만 입어 온 지역으로 국가차원의 배려를 바라고 있으며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특별히 조치하시어 전국토가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7. 9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5만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수준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고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몇가지 단순지표에 의거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충북의 최북단 3도의 접경에 위치한 산간오지군으로서 본군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타당성을 별지와 같이 적시하여 건의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은 1985년 충주댐 건설과 두개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강화로 지역의 낙후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군민 모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민 모두에게 미래의 개발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의 낙후지역형으로 재지정하여 전국토가 모두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4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지역개발세 개정안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세계화의 물결속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민생치안에 전념하시고 더욱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내무부 장관님께 5만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6.27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운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초일류의 자치단체가 되려고 혁신의 의지로 집행부, 의회 모두가 사고나 체제를 바꾸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고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또한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욕구와 기대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해결은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과 실망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도와 군간에 형평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 과세는 불합리 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의 지하자원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과세권이 전혀 없고 다만, 지하자원 채취과정의 자연훼손등 환경파괴와 제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로파손등으로 인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민 또한 직·간접적으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항구적인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지역개발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역개발세를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의 보고인 특수부존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를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존치하는 것은 지역개발세 재정 목적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자원의 세율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지하자원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분의 1」은 반대급부로서 미약하기 때문에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며,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용수의 세율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현행 발전용수는 발전용수 뿐만 아니라 대용수로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 발전용수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정액세로서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의 부과는 현행 세율이 낮아서 세목간의 세율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지역개발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존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훼손등을 대가로 한 지하자원의 조세이므로 앞으로 대체자원 개발연구와 지역기반에 일조하는 시·군세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9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한문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존경하는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님 께
한국수자원공사한강사업본부장

인간의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의 성장에 없어선 안될 가장 중요한 자원 관리에 대하여, 오늘을 사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많은 문제 해결에 고심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조속한 해결을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의 최북단에 위치한 오지군으로서 산자수려하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었으며 울고왔다 울고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심성이 소박하고 훈훈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 11. 29일 충주댐 건설과 관련 수몰지역에 대한 하천 예정지 고시(건설부고시 제426호)가 시작되면서 순박하고 소박하였던 우리 군민의 정서는 이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 등에 있어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사실상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시작되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당시 수몰민의 처참함을 생각하여 보면 참잡하고 서글픈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충주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니 앞당기니 하는 등의 이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였으며,

특히나 '83. 7. 20일 때늦은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공사로 지역여건을 무시한 '84. 11. 1일 조기 담수등,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수몰지역에서는 (지금의 단성면) 수몰민의 조기이주 독려를 위하여 단전, 단수,

통신시설의 절단등 지금 생각하여 보면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내 2.684세대라는 당시 전쟁과도 같은 상황아래서 군민의 대역사적 조기 이주는 오늘날 건축의 부실을 불러왔고 택지매입과 건축등으로 인한 융자금에 대한 군민의 부채만 떠않는 등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또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많은 농경지가 수몰됨으로 경제활동의 기반이 상실되고 메마르고 흉물로 변한 충주호는 관광객을 매년 감소시키는 주범으로 변모하는등 지역경기는 날로 어렵고 침체되어 더 이상 살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존경하는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님
한국수장원공사한강사업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도 말못하는 벙어리도 아닌 우린군민은 정부가 약속한 「전국 제1의 호반도시」 건설을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것을 믿고 수몰민의 아픔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 흔한 집단시위 한번 없이.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민에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까?

댐 관리 운영면에서 상류지역인 단양지역 주민의 기대와 정서에는 상반된 수도권을 위시한 하류지역 위주의 댐운영으로, 관광철 대부분이 낮은 수위로 관광산업 육성은 한낱 물거품이 되었고 댐 건설이전의 아름답던 남한강변이 훼손되고,

뻘형태로 남아 수질오염은 말할것도 없이 녹조현상이 수년간 계속되어 1급수에서 2~3급수로 전락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광지 면모를 흐리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지난해 서너차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등 일관성 없고 체통 없는 정부의 수자원관리 계획과 신단양 상류 33㎞지점에 위치한 영월댐 건설계획의 발표는 우리 단양군민을 더욱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위의식만 내세우고 소신과 대안없는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는 「 검토하겠다」,「어렵다」는 등의 앵무새와 같은 답변하길 12년, 어느 세월에 소신있고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는지,

오늘 우리 5만 단양군민은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하며 참을 수 없기에 두손 불끈쥐고 총 궐기 하는 바입니다.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존경하는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님
한국수자원공사한강사업본부장

기금까지 내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 방치한 잘못된 모습을 하루빨리 바꿔, 우리 5만군민의 바램인 수중보설치와 저수구역에서 제외된 개발 가능한 제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 줄것과,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낙동강으로 물을 방류할 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공개할것과 도담삼봉구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매년 투입되는 제반 사업비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국고지원등이 하루 속히 이행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5만군민은 지속적으로 총궐기하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끝가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군민의 명예를 걸고 밝히는 바입니다.

1997. 5. 22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삭도시설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작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난 해결과 4천5백만 국민의 민생안정을 비롯한 아름다운 국토의 대자연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지역주민의 고통이자 아픔인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호소하오니 동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96. 8. 17 ~ '97. 8. 16일까지 국립공원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과 '97~'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구역조정 용역등 정부의 추진상황과 국립공원 설치목적 등에 대하여 여러차례 방문 또는 건의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이곳 단양군은 군전체 면적 781.3㎢중 27.5%에 해당하는 214.68㎢를 두 개의 국립공원(월악산 66.492㎢, 소백산 148.188㎢)으로 나누어 지정함으로써 균형에 맞지 않는 탐방권역을 설정하였으며,

자연공원법 규제로 토지 이용행위 및 건축등 많은 생활불편과 이로인한 토지거래 회피현상으로 지가가 하락하는등 막대한 개인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편익시설 확충 또한 모든 투자가 월악산국립공원 본소가 위치한 송계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워 졌고, 단양지역은 일체의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고작 단양군이 기히 설치한 편익시설만 관리함으로써 상대적으로도 많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립공원구역내라고는 하지만 지방도 1개소와 군도 2개소등 도로상에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군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으며, 공원관련 민원은 본소(제천.한수.송계)까지 가서 처리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등으로 정부를 매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내의 도로유지관리를 비롯한 하천관리, 산림보호등 지역주민 일상생활 관련 제반업무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복구사업과 산불진화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의 모습은 이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는 단양의 대표적인 단양8경중 6경(구담봉, 옥순봉, 사인암, 하·중선암)이 있는 곳으로 제천시 한수면 지역과는 문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단양팔경의 명성이 퇴색되고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이곳이 어떻게 월악산국립공원지역이냐 하는 등의 의문을 자아내고, 탐방코스가 연결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양군은 1985년 5월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건국후 댐건설로 군청소재지가 수몰된 최초의 지역으로 2읍 3면 26개리가 수몰되어 구단양(현 단성면)에서 지금의 신단양으로 2,684세대라는 당시 전쟁과도 같은 상황 아래서 군민의 역사적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 제1의 호반도시」 건설을 약속하였으나 1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에 있어 수질보호라는 명목아래 각종 행위의 제한과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수많은 농경지가 수몰됨으로 경제활동의 기반이 상실되었고,

메마른 흉물로 변한 충주호는 관광객을 매년 감소시키는등 주범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댐 건설전의 아름답던 남한강변은 훼손되었고 뻘형태로 남아,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이 녹조현상이 수년간 계속되어 1급수에서 2~3급수로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흐리게 하는등

2개의 국립공원 지정과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개발제한등으로 지역의 개발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22일 5만군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합리한 모순점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 개선을 위하여 단양지역 66.5㎢모두를 월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지역은 군립공원로서 5만 군민 모두의 정성으로 국립공원 못지 않게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내 단양지역의 66.5㎢를 해제 요구함에 앞서 장회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본군에서 계획중인 상도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요즘음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매우 높은 이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자연훼손을 빌미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것으로도 예상은 되나 본 사항은 우리 5만 군민 모두의 바램으로서,

충주댐을 비롯한 2개의 국립공원등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이 타 어느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주댐과 2개의 국립공원 지정등으로 각종 규제와 통제속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이 금번 기회를 계기로 내륙 호반 관광도시로 제기능을 다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탈거리」를 제공함으로 묵어가는 관광지로 조성, 주민소득화는 물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7년 6월 3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을 위한 건의문

새정부 출범을 46백만 국민 모두와 함께 경축해 맞이 하면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복지증진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국회건설교통분과위원회 위원님께!

우리는 지난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너무나 제분수를 지키지 못한 과분한 생활로 허례허식과 과소비 등으로 오늘과 같은 IMF시대를 자초케하여 국가적으로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150만명이라는 엄청난 실업자 발생과 고금리 물가의상승등 국민생활에 있어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기로에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지혜와 슬기로 난국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21세기 일류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우리 5만 군민과 함께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일수록 국가의 안정과 국민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하며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천이 지역의 안정은 물론 정부를 신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정부수립후 댐으로 인하여 군청소재지가 수몰되는 최초의 지역으로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 제1의 호반 관광도시」 건설을 약속하였으나,

1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수몰지역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1996. 12. 12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영준 의원님 소개로 청원된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에 대하여,

당시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수위조정지댐 건설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상정된 안건이 「보류」중인 상태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위조정지댐이 건설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 수위조정지댐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① 수위조정지댐 설치시 상류지역 배수위 상승으로 추가 보상이 필요
② 수위조정지댐 에 매년 100만 M/T의 토사퇴적
③ 수위조정지댐에 오염물질 집중 유입시 수질악화 우려
④ 시공과정에서 충주댐 본댐 수위를 낮게 유지함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용수공급등 기능저하 우려등입니다.

그러나 '98. 2. 12일 한국수자원학회로부터 납품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①, ②, ③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수위조정지댐 공사중 하부 수도권 용수공급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금번 용역과업은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을 건설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으로서, 기술성(경제성)에 대하는 용역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문제를 거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으로서 우리 5만 군민 모두는 금번 용역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갖고 수위 조정지댐 건설에 청신호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건설교통분과위원회 위원님!

국가경제가 매우 여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13여년간 수몰민의 염원이 담긴 5만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오며,

기술성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 줄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의 연구분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수위조정지댐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내년 예산반영」과 보류중인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1998. 5. 1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범군민추진위원회일동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비 지원 건의문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작금에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

20세기를 사는 오늘 국가간 많은 분재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물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고가 나오고 있음을 볼때 물에 대한 심각성과 관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 '90년대 이후 지역적 물부족 현상이 발생되었고 특히 '94년 이후에는 3년째 겨울 가뭄이 계속된 바 있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모두 재인식하여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하겠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국민모두가 함께 힘써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에대한 수요증가로 물의 고갈현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 확산등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간다고 볼 때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생활쓰레기 발생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형태로

비닐, 플라스틱 등과 같은 난분해성 제품과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자연환경이 더욱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가슴 아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쓰레기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등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중 대부분(81%)이 비위생적으로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또한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이미 포화된 상태로써 새로운 매립장 확보등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우리 단양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군으로 충주댐 상류지역으로부터 여름장마시 한강의 발원지인 평창, 정선, 영월 등지와 산간계곡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충주호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수거에만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광지의 이미지를 매우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호 수질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 또한 매립화함으로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지 못해 수질의 오염화와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군 또한 현재 사용중에 있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써 새로운 위생적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장은 매립시설만이 아닌 1일 1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현대식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 시설이 완공될시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충주호 수질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이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십분 양지하시고

충주댐 주변지역으로 「수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신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동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5만군민을 대변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8. 5. 6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제3절 행정사무감사



(행 정 사 무 감 사)

■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현황

1. 감사계획

구 분	조 사 기 간	조 사 반 편 성	비 고
'95년도	'95. 12. 1(금)~12. 6(수)	○위원장 : 김수영 ○간사 : 김종태 ○위원 : 장익환, 박창수, 최상우 허수일, 장용두 (이상 5명)	제55회 정기회

감 사 분 야	감 사 위 원
일반행정	박창수위원, 김종태위원
농업·지역개발·관광	김수영위원, 허수일위원, 장익환위원
보건·사회복지·건설·도시	최상우위원, 장용두위원

2.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3. 감사결과 총평

『군민을 위한 행정』즉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속에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획일화된 틀속에서 소중한 것을 도외시하는 부분과 미래 예측적 행정추진의 부족한 일면을 볼때 우리 의원들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분야별로 지적을 하면,

■ 첫번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그 추진실태도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점 또는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은 중점관리하겠음.

○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할 대형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부족등으로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관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음.

○ 기획실소관 업무중 민선군수 출범후 군수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곡면 향산지역의 강변관광개발 사업과 어의곡지구 관광개발 사업추진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성 검토가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다시한번 주민의견을 수렴 신중히 재검토 해야 하겠으며,

○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이동시 순환보직의 인사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그런식의 인사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소홀한 업무추진은 물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 재무과 업무 소관중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두번째, 농업지역개발 관광분야입니다.

○ 그동안 7~8년 동안을 도담삼봉지구와 고수동굴 주변에 대한 개발을 말로만 추진하였지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계획만 세웠지 아직 군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으니 관련 담당부서에는 관광지개발에 획기적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 현재 군산하기관인 상수도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출되는 소요액은 연간 약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수입액은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매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행정추진에 있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수도사업소 운영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서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기술업체에서 설계용역된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사유로 추가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복지분야입니다.

○ 가정복지과 업무중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중 경로당의 상당수가 부실시공 또는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조립식 건축은 지양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완벽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지적하였음.

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기획실	· 용역억제 방안	○ 집행기관에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한 계획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수립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용역비만 낭비됨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계획은 지양토록 촉구함.	○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한 사업은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주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후 시행하여 용역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부대비 지출 부적정	○ 공보실, 사회진흥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용역 의뢰한 사업의 용역서 납품 이전사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특히 설계 용품비 지출은 사업부서와 재무과 모두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사업시행 이전에 부대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으며, ○ 설계용품비 지출시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 향후 실과 시설부대비의 엄정한 집행으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음.	
문 화 공보실	· 국립공원내 시설된 편익시설 관리운영 개선	○ 국립공원내 군에서 투자한 관광객 편의시설물(화장실, 안내판, 벤취 등)을 국립공원으로 이관 조치하여 군 예산절감 및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도록 검토후 조치요망.	○ 편의시설 (화장실 등) 건축물 중 건축물은 군유재산으로 매년 군 세입예산 산정배분기준(지방교부세 보조)대상 재산임. - 국립공원으로 이관시 중앙교부세 지원 감소 ○ 군비로 시설한 군유재산으로 유상매각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국립공원측과 이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내무과	· 공무원 순환보직 전보임용 소홀	○ 3년이상 장기근무자 전보임용 소홀 ※총23명 · 행정 12, 농업 9, 토목 2	○ 3년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는 '96 직제개편 인사시 반영 전보 조치하고 ○ 매년 말 정기인사시 3년이상 근무자는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감사제도의 시정	○ 현 감사 방법이 답습형 감사이므로 예방적 차원인 감사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현장감사로 강화하여 위배한 공무원에게 신상필벌 요망	○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금년도 감사방향을 비리가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월별로 집중감사를 실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여 주요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유도 하겠으며,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건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재무과	·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 사업부서 취득재산의 신속한 관리이전	○ 재무 45500-3093('95. 12. 27)호에 의거 각 실과소 취득재산 현황통보 요구 ○ '96년 1. 8 관리전환 완료 659필지 623,322㎡ - 문화공보실 16필지 11,719㎡ - 사회진흥과 243필지 75,393㎡ - 재무과 6필지 13,690㎡ - 지역경제과 1필지 8,827㎡ - 건설과 378필지 510,132㎡ - 도시과 15필지 3,561㎡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사회과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홍보 미흡	○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를 거쳐 수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조치바람.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나 마을까지는 통보하지 못한 실정으로서 '96년부터는 군에서 통보된 검사결과를 마을 이장에게도 통보하여 수질에 대한 이용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으며 수시 지도, 확인할 계획임.	
환경보호과	· 소음진동 배출 지도·점검 소홀	○ 도환지 67207-801 ('94. 7.28)관련호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 지역지정 및 규제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단양환경 67207-806 ('94. 8.27)자 고시에 민원발생시 조치한다함은 생활소음 규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처사임.	○ 생활소음 규제 지역고시 및 소음진동 규제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그외 지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음.	
가정복지과	· 경로당 관리소홀	○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당수의 마을 경로당이 신축되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동의 건물을 조립식 가건물로 신축하다보니 건실한 시공이 못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투자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추후 신축되는 건물은 견고하고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조치바람.	○ '91년도에 신축된 조립식 경로당에 대하여는 하자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5년도에 신축된 10동의 경로당은 조적조 스라브로 견고한 시공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조적조 스라브로 견고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음.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산업과	· 농산물 간이집하장 대상선정의 부적정	○ '95년도 추진한 사업중 다목적용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농민에게 선정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하여 총 6동중 5동이 1개면에 집중적으로 선정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사업자 선정시 이와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망.	○ 농림 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3권 246P에 의거 매년 12월~익년 1월말까지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추진하겠음.	
도시과	· 사업소 적자운영 개선방안	○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개선 부담금 분담 차원에서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 위생 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의 지원을 요구하고, ○ 상수도 사업소에 대하여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 현실화 방안 모색	○ 상수도사업소의 적자운영 해소를 위하여 『단양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요금 현실화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 3개로 분산되어 있던 기구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토록 하고, ○ 수도권지역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부담금과 국비보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해 나갈 계획임.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지 역 경제과	· 과태료 징수소홀 및 타지역 차량 이전대책	○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차량에 부과한 금액은 91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함.	○ 불법 주정차 단속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일제 압류등록 조치중에 있으며, - 앞으로도 미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정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대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음.	
		○ 타지역에 차적을 두고 본군에 와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차량을 관내로 이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함.	○ 현재 관내 주요 기업체의 물동량으로 소송하고 있는 관외 차적의 화물차량 및 중기 차량은 타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알선업체 소유 차량들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바 - 자동차 등록령 제2조 및 자동차 등록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 자동차의 등록지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관내로의 차적이전은 법적으로 규제가 어려우며 ○ 앞으로 관내에서 상주 운행되고 있는 관외차적 차량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대상차량이 있을 시 관내로 사용본거지를 이전토록 하겠음.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농 촌 지도소	· 인력관리 소홀	○ 전문 교육과정 채택 부적정	○ '96년도 중앙과 협의 전문 교육과정 최대한 수용 ○ 담당업무와 관련된 피교육생 선발 ○ 정원의 특기별 효율적 관리로 지도능률의 제고	
건설과 사 회 진흥과 문 화 공보실	· 건설사업 용역비 절감방안	○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설계시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함.	○ 기술직 공무원의 측량, 설계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이의 해소 대책으로 건설기술단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 현행제도적, 법률적 적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계획을 별도 수립하겠음.	
내무과	· 공무원 (일용직 포함) 감축운영 소홀	○ 정규직 신규증원 억제 3%, 비정규직 10%, 일용인부 10% 이상 감축운영	○ 행정경영화 측면에서 정규직에 대한 일정 비율 결원을 유지토록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고 ○ 비정규직(일용직 포함)에 대하여는 결원 발생시 충원억제로 점차 감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현황

1. 감사계획

구 분	조 사 기 간	조 사 반 편 성	비 고
'96년도	'96. 11. 29(금) ~12. 5(목)	○위원장 : 박창수 ○간사 : 장용두 ○위원 : 김수영, 장익환, 김종태, 허수일 (이상 4명)	제62회 정기회

감 사 분 야	감 사 위 원
일반행정	박창수위원, 김종태위원
농업·지역개발·관광	장익환위원, 장용두위원
보건·사회복지·건설·도시	김수영위원, 허수일위원

2.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3. 감사결과 총평

일부시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주민의 의견 반영이 상당부분 소홀히 처리되는 점과, 각종 사업은 일관성 있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되고 심도있게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중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고 아쉬움을 가지면서 분야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지적을 하면

■ 첫번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 군수공약 사업 추진중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시책사업, 예를 들면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개발,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 지역특산물 가공 산업의 육성, 전문교육기관의 유치등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은 군수취임 1년반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해당부서에서는 더욱 사업추진에 총력을 쏟을 때라고 생각하며,

○ 작년도 감사시 지적한 군정홍보지가 1가구에 1부이상 배달되는 점 또 외지차적이전, 공무원 10% 결원유지약속 등이 전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추진태세가 미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도 우려해 봅니다.

○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아무런 분석없이 시행하다 도중 시행중지하여 주민들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읍·면의 무인경비시스템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고도 현재 1~2명씩 숙직을 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책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하여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죽령 휴게소 명도시기가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매포복지회관, 대강상수도 배수지, 가곡복지회관, 적성농공단지관리사 등이 현재 공가로 비어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공유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때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단양군민회관은 여러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계제규정을 검토하여 유상임대 조치해야 할 것 임.

■ 두번째,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 우선 농업부문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명품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

○ 앞으로 시범사업은 가급적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꼭 자금지원이 필요할때에는 융자금지원을 확대하여 농가가 사업에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투자하여 몇 년간 직접 시험 재배해 보고 실질소득이 있다고 판단될때 농가에 년차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관광개발 부분에 미흡한 점은

- 우리 단양군은 명실공히 관광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양제1팔경을 비롯한 제2팔경, 고수동굴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와 명승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을 개발하고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관광군으로서 제일 우선이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점이며,

- 관광지 PR자료도 한종의 관광책자와 관광지의 위치표시 정도의 팜프렛만 제작되어 있는 실정도 안타깝습니다.

- 앞으로 우리군은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권역별, 코스별, 일정별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더 많은 노력과 투자로 진정한 관광단양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 건설부문에서는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비가 년간 4~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설계작업장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용역비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시행 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도 설계용역비가 4억2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꼭 필요할 시 사업전체 용역을 의뢰하지 말고 특수기술이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 또한 설계용역의뢰 대상사업이 발생하면 예산관리부서, 기술부서, 회계부서가 종합심의를하여 최소한의 부분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큰 몫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 보건·사회복지분야입니다.

○ 환경위생과 업무중 위생업소의 유동종업원의 관리체제가 아주 미흡하여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이 미진하여 부당요금 징수는 관례화 되고 있어 관광단양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적이고 부당요금이 없는 참으로 밝고 명랑한 관광단양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기획감사실	· 각종 사업계획의 보안관리소홀	○ 각종 사업계획에 대회비가 필요한 계획은 사업시행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나 고수재 정상사업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 시행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일반에 공개되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 직원 보안교육 실시, 문서관리 철저 등으로 현재는 계획단계의 업무가 언론에 노출되는 사례가 전혀 없음. ○ 그러나 주민의 "알 권리(행정 공개의 원칙)"와 밀실행정 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공개 위주의 행정을 기하고 있음.	
	· 예방위주 감사미흡	○ 군 자체감사는 예방위주 감사를 한다는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 조치사항이 동일 유형으로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음.	○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표본 감사를 하고 - 동일한 유형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완료함.	
문화공보실	· 고수동굴 입장료 인상 부적정	○ 동굴 관람료를 인상할때에는 인상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요인이 발생될때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후 인상하여야 함에도 '96. 8. 1부터 관람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인상 하였음.	○ 동굴 3개사 협의회의 개최 - 일시 : '97. 1. 17(토) - 내용 : 관람료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의 - 협의결과 · 단양장학회 기금 조성 · 고수동굴 30,000천원 · 노동동굴 2,000천원 · 천동동굴 3,000천원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내무과	· 장학사업 추진계획 미수립	○ 장학사업 세부 추진계획 미수립	○ '97. 2. 5 이사회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장학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 조성사업,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및 학교별 주요 추진방안 등 '97년도 장학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재무과	·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죽령휴게소는 임대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명도되어 재임대 되어야 함에도 임대기간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 매포, 가곡 복지회관, 적성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대강 상수도 등을 현재 공가로 방치관리하고 있음.	○ 죽령휴게소는 '97. 1. 20 전 임차인과의 건물 명도 소송의 승소로 건물 명도하였으며, 우리군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류중이며 채권확보를 위해 물건 압류 조치하였음. ○ 매포, 가곡복지회관을 읍 행사장, 민방위교육장,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자 발생시에는 임대 추진코자 하며, ○ 대강 상수도 배수지에 대하여는 향후 비상급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 적성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대하여는 '98년도 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사용허가코자 함.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관 광 진흥과	· 민자유치 홍보미흡	○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민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감한 홍보부족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상태임.	○ '97년도 민자유치 관광개발 사업대상지는 온달국민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토지 분양건으로 중앙지 1개사 및 지방지 1개사에 3회에 걸쳐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 향후 우리군의 민자유치 대상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주)한솔개발외 3개업체에 개별적인 자료제공과 현지답사를 완료중에 있음.	
농정과	·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시범사업은 사업후 성공 가능한 작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오래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명품화된 작목이 없고. ○ 시범사업을 농가가 할시에는 자부담원칙으로하되 자금부족 등 지원이 요구될 때는 융자 또는 일부 보조지원으로 농가가 정성껏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전액 보조는 지양해야 함.	○ 시범사업은 농가에 정착되지 않은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농가 비선호 사업이라서 보조율이 정책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시범사업의 전액 자부담 원칙은 사업성격상 곤란하며 사업 정착시까지 농가 안정을 위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이미 중앙정부에서 보조 및 자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량권은 없는 실정임. ○ '96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우량종자증식 사업외 21개 사업이 추진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며 사업비는 보조내시 자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앞으로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정착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대상자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지 역 경제과	·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 지연	○ 각종 사업 추진시는 충분한 법률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사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공업용지 사업지구 내 면적 일부가 도담역 확장 및 선로 증설 부지로 3,322㎡가 편입되어 공업용지 사업 추진시 면적미달로 사업추진 지난 ○ 국유재산 미 매입 토지중 1,342㎡를 재정경제원에서 철도청으로 관리전환 승인 ○ 도담역 확장 및 선로 증설 후 활용방안 강구	
산림과	· 로원관리 및 철쭉꽃 100만 그루심기 운동소홀	○ 각 읍·면에 조성된 로원관리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많은 면적의 로원을 갖고 있는 일부 읍·면은 관리에 지장을 초래 ○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운동 추진소홀 - 100만그루 심기 조기 완료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요하며 금융기관 예치금을 사업목적외 사용치 않도록 조치필요. - '94년 묘목양묘후 매년 100,000본씩 양묘하고 있으며, '97년에 50,000천원 예산필요 (당초예산 성립필요)	○ 각 읍·면에 로원현황 파악하여 면적에 의거 읍·면에 사업비 배정 ○ 예치금 35,255,401원중 26,420,000원을 새마을 운동 단양군지회에서 집행(1,000천원 금년도 헌수금) ○ '97년도 삽수 및 신규식재 - 삽수 양묘장 100,000본 연화봉 50,000본 - 식재 각 읍·면 26,100본 ※ 당초예산 미확보 추경예산에 5,048천원 확보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건설과	· 각종 공사 설계시 현장확인 및 주민 의견 미반영	○ 각종 공사 설계는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적정한 공사가 시공되어 민원발생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곡면 보발리 용소동 교량을 비롯한 일부의 공사설계는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의 미수렴으로 시공후 현상태와 맞지 않는 공사가 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	○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도시과	· 상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소홀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정시기에 공사가 시공되어야 하나 도전리 시장 상가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사발주가 늦어져 현재 설계중에 있어 결빙기 공사가 우려됨.	○ 특별회계의 운영상 세입의 결함을 우려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결빙을 피하여 사고이월 조치 후 해빙기이후 공사시행하여 완공하였음.	

■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현황

1. 감사계획

구 분	조 사 기 간	조 사 반 편 성	비 고
'97년도	'97. 11. 29(토)~12. 5(금)	○위원장 : 박창수 ○간사 : 장익환 ○위원 : 이완영, 장용두, 김종태, 최상우 (이상 4명)	제70회 정기회

감 사 분 야	감 사 위 원
일반행정	박창수위원, 김종태위원
농업 · 지역개발 · 관광	장익환위원, 장용두위원
보건 · 사회복지 · 건설 · 도시	이완영위원, 최상우위원

2.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3. 감사결과 총평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토록 권고해온 사항들이 감사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점과 우리 지역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군 행정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 가면서 이제 행정조직도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재정여건에 걸맞게 적절히 조정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매번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시간등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로한 조직개편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감축운영은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공무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당일 현재 108명의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구성한 29개의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1년동안 1~2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10개씩이나 되어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정리해야 할것이며,

○ '97년도중 행정심판 및 소송건수가 총 48건으로 민선군수 출범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행정마찰이 발생하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행정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할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 우리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하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비, 군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최근 농업의 구조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농민의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 그러나 감사결과 대부분의 보조금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원되어 이러한 편중된 보조금 지원이 순박한 농심을 상하게 하고 있어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물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농민이 드물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 도시·건설분야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군정의 성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생각하며,

○ 감사결과 민선군수 출범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97년도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총 89건의 공사가 사업부서와 감독부서를 달리하여 시행된 것은 감독 소홀 우려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하여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 각종사업 및 공사시행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설계하여야 함에도 '96~'97년도중 총 64건을 용역설계하여 17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는 등 무분별한 설계용역이 시행되었으며

○ 1억원이상 공사 35건중 22건이 설계변경 시행된 것은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관주도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로 확인되어 많은 개선이 요구됨.

■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각종 홍보안내물은 관광객이 보고 찾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군에서 제작한 일부의 홍보물을 조사한 바 지도 및 안내도에는 단양을 신단양으로, 단성면을 구단양으로, 575번 지방도를 33번 지방도로 잘못 표기하여 관광객을 혼돈케 하였으며,

○ 각종 사적지, 관광지등이 제위치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표기가 미흡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였으며, 우리군이 관광군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홍보 전략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회·보건분야입니다.

○ 먼저 사회분야입니다.

-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증·개축하고 보수하면, 경로당이나 기타 복지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 매년 경로당 신축을 위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임.

○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 최근 국민에 대한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타가 건립되는 등 보건행정에 있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소 아쉬운 점은 아직 면역성이 약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공동식수가 오염될 시 많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시설등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4.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기 획 감사실	· 과다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신뢰도 실추	○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승·패소에 관계없이 대국가 및 대주민 행정신뢰를 실추한다고 하겠음. ○ '97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건수가 총 27건으로 관선군수 이후 많은 행정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신뢰도를 실추하고 부대비용 등 예산이 낭비되었음. 《97소송 및 행정쟁송 현황》 계 27건 (승 6, 패 2, 계류 19) 국가 : 5건(승 2, 패 1, 계류 2) 행정소송 : 3건 (승소 1, 계류 2) 심판 : 2건(승소 2)	○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 국가소송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로 추후 당해 주민과 해당부서와의 긴밀협조를 조정 유도하여 쟁송사례를 최소화 해나가겠음. - 행정소송·심판 행정처분관련 중요문서는 중간 결재과정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업무담당(인·허가·처분)자의 법규연찬과 교육강화로 쟁송발생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에도 힘써 나가겠음. - 민사소송 쟁송사안 대부분이 상진관광호텔부지환매청구 및 죽령휴게소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광호텔 관련 소송사건은 (10건) 종결처리 되어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제반 절차가 추진중이며, 추후 쟁송발생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의 충실한 탐독 및 연찬과 법률고문변호사, 공익 법무관과 사전협의로 최대한 행정마찰을 줄이도록 힘쓰겠음.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기획감사실	· 중기재정 운영계획 미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 및 4항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은 충분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도담삼봉지구 개발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민자유치 및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왔음.	○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도담삼봉 지구 개발계획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97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 향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수립시에는 동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공보실	· 지역문화 축제예산 지원저조	○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축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단양홍보에 큰 몫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관광군인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와 단양홍보를 위해서는 행사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 '97년도 예산지원액은 소백산 철쭉제에 30,750천원으로 군민 체육대표선수 지원금 9,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 극히 저조함.	○ '98년도에는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축제 행사지원금 각 40,000천원, 문화원 사업비 23,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97년 72,750천원대비 30,250천원이 증액된 103,000천원을 확보하여 ○ 향토문화축제의 테마를 설정하고 전국적인 이벤트행사를 유치, 관광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21C 문화복지시대를 대비하고 향토문화를 보존·발굴·육성하여 명실상부한 향토문화축제 개최 추진.	
	· 단양 국궁장 진입로도 사업 부적정	○ 충분한 계획·검토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장 변경을 초래하였으며, 기 포장공사로 인한 19,073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차질을 초래함.	○ 향후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분석으로 부대시설은 주사업이 확정된 후 시행하여 주사업 변경으로 인한 부대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관광진흥과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소홀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은 공동 사용할 시설로 관에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복지회관을 미활용하거나 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활용이 미흡할 뿐아니라 시설물도 개·보수 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전수조사하여 철거대상, 보수대상 등을 구분하여 도 일괄보수 및 철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열악한 군재정상 보수 및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의 반영 등을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겠음.	
	·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소홀	○ 온달국민관광지중 공공시설은 90% 공정이지만 부지분양은 28%(2필지)로 추진이 미흡함.	○ 미분양 부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분양입찰을 시행하였으나 - 여관부지의 건축규모 제한(2층)에 따른 투자전망 불투명과 - 관람시설, 스포츠타운 부지의 입지여건 불합리로 분양 신청자가 없는 바 ○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 여관부지의 건축제한 완화(4층) 후 분양방안을 재시도하며, - 기타부지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박물관, 전통혼례장등 타용도 시설부지로 변경하여 민자 또는 공공시설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내무과	· 공무원 관외 거주자 다수	○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은 자동차세등 지방세 확충과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것임.	○ 직원교육 실시 - 일시 : '98. 2. 2 - 대상 : 300명 (본청공무원) - 내용 :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관내거주토록하여 주민과 일체감 조성 및 지방세 확충 · 향후 인사(승진, 전보)시 관내 거주 직원우대	
재무과	· 각종 과오납금환부 증가	○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따른 주민 불만 초래 방지대책 강구	○ 과오납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주요내용 -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자료의 체계적 관리 - 비과세, 감면사항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 이중납부 예방 - 세무 공무원의 직무 및 의식교육 강화 · 법 개정에 따른 세율, 과표등 적용요령 · 무소신, 무사안일 근무행태 개선 - 지방세 과세예고제 확행 · 이의신청 기회부여, 착오납부 방지 - 부과징수에 대한 실명제 실시 · 담당자의 책임의식 고취 · 완벽한 부과징수 유도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지적과	· 지적 불부합 토지정리 미흡	○ 단성면 상방리 143-5(14필지) 및 영춘면 상리 409-11(7필지) 등 총 21필지(18인 소유)가 지적 불부합.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추진계획 수립에 의거 일소하고자 함. ○ 경계정정에 따른 합의서 날인종용 '98. 1. 1~6. 30	
사 회 복지과	· 영세민 한우입식 사업저조	○ '87년부터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에 의거 실시된 영세민 한우입식 사업은 '95년 25두, '96년 9두가 입식되는 등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97년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입식두수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총34두를 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재입식함으로 입식두수의 감소는 없으며 입식두수가 많은 연도와 적은 연도가 있음. ○ 한우 입식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폐지 등은 도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며 조례의 폐지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료값의 폭등(2월중 포당 1만원을 호가)및 한우값의 폭락으로 입식자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시·군에서 도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98년중에 결론을 짓고 조치(송아지 값의 환수 등)할 계획에 있음을 회시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환 경 위생과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미흡	○ 환경개선 부담금이 -'96년도에는 7,029건 86,697천원이 부과되어 6,897건 81,840천원(95%) 이 징수 되었으나 -'97년도에 8,404건 137,966천원을 부과하였 으나 7,245건 112,276천 원(81%)이 징수되어 실 적이 부진함.	○ '97. 12.22 자동차 309건 압 류등록 ○ '98. 1.26 시설물 40건 압류 예고(2차)통지 ※ '98. 1.14일 현재 7,649건 123,612천원, 징수율:90%	
지 역 경제과	· 공무원 관내 차적이전 부진	○ 관내 기업체 및 운수 업체의 차적 본군이전 실적은 감사 당일 현재 목표 101대대비 145대의 실적으로 매우 높은 성 과를 보이고 있으나. ○ 지방세 확보에 솔선 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 원은 목표 28대에 22대 의 실적으로 다소 저조 함. ○ 조속한 시일내 공무 원이 자진 차적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의 관외 차적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8. 2월말일한 ○ 관외차량 보유 공무원 본 군 차적이전 추진 - 추진기간 : '98. 4월말일한 ○ 신규 및 전입공무원 발생 시 차적이전권유 : 연중수시	
도시과	· 상수도 취수 원수시설 확장미비	○ 현 덕천 취수장은 갈 수기 및 모터고장시 원 수부족으로 단양읍 별곡 리 취수장의 원수를 보 충하고 있어 취수장으로 서의 기능이 저하됨.	○ 사업개요 - 공사비:1,100백만원정도 - 취수관로:450mm 3.2km 60마력 ○ '98년도 600백만원 확보 자재구입 및 일부구간 시공 '99년도 500백만원 확보후 마 무리 예정.	

실과소	제 목	지적(건의)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도시과	·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조성 미흡	○ 상수도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 매년 일반회계 또는 기타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 '96년 : 23.5%인상 ○ '97년 : 요금동결 ○ '98년 : 50%인상 예정 ※산정기초 생산원가 598.7원↔판매가 313원 ○ 90.73%로 인상해야 사용료가 현실화되나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음.	
건설과	·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낭비	○ '97년도중 시행한 1억원이상 공사 35건중 62%인 22건이 설계변경되어 시행 되었으며, 특히 19건에 862.046천원이 증액 시행되어 ○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격하되었음.	○ 당초 설계시 정확을 기하여 설계변경 지양 ○ 부득이 설계변경시는 설계변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사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민방위재난관리과	· 비상시 전기공급 미흡	○ 비상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전기공급 대책이 없음.	○ '98 당초예산 반영 (재무과 재산관리계) ○ 청사비상발전기 설치비 50,000천원 ※ 재무과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토록 하겠음.	
보건소	· 초·중·고교의 간이상수도 관리소홀	○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면역체가 약하여 좋은 물 공급이 필요하나 현재 각급 학교의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급수대책이 미흡함.	○ '98 초·중·고등학교 급수 관리대책 수립	

제4절 군정질문답변

■ '95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내용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55회 정기회	장익환 의 원	■ 월악산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을 군립공원화 할 용의는?	◆ '84.12.31 월악산을 중심으로 284.5㎢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단성면 장회를 중심으로한 설마동 계곡과 상·중·하선암등 선암계곡, 대강면 사인암, 황정지역 일부등 66.5㎢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관내의 월악산국립공원 지역내는 원시적인 자연림의 보존가치나 희귀성 동·식물의 서식 측면에서는 크게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나 구담봉, 옥순봉, 설마동, 선암계곡등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목적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며 관내 국립공원구역내에는 8개소의 취락지구와 주요국도, 지방도, 군도가 포함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단양팔경중 6경이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단양관광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립공원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약사항을 완화하고 공원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 또는 재정토록 건의해 나가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박창수 의 원	■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은?	◆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하여 온 경영수익사업은 '95년도에 관광유원지개발사업 운영 등 16개사업을 추진 9억5천3백만원의 수익을 얻어 전년대비 14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수해지역의 자연석 판매수익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재산임대 수입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수익계를 신설하여 경영수익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모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박창수 의원	■ 군수공약사업 28건중 '97년이후까지 계획된 8건은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재원조달 등 추진계획은?	◆ 군민에게 약속한 54건의 사업은 크게 나누어 시책사업 20건, 예산사업 28건 기타 중앙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업이 6건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군수공약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정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였고 매월 2회의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실적을 점검 하였던 바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섰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임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군수공약사업은 군정의 실천방향이며 앞으로 제가 추진해야할 군정방침임으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으나 모든 공약사업을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폐기하여서도 안되며 임기중에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일지라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	■ 온천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단양 대강 남조온천은 '92.12.11 매포읍 우덕리 이장금 외 1인이 발견하여 '93.4.30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하였음. - 그후 '94.7.21일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충북도에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하여 '94.8.22일 충북고시 제94-98호로 지구지정 승인되었으며 '94.9.5일 온천지구지정에 의한 한시적 온천 이용허가를 득하였음. -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5.6.2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현재 충북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한후 환경영향평가→관광지지정→온천개발사업계획승인→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연차별 개발로 2006년까지 민자유치를 통하여 단양온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임.	〃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원	■ 행정공무원의 오지 출·퇴근 개선의향은?	◆ 금년도 상주인구 조사결과 우리군의 인구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요인 ① 자녀교육상의 문제 ② 지역내에 취업할 일자리 부족 ◆ 우리군의 공무원중 자녀교육 등을 위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107명으로 군전체 공무원의 16%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1일 이후 자동차를 가진 공무원의 주소지 이전 권유에 따라 31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앞으로 많은 공무원이 자진하여 참여할 것으로 생각됨. ◆ 인구유입시책의 근본적인 대처방안 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마련 ② 장학재단을 설립 명문학교 육성 ③ 공무원이 솔선토록 유도 ④ 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하에 동참유도	단양군수 정 하 모
	허수일 의원	■ 관광과 농업의 투자 형평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 우리군은 임야가 82%, 농지 및 기타 18%이며, 농업인구는 '94년말 현재 총인구의 31% 정도로 농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96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540억원 정도로 분야별 투자비율은 일반행정 33%, 사회개발 23%, 경제개발 40%, 민방위비 및 기타 4% 이중 농업부분의 투자는 약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 대비 37.3%를 차지함.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하였음. 투자되는 비율은 본군 재정규모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본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95년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농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 군정 "명예정책 자문위원" 위촉 활용실적	◆ "명예정책 자문위원"은 본군에 연고를 둔 저명한 인사를 명예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단양지역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전문가적 조언, 정보교환, 출향인사의 애향심고취를 목적으로 위촉하였음. -의원 7명중에는 연구원, 공무원, 사회저명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단양군 현황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서", "신단양 10년사", "소백산철쭉제 행사안내서"를 보내드렸으며 군수님께서도 출장시 면담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토론한바 있으며 위원 7명중 4명(청주지역)과는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기획실장 임 형 규
	허수일 의 원	■ 단양비전 21계획에 의거 관광농업 특화지구의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산간무공해 조성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 단양비전 21계획은 어상천면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첨단영농시설과 기술을 집중 보급하는 계획으로써 유기농법, 수경재배, 유리온실 등 첨단영농을 우선권장하고 용수기반정비등 재배시설 현대화 및 공동경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임. "단양비전21" 구상은 충북의 "21세기비전"에 의거 계획되었던 사항으로 도에서도 현재까지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본군에서도 보류중에 있는 계획이며,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 본군 계획도 정비해 나가겠음. ◆ 금년도에 관광농업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영농육성사업으로 5개영농단에 127백만원, 조경농업으로 관광작물인 메밀을 단양1ha, 가곡2ha, 단성 2ha 등 총 5ha를 도로변이나 강변에 심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어상천 대전리 송림목장에 염소 가공시설 사업으로 농축기외 4종 11대를 지원하여 흑염소 250두를 방목하고 가공시설도 갖추었고 산간지역인 단산, 적성지역에 원형회전식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2동을 설치하여 연간 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원	■ 경영화 행정 추진상황은?	◆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지 임대운영 등 16건에 총수입이 10억4천5백만원으로 9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5천3백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고 지난 11월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개최결과는 총제안 건수는 20건으로써 내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 관광자원을 활용한 분야 5건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제작 판매,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수학여행 유치, 군직영 관광지 개발, 금수산 개발계획, 관광안내소 활용방안) - 토지이용 계획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5건 (군 직영관리 잔디포 조성, 매포지방공업단지 조성,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관광시설지구 내의 민자유치 방안) -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 2건 (구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고속도로변 휴게소 주변에 단양특산품 직판장 설치) - 제3섹타를 활용한 방안 3건 (단양 조경석 유통공사 설립 추진방안, 먹는 샘물 제조 판매업추진 방안, 도담삼봉 폐터널을 활용한 모험시설 설치방안) - 능률 경영행정 추진방안 2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인원 전산화 처리방안,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각종홍보 방안) -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검토 결과 시행가능 3건, 검토대상 17건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매포지방공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 업무부서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96년도부터 시행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기획실장 임 형 규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 도전지구 수변가로 조성사업 사후관리 방안은?	◆단양읍과 협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행정적으로 많은 계도와 유선자막 및 반회보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수변공원내에 가판장은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상시 주재 관리토록 함과 동시 봉사단체와도 협의 수변공원관리단체를 지정 관리토록하고 특히 현재 관광지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매일 순회하며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화 공보실장 장 명 수
	김수영 의 원	■ '96년도 상진리 수변가로 시 설 공 사 전반에 대한 규모와 시기 시설계획 준공후 운영계획은?	◆ 상진리 수변가로 시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변개발 위치는 상진리 근린공원에서 단양관광호텔까지 총길이 1.6㎞중 '96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에서부터 약1.0㎞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시설계획을 확정해서 '96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상진지구 수변개발사업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도전지구 수변가로 조성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준하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장용두 의 원	■ 적성면 각기리(선돌) 유적지를 공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 황 - 위 치 :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185번지 - 시 대 : 청동기시대 - 규 모 : 1호선돌(높이:280cm, 넓이:220cm, 폭60cm) 2호선돌(높이:160cm, 넓이:150cm, 폭30cm) 2. 선돌의 특징 암질은 모두 편암이며 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1호선돌은 남성 2호선돌은 여성으로 뚜렷하게 성별이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돌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돌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 3. 추진계획 현재에는 비지정 문화재이나 '96년도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정이된 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철책과 조경을 실시하여 선돌을 선사유적지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 업무량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부서별 인원조정 및 정원감축 의향은?	◆ 현재 의안 상정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결되면 2단계로 행정수요 증감을 고려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일단 줄이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선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다시 정원이 필요하게 될 때 정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절감 측면을 적극 반영하여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총 공무원수에 대한 일부분의 결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시 결원을 활용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비정규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음.	내무과장 김 진 두
	박창수 의 원	■ 단양군 6백여 공무원의 주거상황과 민선군수 취임후 달라진 공무원의 모습은?	◆ 현재 총 공무원의 15.9%가 인근 제천, 충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위기의식은 공직내부에서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최선 다하겠음.	내무과장 김 진 두
	김종태 의 원	■ 철쭉헌수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계획은?	◆ 철쭉헌수기금은 총106,406천원이 기탁되어 이에 대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4개 금융기관(임협, 농협, 충북은행, 우체국)에 분산예치하여 새마을운동 단양군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군에서 접수상황 및 기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까지 기금의 집행은 기탁금 106,406천원중 기식재된 50,000그루 구입비 59,660천원과 식재지 표찰제작비 1,750천원이 집행되었음. -현재 48,466천원(이자 3,450천원 포함)의 집행잔액은 4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96년도 4월중 전량 철쭉을 구입 식재할 계획임.	사 회 진흥과장 김 동 성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 원	■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주변 자연환경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구간의 사업시행을 자제할 용의는?	◆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시행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복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설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 즉 석축피해 구간에는 석축으로, 암거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암거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94년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부분복구공사가 아닌 개량복구 (예:하천폭을 넓히거나 물이 흐른 선형으로 소하천을 변경하는 경우) 구간에는 석축이 없던 곳에도 일부 연장되어 시공된 사업장이 있음. -석축시설이 인근에 주택이나 농경지 또는 마을진입로의 도로구조물 역할을 겸하는 구간의 경우에는 유실, 붕괴방지를 위해 부득이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는 있으며, 그외 구간에는 주변환경과 여건에 맞게 자연상태로 하천을 하상정비만 시행하는 형태로 정비하고 있음 -이상 답변드린 사업장의 재시공 복구사업이 늦어진 것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견실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 사정에 의하여 늦어진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내년봄 공사재개 시기가 되면 조기에 추진하고 5월초까지 완료하여 '96년봄 장마기 이전 복구가 끝날 것임을 답변드림.	사 회 진흥과장 김 동 성
	박창수 의 원	■ 체납액 징수대책은?	◆ 우리군의 '95. 11.30 현재 지방세과징 상황을 말씀드리면 8,493백만원을 부과 8,179백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314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으며,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진과 도산, 일부 주민들의 납세의식 결여, 종합토지세의 관외체납액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분 납기도래전 현수막 설치를 비롯하여 유선자막, 마을앰프방송, 행정차량 가두방송, 담당부락별 출장독려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등 사전납세 홍보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재무과장 양 달 호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 원	■ 특수목적세(지하자원세, 수자원세)의 신설 및 세원발굴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추진실적은?	◆ 본군에서 추진하고져 하는 내용은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으므로 도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며 지하자원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에만 과세하고 있음.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채광된 모든 광물을 포함 시키도록 세법을 개정하도록 '96년초 연구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임.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대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훼손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함과 지역내 부존자원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멘트제조에 따라 현행 가격 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해야 함. -수자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의 경우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환경차원의 녹조현상, 부유물의 오염과 축산업의 사업제한등 환경의 이용에 대한 지역간 유형결정, 경제활동이 지역간의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이용(발전) 및 수질관리 정책은 국가적복지의 극대화와 중앙정부의 기준설정에 의한 지역적 규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댐건설 등으로 인한 피해부담, 엄격한 수질유지를 위한 추가적 정화비용의 부담으로 군재정을 압박하고 산업입지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자원세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수원지역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수익공공단체가 적당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연구검토 하겠음.	재무과장 양 달 호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 영세주민들의 현실에 맞고 지역실정에 적당한 가격으로 군소유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방안은?	◆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매매실례가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최저가로 주민들에게 매각은 불가능하나,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과 1개소의 사설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하여 산술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소 적정금액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재무과장
	허수일 의 원	■ 극소수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궁장이나 테니스장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무상 대부하는 반면 읍·면 단위 군소유 대지는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여 살고 있는데 대책은?	◆ 금년도에 감정 매각한바 있는 재산중 일반주민에게만은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계속대부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도시계획 시설이나 여가선용 시설은 군민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마땅한 시설물이나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물당 연간 2~3천만원 정도의 직접 관리비가 소요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영세서민의 사용토지는 일반 대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잡종지로 부과하지 않고 대지로 부과함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되며, 일반서민의 부담 비율은 기업체 및 회사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함.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원	■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함에 있어 지가산정 금액이 다소 높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바 이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17종)을 조사후 비준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이므로 지가는 지역개발계획이 있거나 이용현황이 변경되는 등 주위환경 변화가 없는 한 변동될 수 없으나, 금년도 지가의 변동요인은 '94년도 표준지 필지가 690필지에서 '95년도에는 1,185필지로 증가되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가 보다 세밀하게 적용되어 변동요인이 생기게 되었음. -'9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가 95년 6월30일 이루어진 후 민원접수 건수는 총 78,881필지중 0.3%에 해당하는 251건이 각읍·면에 접수되었으며 민원인의 이의내용은 상향요구 125건, 하향요구126건으로 상향·하향이 반반씩 요구 되었음.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에는 매필지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정을 받아 지가산정금액이 적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음.	지적과장 진 철 두
	박창수 의원	■심야영업시간 연장방안은?	◆ 심야영업시간 연장방안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연장신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희망함에 따라 '95년 10월4일자로 영업시간 연장신청을 한 바 있으며, 도로부터 타 시범지역 운영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분간 유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12월11자로 도로부터 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본군은 전지역 전면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현재 도에서 영업시간 연장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본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 회 진흥과장 김 동 성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 단양읍 도전리 단양국교옆 어린이공원내 시범공중화장실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은?	◆ 시범공중화장실은 종래의 공동화장실 개념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으로도 손색이 없는 최신자동화 〈소변기 자동감응장치, 장애자용 변기, 오수정화, 환풍, 배관난방, 전기, 수도시설등〉 와 편익시설 설비로써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신단양관광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어린이공원내에 유치, '95.8.17일 준공하여 2개월정도 개방운영한 결과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 및 청소를 1일 2회씩 실시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어 화장실내 기물파손과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 장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시설물의 동파가 우려되어 현재는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신단양 관광수변 개발사업 완공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단양읍 미화요원을 배치 개방토록 검토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음.	환 경 보호과장 이 호 윤
	장용두 의 원	■ '90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한 매포공해이주보상 지역의 미이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 '90년도 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특별회계가 제정되어 한일, 성신 양사의 기금으로 보상된 건물이 319동으로서 현재까지 완전철거가 250동, 미철거가 69동임. -아직까지 미이주된 지역은 우덕1리와 안동1리로써 농업이 주업인 관계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당초 대지 건물에만 국한해서 이주보상을 실시하므로써 철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난 12월 19일 관련회사와 공해보상지역의 마무리를 위한 1차 협의회를 가지므로서 우선 철거가능건물인 구중앙교회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매듭짓고자 함.	환 경 보호과장 이 호 윤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원	■ 다리안 유스호텔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와 오수처리시설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금은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95년 265백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군재정 확충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종업원 77명중 52명의 지역주민을 고용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있음. -오수처리시설 운영은 직하류 천동리 주민의 농업용수 사용 어려움과 악취로 민원을 호소함에 따라, 한알유스호텔에 행정 지시하여 관리사무소 입구부터~천동 주차장 입구까지 FRP관 900m를 매설하여 방류 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 하였음. -최종방류수의 수질검사는 3회(3월20일, 6월2일, 10월31일)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60PPM을 1회초과(75.5PPM)하여 과태료 200천원 부과와 개선명령을 실시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송풍기 교체 및 침전조에서 폭기조로 반송라인을 정비 개선토록 하였음. -현재는 오수처리가 정상가동 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조치토록 적극 노력 하겠음.	환 경 보호과장 이 호 윤
	박창수 의원	■ 공원묘지 조성을 경영화 차원에서 민자 및 군비를 투자 제3섹터로 개발의향은 없는지?	◆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군 재정수입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좋은 잇점이 있으나 반대적으로 혐오시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복합성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사업임. -지난 '89년에 영춘면 하리 산53-1번지외 4개소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집단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음. -민간인 공설묘지부지 제공에 대하여는 입지지역내에 용도지역변경, 주민합의서, 민간부담 등을 검토하여 지방세수증대가 판단될시 '96년도에 공설묘지 설치계획을 수립 검토하겠음.	가 정 복지과장 양 수 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박창수 의 원	■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은?	◆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보호사업은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거택보호사업과 (1인당 월57천원정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참고서대(1인당 월32천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사업은 한국복지재단과 협조로 21세대 38명에 대하여 43명의 후원자가 59계좌를 통하여 월간 약1,377천원을 후원하여 세대별 6만5천원정도가 후원되고 있음. -후원자들과 협조하여 자립정착통장을 개설 '95년 12월 현재 총16,302천원 세대평균 1,630천원이 적립되고 있음. -제도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단양군 자원봉사센타와 연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면서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가 정 복지과장 양 수 자
	장익환 의 원	■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래방관광객 및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국도5번, 36번, 지방도 575번(점촌), 573번(예천), 595번(영춘) 등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화 세수등대(담배 소매업등)을 위해 상설간이	◆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단양읍 소재지에 2개소, 대강면 용부원2리 죽령휴게소변에 1개소, 영춘면 백자리에 2개소등 총5개소에 농산물상설직판장이 설치되어 잡곡, 산채, 약초, 과채류 특산품 및 한우·돼지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95.1~11월까지 11개월 동안에 451백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월평균 41백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95년도에 단양군 농민후계자연합회에도 소득개발기금 1억원, 이차보전사업비 4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매포읍 평동2리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였음. -단양읍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단양선착장 앞에 농산물상설 직판장을 건축중에 있어, 이것이 완공되면 총 6개소의 상설농산물직판장이 운영되겠음.	산업과장 박 동 명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직판장 설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에서는 '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예정인 중앙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휴게소에 군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임.	
	허수일 의 원	■ 중소농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방안은?	◆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농가의 품목별 경쟁력대책에 따라 농가의 규모를 확대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농법에 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환경보존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금년을 처음으로 시작 전국에 100개소 충북에 9개소 설치에 단양군이 1개소로 육성 추진중에 있으며 성과분석에 따라 '96년부터 년차적으로 2004년까지 읍·면 당 1~2개소씩 시범적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	산업과장 박 동 명
	김수영 의 원	■도담옆앞 군유지의 공장용지 개발계획과 다른 지역도 개발계획이 있는지?	◆ 도담역앞의 공장부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바 개발 가능면적은 16.000평 정도로 군유지가 6.500평,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도로가 2.000평, 수자원공사관리의 국유지로 수몰지역이 7,500평 정도가 됨 -현 상태에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국유지 용도폐지와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수몰지 매입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의 불가시는 군유지와 용도폐지 도로부지만 가지고 8.500평 정도를 개발할 계획임. -사업추진은 '96년 1월부터 도로용도폐지,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적인 조치에 착수하고 이를 완료하는대로 실시설계를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착공과 함께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하고 석회산업 관련 업종을 육성하여 지역공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지 역 경제과장 류 광 문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박창수 의 원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의 지방도상 횡단차선 표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의 지방도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군에서 현지조사 후 '95.7.20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 요청한바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의 '95년도 하반기 차선정비사업이 일부구간(덕천교~군간교)에 한하여 실시됨으로서 문화마을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였음. -내년 상반기에는 군내 전역에 걸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정비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으로 이때 문화마을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	지 역 경제과장 류 광 문
	장익환 의 원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피해로 관광자원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요 관광지나 문화제 주변, 유명산에 광업용 산림훼손허가 제한구역을 고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력을 제고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우리군은 관광군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을 목적으로 '94년 4월7일자 특정용도의 목적으로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특정용도만은 제한할 수 없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해제 하였으며, 우리군은 관광지 문화재, 유명산 주변등 남한강 이남지역의 형질변경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허가가 필요할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산림과장 이 효 준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최상우 의 원	■지역산지를 최대 활용한 농촌소득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고로쇠 수액채취 사업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채취 작목반 구성과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된 바도 있음. 그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 농촌소득 사업으로 영춘면 남천계곡에 자연산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로쇠,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 수액채취 계획을 수립하여 수액채취 및 이용연구 용역을 충북대학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한바 연구결과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으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액채취 대상수종 분포가 암석지 및 6부능선 이상에 산재 분포되어 있어 수액채취 가능구역내 수종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단양군 임협에서 자체계획으로 수액채취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관내 산림계에 배부 시험채취를하여 경제성을 분석한후 검토하기로 하겠음.	산림과장 이 효 준
	장용두 의 원	■충남북 지역이 '95.11.1~'96.2.28까지 4개월간 수렵해제지역으로 사냥애호가들이 관내 조수류등을 포획하고 있는바 포획승인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조수포획등으로 관내지역 주민들이 다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주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주민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충남북 지역에 '95.11.1~'96.2.28까지 포획허가 기간을 정하여 포획승인을 허가하고 있으나 불법포획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군과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회에 걸쳐 단속한 바 불법포획자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엽사들로 추정되는 사냥개에 의한 가축피해에 대한 신고가 있어 현지조사한바 가해자를 발견치 못하였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산림과장 이 효 준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 설계비 절감과 부실공사를 막고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위해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있어 추진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 전문주요공정의 설계를 위해 기술사채용 문제 및 제반 수당지급상의 제도적, 법률적 저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검토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건설과장 정 동 춘
	장용두 의 원	■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 건설교통부소관의 예산중 하진대교 건설에 따른 용역비가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와 관련 해결해야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첫째 하진대교건을 용역비 책정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중앙고속도로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므로서 중앙고속도로 시공과 연계 추진될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도승격 문제는 전국 도로망 정비가 마무리된후 충청북도 및 내무부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조기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음.	〃
	장용두 의 원	■ 우리군은 산악지대로써 교통안전에 위험이 생존해 있는 지역으로 겨울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겨울철 도로관리 문제는 11월 12중에 관내 주요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400개소의 방화사를 확보하였고, 군보유 덤프에 제설기와 모래살포기를 부착 하였으며, 497포대의 염화칼슘을 비축하고 있어 적설시 수로원과 공무원, 부락주민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박창수 의 원	■ 온천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민박등 법적인 제약이 많은데 이의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온천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민박등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민박이라 함은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신고 처리를 하여주고 있음. -대상 : 농민소유 농가로서 기존주택의 영업면적이 33㎡(10평) 이하인 건물 -민박신축 및 규모이상 60평미만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으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건축법상 민박이라는 별도의 용도가 없어 일반 숙박시설로 건축하여야하나 현재 러브호텔등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건축이 확산되어 농촌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96.5.16일까지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있어 건축제한이 해제되어야만 일반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함.	도시과장 이 규 천
	박창수 의 원	■ 대강면소재지 우회도로개설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증·개축과 도시형태로의 개발방안에 대한 견해는?	◆ 우회도로 착공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시 건축물 증개축과 대강소재지 도시형태로의 개발추진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노후주택등의 증·개축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지역의 대지가 협소할 뿐아니라 취락구조개선방식의 도시형태의 택지개발은 기존 건물보상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의 증·개축에 대하여는 개별법(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될것으로 생각 됨.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최상우 의 원	■공가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사항 및 계획은?	◆ 현재 이농현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관광지를 비롯한 국·철도변에 많은 공가가 산재해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광산합리화에 따른 사택공가가 발생되어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읍·면별 공가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12동으로 농촌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공가의 소유주나 권리(설정등기등)자의 동의, 승낙없이는 강제철거가 어려울 것이며 강제집행시는 행정소송등의 위험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철거대상은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 행정기관, 마을주민이 참여 공동철거 토록하고 정비 재활용가능 공가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말끔히 정비목적에 맞는 재활용이 되도록 조치 깨끗한 관광지 및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음.	도시과장 이 규 천
	허수일 의 원	■특산품인 단양 마늘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농가에서 소득의 목적으로 비닐피복재배를 해서 굵게 생산하고부터 단양마늘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단양마늘의 특성을 찾고	◆ 단양마늘의 저장중 갈변 및 부패 증상이 발생되어 단양마늘 특유의 가치가 떨어져 명품화 작목으로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지금까지 마늘의 갈변 및 부패증상의 원인은 정확히 구명되지 않았지만 저장중 부패원인은 이병종구의 계속적인 사용, 구비대기의 잎마름병방제 미흡으로 인한 마늘 인편조직이 약화 저장중 과습과 통풍불량에 의한 부패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갈변증상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 '94년도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결과는 응애류와 선충류에 의해서도 갈변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된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추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 됨.	농 촌 지도소장 송 해 열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명품화된 상품으로 보존하려면 비닐피복재배법으로 재배토록 각 농가에 권장하고 마늘출하 장려금을 조성해서라도 다른 작목을 어렵게 명품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명품화 되어 있고 특산품화 되어 있는 단양마늘 고유의 특산품을 보존할 의향과 명품화 작목보존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그에 따르는 향후 대책과 계획은?	◆ 금후 지도대책은 -마늘파종전 마늘종구의 소독(배노람수화제+디메토유제 1000배액)과 4~5월에 잎마름병을 철저히 방제하여 마늘이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충해 공동방제 3회에 소요되는 8,11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비닐피복 재배농가의 재배법 개선을 위해 관수가 가능한 포장은 4월중·하순에 비닐을 완전 제거하거나 가뭄포장은 비닐위에 흙을 3cm이상 복토하여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비닐피복구, 파종시부터 무피복구, 월동후 비닐제거구, 짚피복구 등을 비교하여 저장중의 발병관계를 연구해 지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출하 장려금이나 시범단지 조성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오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대부분의 농가에서 마늘밭에 웃거름을 과비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시비 지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마늘 수확후 저장관리 방법의 개선으로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방법의 보급을 추진하고 마늘시험장과 연계하여 갈변증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조기에 구명하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늘종구 소독 및 수확저장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로 리후렛을 제작,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각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주요시기별로 주요기술을 홍보하고 현장지도하여 단양마늘의 특성보존과 특산품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 촌 지도소장 송 해 열

■ '9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내용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2회 정기회	김수영 의 원	■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 공유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사업주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민간관리위탁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재무과장
	김종태 의 원	■ '96년 군정보고시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란 명제로 지역 개발세의 불균형 해소와 군세전환 검토, 관광세 신설방안, 시멘트 제조세 신설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지역개발세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석회석등 지하자원의 경우 광구소재지 부존자원으로써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군세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계획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방세제 대폭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계획 내용에 지하자원이라든지 수자원 신세원 개발에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지역개발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 방안의 입법화와 또는 관광세, 시멘트 제조세등 도입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음.	〃
	〃	■ 경영수익사업 1년간 실적을 살펴본 바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306백만원, 기획상품 2,339천원을 추진하였는데 세외수입분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 경영수익사업 1년간 실적은 그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뤄진것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담배 판매사업이 주 업무가 되어서 금년 현재까지 3억6백만원 장학기금 조성한것 하고 기타 철쭉제 행사때 기획상품 몇가지 팔은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는 없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은 용도폐지 재산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사업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고칠것은 내년에 다시 보수비를 확보해서 고쳐나가겠고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철거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재무과장 임 형 규
	"	■ '96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담유원지 개발사업,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상진지구 수변개발과 향후계획중인 문예인촌조성, 남한강 수변개발등은 군과 민간투자자, 토지소유자, 인근지주민의 문제에만 국한되는데 향후 군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원칙을 정하여 이행상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견해는?	◆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군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지역경기활성화에도 관심을 두고 기본원칙을 겸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차원적인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김종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견해를 같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기전에 이점에 대해 연구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관 광 진흥과장 김 동 성
	허수일 의 원	■'95~'96년도의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별 보수내역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과 문제점은?	◆ '95년도 경로당 신축은 10개동에 2억6,500만원, 보수비는 22개동에 3,310만원이고 '96년도 경로당 신축은 6동에 3억2,500만원 보수비는 45동에 7,890만원,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30만원, 연료비는 개소당 연간 17만5천원이며 국비 70%, 군비 30%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음.	사 회 복지과장 양 수 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 원	■ 리동별 노인정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750천원 소요되는데 행정기관 지원액은 175천원으로 나타났고 아동 및 청소년 분야는 총예산 413,817천원중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 및 유지 교재구입비로 376,317천원 집행되었고 전지역에 균등배분된 지원금액은 37,500천원만 지원되었는데 전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부녀복지분야는 군청소재지 중심에서 확대해 농촌여성 계도 및 지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대책은?	◆ **경로당 난방비** - 경로당 난방비 운영실태를 현지 재조사하여 국비 증액 건의 및 군비를 추가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아동 및 청소년 분야** -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군직영의 놀이방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설치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등이 노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의 아동들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청소년 분야** - 단양읍 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 수련실의 개관과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도 소규모의 공부방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단양군 전지역의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운영중에 있음. '97년 단양군 청소년수련실의 개관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사 회 복지과장 양 수 자
	김수영 의 원	■ 건설폐자재, 흙, 시멘트, 돌 등을 적치할 수 있는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 구체적으로 토사적치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지만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설치 가능시에는 설치토록 하겠음.	환 경 위생과장 조 성 덕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원	■매포 공해이주 지역인 우덕·안동리에 아직도 미이주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미이주주택에 대한 이주계획은?	◆ 잔여주택은 이주와 동시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이주 주민의 대부분이 영농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강제철거시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당초의 이주보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출입경작 또는 농기계류 보관용 공동창고와 농작물 건조시설 등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향후 양개회사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음.	환 경 위생과장 조 성 덕
	박창수 의 원	■농자금지원 조건과 이자율이 각기 다른데 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 농자금의 통폐합은 중앙부처의 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므로 추후 각종 채널을 통하여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농정과장 박 동 명
	〃	■고랭지채소 가격폭락으로 경작 농민이 대출한 영농자금을 상환하기도 어려운데 이의 지원대책과 개선방향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 융자금 상환 연기 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한 영농비 지원 등은 타작목의 형평성 유지측면에서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용 지붕개폐 환경보존형 양축시설을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 통합사용 지붕개폐형 축사는 우리군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퇴비지원화 활용을 위해서 개폐형이 아니라 톱밥축사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최상우 의 원	■ 물품 원산지 표시제 단속횟수와 앞으로의 계획은?	◆ 농산물 단속횟수는 금년도 11월말까지 101회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은 년중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원산지표시 처벌규정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특별히 강화해 나가겠음.	농정과장 박 동 명
	장용두 의 원	■ 관내에는 약 240여명의 영농후계자와 50여명의 전업농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책정기준과 영농후계자의 경우 목적사업의 변경, 관외이주, 타사업과 겸업등으로 본래 사업자금융자 목적과 다르게 사업비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실후계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관리계획은?	◆ 부실후계자에 대하여는 정리토록 할 계획이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영부진 후계자에 대하여는 지도소에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후계자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농에 자신감을 부여토록하는 한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고 있음. 전업농은 쌀전업농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과 어업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쌀전업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타 작물분야는 농촌지도소에서 접수받아 1차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함.	농정과장 박 동 명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 원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으로 자가용을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세대 및 부녀자 그리고 주민을 위해 벽지노선 지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 경영손실에 따른 재원으로 벽지 4개 노선에 4,800만원, 오지교통사업비로 3,600만원, 고수제 불통 손실보상금으로 5,5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촌버스 경영손실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비수익노선 중 평균승차율 50%미만 오지 10개 노선에 기본경비를 추가지원하여 정상운행을 도모하고 점차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음.	지 역 경제과장 장 명 수
	"	■단양읍 소재지 주간선도로 아래 이면도로 (단양초등학교-시외버스터미널구간)의 일방통행 도로화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할 의향은?	◆ 지난 8월 시가지 노상주차장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의견수렴시 상가주민은 주간선 도로변 주차장 설치로 무료화를 요구하고 일반주민과 단체는 도시미관저해 및 보행자 불편초래로 이면도로를 활용토록 의견제시와 주간선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구역으로서 도시미관저해, 교통체증 유발, 보행자 불편초래, 사업비 과다 등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방안제시	"
	최상우 의 원	■ 꿩방사 시기는 늦은 봄철이나 여름을 기하여 방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늦은 시기에 방사를 하게 되었는지?	◆ 앞으로 꿩방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0월경에 방사를 하는 것으로 앞당겨 실행하여 야생꿩이 현지적응이 잘 되도록 하겠음.	산림과장 이 효 준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원	■관광지다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단양의 토질에 맞는 가로수를 찾기 위하여 매포 평동에 시험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찾아 심을 것이며, 그 추진과정을 언제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 ■단양에는 적단풍을 점차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관광지다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등 다수가 참석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 단양읍에 심겨져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 이식사업은 '92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에 예산요구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버즘나무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철저한 병충해 예찰활동 실시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발제에 철저를 기하겠음. -관광단양 조성을 위하여 '97년도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자귀나무 등 3개 수종 600본에 사업비 3,054만1천원을 요구하였음 -보식관계는 벚나무부터라도 시행하기 위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가로수 보식사업비 1,289만4천원을 요구하였음. -사업비 확보 즉시 결식구간에 보식하도록 하겠으며 단양토질에 맞는 가로수 수종 선정을 위하여 '93년 봄 평동 신시가지에 느티나무 26본, 마가목 50본, 산목련 150본, 복자기 24본 등 25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느티나무 23본, 마가목 27본, 산목련 141본, 복자기 6본등 197본이 자라고 있음. -피해원인은 고사 및 인위적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등이며 마가목과 복자기는 도시지역 가로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느티나무와 산목련은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신단양 소재지 버즘나무는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일부분이라도 단풍나무로 교체하여 나가겠음.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지치기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지다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힘쓰겠음.	산림과장 이 효 준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통신시설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은?	◆ 도로굴착 사유는 전기·통신·상하수도등 각종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코저 굴착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굴착현황을 보면 1993년도에 단양 도전리 시가지 1개소, '94년도에 상진대교~단양전화국, 어상천 지서~석교리, 대강 두음리 등 3개소를 하였으며 '96년도에는 두진아파트 진입선로와 상진리 KBS앞 인도 등 2개소를 굴착하였으며 '93년 이후 6개소의 전기통신 선로를 매설하였음. 원상복구후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는 수시 점검하여 하자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설과장 정 동 춘
	김수영 의 원	■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대명콘도 준공을 앞두고 진입도로 접속부문의 교통정체와 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 대명콘도가 개장되어 차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통행되는 성수기때는 진입하는 차량관계로 현재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접속부분이 고갯길 정상부위로 교통사고요인도 있다고 판단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신호체계 등을 보완정비토록하고 이면도로 접속부분은 편입토지 매입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성사업결정시 계획된대로 입구는 35m로 충분히 확보토록하고 진입도로는 12m폭의 중로로 개설 일반통행차량과 콘도이용차량의 교통정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도시과장 이 규 천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원	■매포 평동택지 미분양 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분양추진 계획은?	◆ 지난 1993. 8.27~1994. 7.15 조성된 매포읍 평동택지 분양은 총 93필지 20,649㎡ 일반택지 중 10필지 2,354㎡만 분양되고 현재 83필지 18,295㎡가 미분양되어 내년으로 도래된 기채액 원금상환등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분양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당초 입주대상으로 생각하였던 공해이주민의 타지역이주,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앞으로의 분양추진계획은 일간, 정보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자격제한없이 분양 희망자 희망필지에 대한 수의계약분양, 분양대금 분할납부 등을 추진 분양을 원활히 하고 분양촉진을 위한 공동택지 사업자유치와 적성농공단지 사원주택부지 활용협조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	도시과장 이 규 천
	〃	■농촌 주택개량 물량 확대조정 및 융자금액 상향 지원 등의 대책은?	◆ 농촌주택개량 물량 확대방안은 금년 경우 당초 물량 90동과 추가물량 25동으로 총 115동의 물량을 배정 추진하였으나 하반기 포기물량 2동이 발생 반납하여야 할 실정에 있음.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량의 물량을 확정토록하고 확정된 물량은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융자금액 상향조정은 그간의 높아진 건축단비에 맞추어 당연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융자기준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제도적 변경이 않되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 원	■상진 군부대 이전지 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상진 군부대 이전지 개발은 군부대이전지 시점에 맞춰 개발하고자 1993. 9. 14~1993. 12. 12 상진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 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994년 1월 의회에 보고하고 1994. 12. 15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4. 12. 16 군. 의회. 지역주민대표 다수가 참석한 개발기본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이때 우리군측에서 제시한 99,800㎡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주최측인 신광토건에서는 개발규모를 100만평방미터로 확대 요구하는등 이견이 있어 우리군에서 제시한 적정규모개발계획을 신광토건측이 제출하면 재협의 하기로하고 결렬된바 있음. 그후 신광토건측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 제출 및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국방부와의 귀속토지 양여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하여 왔음. 1995년 12월 국방부와 신광토건(주)간에 귀속토지 양여가 완료된 이후도 금년 4월경 구 군부대 건물 및 시설물 철거 정비만 완료하고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출이 없어 본사 및 현장사무실을 통하여 계속 촉구하였더니 전문용역기관인 (주)우대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과업수행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최근에 확인된 결과로는 기본개발(안)이 거의 마무리되어 올 연말까지 군비 제출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어 금명간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자측의 개발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면 관련법규, 개발실현가능성, 지역의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협의하겠으며, 협의과정에서 의원님과 지역 주민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조속한 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도시과장 이 규 천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개선 방안은?	◆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중 군 단위의 경우 설치조례 제10조 임영 및 같은 조례 제22조 기본경비, 제23조 출동수당, 제24조 활동보조등에 의하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소방소가 설치된 시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의용소방대 운영비부담을 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부조례이기 때문에 부 소방본부에 예산으로다 우리 부담율을 건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민 방 위 재 난 관리과장 함 영 태
	박창수 의 원	■ 양액재배시설의 권장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계획은?	◆ 농가에 첨단 농업시설인 양액재배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청정농산물의 생산,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90년이후 정부에서 유리온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왔으나 시설의 결함발생,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규제, 농산물 국내 가격의 하락등으로 해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양액재배 시설은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경영수지의 유지가 가능한데 단양군의 경우 겨울동안에 과다한 난방비용의 투입 년간 500~700만원의 양액비용 소비 등 농가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운 실정임. '97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내에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노동력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하여 '98년도 사업에 반영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농 촌 지도소장 이 상 용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박창수 의 원	■농민건강 관리실의 확대설치 계획은?	◆ 문화생활관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소를 신축운영하고 있으며, 회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앞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기존 회관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각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된 시설내에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임. 또한 중앙사업으로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를 지원받아 교양실, 건강관리실, 공동쉼터 등을 설치하여 농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농촌의 문화생활 기반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 촌 지도소장 이 상 용
	최상우 의 원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장소선택과 우수인력 보강배치등 활성화 계획은?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보건진료원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자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의약품도 지정된 103종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진료행위에는 한계가 있음. 금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료소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해주고 방범창도 새로 설치해 주었음. 주민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실시했음. 내년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배정해서 지역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장기적으로는 주민 이용이 많은 보건진료소부터 우선 시설이나 이런것을 보완토록 하겠고 또 진료소 진료원 결원에 대해서 우수 진료원 확보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건소장 오 용 길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원	■ 도시과 수도계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상수도계가 행정내무적 또는 주민의 편리도에 있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 현재 상수도 운영은 '96년 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 수도계는 상하수도 종합업무 및 관리공사, 수도사용료 징수등을 업무를 다루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계는 단양광역상수도 수돗물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시설물 관리업무등 상수도사업소 기능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양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성격상으로 보아 단일기구로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배분등을 연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도시과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천 유
	〃	■ 정수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수용량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단양광역상수도 시설용량 12,500톤으로써 그중 일부 시설이 '85년에 시설되어 현재는 기능이 저하되므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 개량이 필요하다고 봄. 완속여과지의 경우 슬러지 적치로 인하여 3~4년에 1회 정도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정수탱크의 경우 최초 시설당시 시설용량 1일 300톤이 됨. 시설용량의 확장없이 사용하고 있어 '96년도 현재도 성수기 7월~8월때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봄. 앞으로의 대책은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97년도 도시과 수도계에서 일부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개량이 필요한 전반적 시설물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수영 의 원	■취수장 발전시설과 전기인입선 복선공사의 장.단점 및 시설계획은? ■상수도 운영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 직종에 몇몇의 인력이 필요한지?	◆ 영화상영이 지역군민들의 정착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착기간 운영은 주민들이 극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게 되겠고 그 기간을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보고 상영일자는 한달에 4일정도 토요일, 일요일 1일 2회 상영하는것 같음. 프로그램 선정은 한국영화배급소에서 청소년층, 어린이, 가족, 성인용등 우수영화를 선정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1회 대여기간이 한 4일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기간 빼고, 가는 기간 빼서 2일이 되겠음. 구입하는 금액은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이 소요됨. 정착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주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반회보 또 읍면 유선자막이라든가 각 교육기관, 각종 회의시 또 지방지 유료 광고란을 이용해서 홍보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 기간에는 계층별, 계절별 관람객수를 파악을 해서 차후 운영에 자료로 삼도록 하겠음. 이러한 정착기간이 지나면 유료극장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때는 또 유료로 되고 또 기타 군정추진에 필요한 대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방향에 두고 이 추진년도는 '98년도 이후로 잡고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정착기간 운영실적을 검토해서 최소한 1회 100이상을 보고 있음. 그다음 제도도 정비되어야 되고, 조례도 개정되고, 영화협회 등록이라든가 기타 공연신고등 이러한 사항도 검토해 보겠고 극장도 또한 유료화 되면 누수가 되기 전에 영화만 상영하지 말고 예술단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음.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 천 유

■ '97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내용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70회 정기회	장익환 의 원	■ 시정연설 및 업무보고에 그간 강력히 추진되어 오던 지역현안사업이 누락된 경위는?	◆ 지역현안사업은 지방단위 재정이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군의회 및 집행기관과 군민의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하는 사업으로 충주호 수위조정을 위한 수중보 설치와 저수구역 제내지 활용 등 수자원관련 현안 사업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국립공원관련 문제 및 적성대교 가설 등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며, ◆ 월악산국립공원 축소조정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청원 및 건의를 통해 구역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6월9일 의원님들과 같이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 우리군의 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음. ◆ 내년 5월까지 구역조정 기준이 마련될 계획으로 있으며 기준설정을 위한 「공원별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이 금년 말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공원별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말까지 공원구역조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므로 우리군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적성대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량은 '96년 12월 적성대교건설 국가지원금 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 도로공사와 적성대교건설 지원금 집행에 따른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97. 7. 25~'98. 3. 21까지 기본설계 및 연결도로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량가설에 따른 재원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70회 정기회	장익환 의 원	■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국비 사회복지비의 현실화에 따른 정부건의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의 영세민 지원조례를 통합 및 개정할 용의는?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국비확충 이전이라도 군비를 지원 경로당 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아동의 간식비 등을 현실화하여 나가겠음. ◆ 현재 영세민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는 4개로써 이중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 상정중에 있고 그외 3개 조례는 각기 다른 목적에 의거 제정된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좀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완화 및 지역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단양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한 조례제정 위임 내용이 행위제한 대상인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종외 13개 시설 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써 "조례에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바 행위제한 허용시설과 지역을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조례제정 후 입법취지 위반과 지역간 형평성 시비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
	"	■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계획은?	◆ 불의의 사고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생계곤란자의 특별지원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주민 복지증진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됨. ◆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유발생시 긴급 구호비 및 인보복지성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70회 정기회	박창수 의 원	■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해 온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정운영 기조를 인구유입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떠나는 단양에서 돌아오는 단양이 되도록 모든 시책을 인구유입 측면에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위하여 더좋은 교육환경으로 떠나야 하는 교육이주현상을 막기 위해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전원주택지 조성 및 문예인촌 조성 등과 같이 유동인구 유인의 질적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구유입 정책은 우리 단양이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시키면서 시멘트 물류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지 개발, 남조유황온천의 민간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	■ 매년 감소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방안은?	◆ 도비보조금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97. 3. 11 도지사에게 지역현안사업 보고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 건의를 드렸고, - 시장·군수회의시 도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지원을 부탁하였음. -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음. - '97. 11. 5 에는 도담삼봉개발 등 당면한 관광개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사 관저를 방문 '98년도 도비보조금 6억원을 확보하는 등 도비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이상의 도비보조금의 확보는 미흡한 것도 사실임. - '98년도에는 보다 더 철저한 사업계획 및 분석을 통하여 도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뜻을 모아 도비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음.	단양군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원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 공약사업 53건 가운데 고속버스 노선유치 등 7개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며, 지역문화행사 및 예술인 지원 등 상시시행이 요구되는 사업은 13개 사업이며 상진수변개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 ◆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이는 대부분 지역현안 사업으로 도·중앙 및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상급 및 관련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임기중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임기후에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단양군수정하모
	"	■우리군의 행정조직 개선방향과 어느 정도 공무원 수를 감축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정규직은 5%, 비정규직은 10%로 최대한 감축하고 재료비 성격의 임시인력도 줄이도록 하겠음. ◆ '98년도 우리군의 예산운영은 경상경비의 10%절감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사업예산의 집행과 관련 사업비의 입찰차액 등에 대한 무차별하고 방만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	■매우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에서 새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가와 경영행정 및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은 어떻게 펼쳐 나가실 계획인지?	◆ 군정의 경영강화를 위하여 행정에 생산성 향상의 경영행정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불요불급한 행정수요는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 전군민의 과소비성 지출 억제, 1인 1통장 더갖기, 해외여행 자제하기 등 추진하고 있음. ◆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외화달러 모으기, 10원 동전 모으기, 자가용 안타기 등 특히 외화절약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경제가 회생할때까지 경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건의하여 나가겠으며 현실적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98년도 수정계획에 반영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이완영 의 원	■ 공영화물 터미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총예산액과 부지별 현황 및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 물류센터 공영화물 터미널 조성지역에 대해서 금년 12월중에 도시계획정비와 아울러서 하고 있음. 기본계획을 '98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 소요예산은 기본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40억원정도로 보고있고 부지현황은 사유지가 47% 정도 되는 73,000㎡, 군유지는 공해보상으로 보상준 것이 25,000㎡정도, 교육청 부지가 41,000㎡, 재경원 토지가 16,000㎡,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토지가 17,000㎡등 전체 200필지에 175,000㎡, 약 53,000평 규모가 됨. ◆ 토지매입 관계는 사유토지는 기존 거주농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주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건설부 소유의 하천부지는 용역중에 있는 제내지 토지와 교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박창수 의 원	■ 우리군의 지금까지 민자유치 추진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은?	◆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은 단양 대명콘도 건설하는 분야, 군부대 이전지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사업, 남조 유황온천개발, 온달국민관광지 민자유치 사업 등이 있으나 대명콘도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타 사항은 부진한 실정이며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고 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2건이 있음.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면서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중인 주요지역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음.	
	최상우 의 원	■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납품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은?	◆ 11월말 현재 63%의 공정으로 주요지역 현황분석과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결과 보고회를 '98년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본 용역결과에 의거 장기 목표연도인 200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수립, 관광개발에 임할 예정임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최상우 의 원	■아·태지역 국제학술대회 유치 배경, 준비상황과 기대효과는?	◆ '98년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예정된 「아·태지역 국제관광 학술대회」는 20여개국에서 300여명의 학술회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우리군의 세계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며, 군에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협의체를 포함한 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에 한발 더 다가서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허수일 의 원	■북부권행정협의회 운영실적과 군의 조치상황 및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	◆ '96. 12 북부권행정협의회 구성하여 실무자회의 3회, 시장·군수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를 통해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른 남한강수계에 미치는 대책에 공동 대응방안도 강구함. ◆ 시장·군수 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 강화를 통해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함.	
	장용두 의 원	■성신양회 증설과 관련하여 성신양회(주)가 '97년도중 약속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실적은?	◆ 성신양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사항 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멘트운영 용역업체 3개업체 54대 차량을 단양으로 이전 하였으며 화약외 11개 품목의 자재를 9,361백만원, 각종 사업용품 관내구입이 54개업소에 187백만원, 협력업체 고용 19개업체 117천명, 업체도급액 8,661백만원, 종업원 채용 6명, 단양관내 금융기관 이용 515억원, 공해방지시설에 3,433백만원을 투자 하였음.	
	〃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 총계 : 6개 분야 10개사업에 1,655백만원 기존수익사업 : 4개분야 8개 사업 1,376백만원 ※'96(928백만원)대비 148% 기타(고향담배판매) : 2개 분야 2개사업 279백만원 ※ 장학기금조성 고향담배운동 ⇒59천보루(271백만원) ※ 철쭉제기획상품 제작판매⇒500세트(8백만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 원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유물유적의 관광홍보(자원)화 방안은?	◆ 적성산성 주변진입로 개설 및 휴게소와 적성산성을 연계한 관광홍보 방안으로 진입로 노폭을 3.5M이상으로 확장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휴게소에서 적성산성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개설 및 전시공간 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협조 요청함.	문 화 공보실장 이 상 락
	최상우 의 원	■문화재 관리 대책방안은?	◆ 중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매장발굴 문화재는 국가소유 및 사업자 경비부담원칙으로 발굴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우리군 지원사업이 아닌 발굴 문화재의 단양군 보관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군 보관을 위하여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유물전시관 건립즉시 발굴자인 충북대 박물관과 협의하여 보관전시토록 노력 하겠음.	〃
	박창수 의 원	■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정원상 문제가 있다고는 보나 기술직공무원 승진이 극히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복수보직이 가능한 상위 직급에 기술직을 승진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 현재 군 및 읍·면의 승진은 모든 직렬과 직급이 침체되어 있으며 복수직부서로는 5급은 5개부서, 6급은 7개부서로써 행정조직의 체계적인 운영과 업무추진 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부서에 대한 승진은 인사시 참고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김종태 의 원	■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실적은?	◆ '98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발계획 · 선발인원 : 30명 · 예산확보 :21,000천원 ◆ 특별장학생 선발대상 : 7개교 총졸업생 703명중 43명 · 읍단위 학교 : 3학년 전체석차 5%이내인 자 (3개교 27명) · 면단위학교 : 3년전체석차 10%이내인 자 (4개교 16명) ◆ '98학년도 관내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실적 · 대상인원 : 총 43명 · 유치인원 : 16명(36%)	내무과장 김 동 성
	허수일 의 원	■ 민원사무 읍·면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은?	◆ '90. 6 (9개실과 57건)⇒'95. 8 (11개실과 36건)(21건 감)⇒'97. 10(10개실과 34건)(3건 감) ◆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은 위임사무와 읍·면에서 업무자체가 군으로 환수된 업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등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된 사무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읍·면에는 업무량이 많이 줄어듬. ◆ '97. 10. 17일 읍·면담당자 교육을 시행한 바도 있으며, 충청북도로부터 군에 위임된 사무현황은 총 10건 임. · 농정과(1건) : 중축용 가축에 관한 관세 감면 대상물품 확인 · 관광진흥과(9건) : -국외여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교부등 -명의 이용의 허가외 7건	〃
	장용두 의 원	■ 대선 및 '98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은?	◆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 신고 고발센타 운영 : 9개소(군, 읍·면)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운영 : 3개반 51명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 수시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선거의 엄정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 원	■온달국민 관광지내 조형물 설치계획은?	◆ 온달국민관광지내의 볼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상징하는 고구려사적 조형물 건립방안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으로 구상중에 있는 바 앞으로 관광종합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후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후 추진하겠음.	관 광 진흥과장 한 상 동
	박창수 의 원	■ 사인암폭포 개발을 위한 예산 미반영 이유는?	◆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인암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우선 폭포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국·도비 보조지원 요청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김종태 의 원	■온달국민 관광지, 금수산문예인촌, 도담삼봉개발 등에 관한 민자유치 전망은?	◆ 온달국민관광지 - 민자유치 시설부지중 향토음식점과 토산품판매점 2필지는 기분양하여 분양대금 9억9천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부지는 3회에 걸친 분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여관부지의 건축규모 제한(2층)과 과다한 건축비에 따른 투자회수 전망 불투명으로 유찰됨. 관람시설과 스포츠타운 부지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의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금수산문예인촌 - 편입토지의 협의매수와 실시설계는 완료, 일부토지는 협의매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추진을 하겠음. ◆ 도담삼봉개발 - 민자유치 사업의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담보상태에 있으나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공공기반시설의 토목공사 부문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음악분수시설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만히 추진중임.	〃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익환 의원	■충주댐 건설이후 미정리된 공유재산(제내지 토지 등) 현황은?	◆ · 위치 : 단양읍 상진리외 4개소 · 면적 : 109.841㎡(121필지) · 내용 -단양읍 별곡리 17필지(6,875㎡) -단양읍 도전리 5필지(577㎡) -단양읍 상진리 89필지(98,007㎡) -단양읍 고수리 9필지(3,192㎡) -단성면 외중방 1필지(1,190㎡)	재무과장 임 형 규
	박창수 의 원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은?	◆ 설계변경 유형 첫째, 설계시 지하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설계를 하게 되므로 시공 당시 현지조건에 맞도록 하는 경우. 둘째,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추가 공사부분이 발생될 우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법강구. -앞으로 당초설계시부터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할 경우는 꼭 설계변경이 필요한가를 확인후 설계변경토록 하겠음.	〃
	김종태 의 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방안은?	◆ -철저한 사전 과세예고제 및 사후 주민결재제도를 통한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로 자진납세풍토 정착 -세무 경력이 많은 우수공무원 세무창구 고정배치 -부과 · 징수처분 실명제시행 -자체직무, 의식교육 실시로 전문성확보 -분기마다 세목별 과오납발생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동일유형 재발 방지책 마련 세무공무원들의 법규정 연찬 및 교육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저소득 한우입식 농가 관리 대책방안은?	◆ 한우 입식두수 -당초입식두수 : 44두 -폐사두수 : 10두 -현재 입식두수 : 34두('97년 12월 현재) -현재 문제되는 것은 소값 폭락으로 입식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여 일부의 입식자가 입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원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입식희망자가 없을 시 더 이상 저소득가구에 이익을 주지 못함으로 조례를 검토(도에 문의)한후 폐지예정임.	사 회 복지과장 양 수 자
	이완영 의 원	■신규위생매립장의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장소변경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여부와 타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 장소 변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듣는 얘기고 입지 선정된 매포읍 하괴리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결과에도 언급하였듯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적지라고 판단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며, 군민이 염려하는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겠음.	환 경 위생과장 조 성 덕
	장의환 의 원	■충주호내 장회리에 수거하여 방치된 쓰레기 처리 대책은?	◆ 운반 매립처리에 따른 운반비(10,000원/톤당)와 처리수수료(8,000원/톤당)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나 수공측에서 운반비 및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처리 되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7. 7. 11 충주댐관리사무소에 처리비를 부담토록 요청하고 실무자와 협의하였으나 수공측이 처리비 납부에 난색을 표해와 처리하지 못하였음. 수공측에 운반 및 처리비를 납부토록 촉구하여 징수후 군장비를 지원받아 매립장에 반입 매립처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수공측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부유물 발생즉시 수거 처리토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최상우 의 원	■'98년도 고급육생산 지원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 거세장비를 12대 지원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체중에 맞는 단계별 사양관리를 위해 대당 120만원씩(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2대를 우리군에 지원 함. ◆ A1, B1 등급가격은 Kg당 10,719~9,680원에 거래되어 일반비육을 한 A3~C3 등급가격 8,960~7,140원에 비해 소한마리당 60~90만원(도체육 350Kg당 기준)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금 A1 20만원, B1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농정과장 박 동 명
	허수일 의 원	■농검 통폐합이 이루어진단면 단양지역의 농민들이 받게될 불편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통폐합에 따른 추진사항 -농검 단양출장소의 기구 축소에 대한 건의(농정 122230-2496 '97. 12. 2) -건의내용 : 단양출장소 존치 및 부득이 통폐할될 경우 분소로 조정하여 존치 -건의처 : 국립농산물검사소장, 충북지소장 ◆ 농산물검사소 통폐합시 농민불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산물 품질인증, 규격출하사업등 농민들과 수시상담 협의가 어려우며 제천까지 가야하는 교통불편이 예상됨. ◆ 불이익 최소화방안 -단양출장소 존치 건의 및 부득이 통폐합될시 분소로 조정하여 존치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불가피할 경우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불편 최소화	〃
	이완영 의 원	■매포 제천간 5번 국도상 교통사고 발생내역은?	◆ '95년 6월부터 4차선 개통후 최근 2년간 매포지역 5번국도상에서 1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6명(사망 19명, 중상 97명, 경상 9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장용두 의 원	■ '97년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 '97년도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운영자금 알선이 20개업체 1,930백만원 기업애로상담 및 해결이 72건, 취업알선 20명, 사고기업 대체입주가 2개업체 ◆ 앞으로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알선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음.	지 역 경제과장 장 명 수
	이완영 의 원	■ 매포 관광호텔을 신축하다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어 청소년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변모하는데 향후 매포관광호텔 신축재개를 위해서 추진사항 및 계획은?	◆ '92년 2월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중이던 매포관광호텔은 사업주의 자금사정으로 '95년 10월 사업중단후 부도 처리되었고 '97년 5월17일 도로부터 관광호텔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임. ◆ 우리군에서는 관광호텔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후속조치로 건축허가 취소 및 강제철거등을 검토 하였으나 사업부지와 진행중인 건축물에 사권이 설정되어 행정조치가 어렵고 사회적인 경제손실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제3의 인수자가 사업변경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도시과장 이 규 천
	최상우 의 원	■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설치도를 마을단위로 작성하여 마을에 비치할 생각은 없는지?	◆ 간이상수도의 설치과정이 과거에 자재만 지원하고 설치는 주민의 노력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던 사항으로서 도면자체가 작성되지 않는 곳도 많고 또한 수시개량·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잦은 수원지 이동으로 인한 부분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일시적으로 전마을의 도면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에 시행된 지역과 앞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도면에 대하여는 읍·면과 리·동에 동일하게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허수일 의 원	■ '97년도 취락지구 개발 추진상황과 '98년도 취락지구개발 계획은?	◆ '97년도는 우선 대강, 가곡, 영춘면 소재지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개발계획(안)을 수립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고시 시행할 계획임. ◆ '98년도 추진계획은 현재는 확정된 바 없으나 나머지 면소재지 지역에 대하여도 개발계획 수립 필요 우선순위를 결정소요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음.	도시과장 이 규 천
	김수영 의 원	■ 위락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97년 재정비시 반영할 의향인지?	◆ 위락단지 개발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현재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 결정 공동주택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장용두 의 원	■ 동절기 재해위험·취약지구 내역 및 방지대책은?	◆ 관내도로 9개노선으로 미끄럼방지 위험안내판 설치(41개소), 적사장 400개소에 840㎡를 현지에 적치하고 결빙시 모래 500㎥, 염화칼슘 700포, X73 250포를 비축하여 군 기동반을 활용 결빙노선에 응급 살포토록 하겠음.	민 방 위 재난관리과장 함 영 태
	박창수 의 원	■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센타 이용에 원거리 거주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은?	◆ 물리치료실 운영은 의료기관 2개소, 보건소와 영춘보건지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 -1일 : 보건소 20~25명,영춘면 5~7명 -원거리인 적성면 보전지소에서 핫백유니트를 이용하며 1~2명정도 온습포찜질을 해주고 있음. -주민이용도, 인근거리, 지역여건, 만성퇴행성질환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대실시 방안을 적극 강구 -운영실태를 파악한후 전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보건소장 김 남 용

회차	질문		답변	
	의원	내용	내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이완영 의원	■구 상진군부대 개발계획은?	◆구 상진군부대 개발계획은 지난 3월17일과 6월23일 두차례에 걸쳐 사업자측으로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설명들은 바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용하고자 하는 뜻임. 군에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계획만 보장된다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일정에 따라 개발지구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입안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며 앞으로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이므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다라고하는 도시개발, 도시계획부터 변경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음.	군수정하모
	장익환 의원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와 중앙을 방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적성대교 가설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금으로 기본설계 용역에 까지는 이르렀으나 앞으로 사업비의 확보라는 문제가 남아있음. 기본설계 용역을 금일중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음. 월악산국립공원 해제문제도 의원여러분과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 건의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인공폭포조성사업 및 고수재 도로 선형개량사업 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사업과제로 남아 있음. 고수재 선형개발 사업은 추경에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까지는 되어져 있음.	군수정하모
	장익환 의원	■ 단성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 읍을 제외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음. 6개면중 1개면을 지정,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면별 지원계획수	군수정하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농림부지침이 바뀌지 않았을때의 군 대처 방안은?	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농림수산부 계획에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계획수립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임. 금년도에 대강면의 지원이 끝나고 사업이 마무리되므로 '98년도 예산에 반영,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면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하여 '99년부터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오지개발사업은 영춘, 어상천, 적성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단성, 대강, 가곡인데 대강과 가곡이 사업 추진되고 있으므로 단성 1개 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아있음.	
	장익환 의 원	■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도담삼봉지구는 단양팔경 중 제2경을 갖춘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무질서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도담삼봉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음. 민자유치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 민자유치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충청북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민원사항이 각하되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사항을 존중해서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와 사업추진 협약과정에서 쌍방간의 협약체결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을 취소, 사업을 철회한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앞으로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은 군 직접투자를 원칙으로 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알찬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수대 관계라든가 사업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장익환 의 원	■수양개 선사유적지의 사적지정으로 인하여 수중보건설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양개유적지의 사적 지정은 충주댐 수몰지역으로 '83년도부터 '96년까지 충북대학교에서 7차에 걸쳐 발굴된 유적지로서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거쳐 '97년 7월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현재 고시중에 있음. 이에따라 수중보 건설에 따른 악영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충북대학교 박물관장인 이융조 교수로부터 학술적 자문과 대책을 협의한 바 수중보건설 계획에 따라 수양개유적지 윗부분에 건설되면 문제가 없으며, 유적지 하류에 수중보가 건설되면 물에 잠길것이 우려되고 이에따른 제방건설을 시행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단 의견은 받았음. 수중보 건설 위치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고시기간 중 면밀히 검토해서 유적지로 인해 수중보 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정밀분석하여 대처토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박창수 의 원	■대학유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그동안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국가가 다루기 때문에 몇번 다니고 있어서 의원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가시화될때 위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기 추진된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군 수 정 하 모
	박창수 의 원	■ 관광개발을 위한 도비보조금 확보 계획은?	◆최근 3년간 관광개발사업 도비보조금은 총액 20억1.9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6%에 해당이 됨. 앞으로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7억원의 국비보조 사업을 요청하여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재경원으로 예산요구 중이며 '98년 도비보조사업은 금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으며 우리 단양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관광개발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근절대책과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문화체육센타 빗물이 새는 것은 지난 7월4일 정밀조사를 하여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통보하였으며, 금주중 점검하여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방곡도예촌 전시관은 부지면적 2,670평에 건평 134평으로 '95년 12월에 착공하여서 '96년 8월에 시설물을 완공하고 '96년 12월에 내부시설을 완료, '97년 4월부터 현지 도예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부대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음. 도예원시설에는 순수 건축비만 2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농경지를 매수하여 건축한 관계로 부지조성과 주변의 옹벽, 흄관매설 등이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음. 도자기모형 건축물과 가마설치 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비싸고, 관급공사의 사업비는 부가세,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인하여 일반주택 보다는 다소 사업비가 과다계상됨. 출입문 및 가마 등 제반 시설물은 일제점검 후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음. 상수도관리사 신축은 건평 50평으로 '95년 1월에 착공해서 '96년 7월에 준공된 건물로 관리사가 당초 지형이 낮아 수해에 대비 지반을 높임으로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2층옥상 지붕의 스레트는 아스팔트싱글로 보완조치 하였으며 보일러실 등 기타 전기공사도 보완하였음. 앞으로는 불성실 시공사례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투자가치를 증대시키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행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일체 하자시공업체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방침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로서 하자부분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않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 수자원공사 관련 현안문제의 추진상황과 군민역량 결집대책은?	◆ 수중보설치 관철,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대책, 제내지 및 간접보상 토지의 지방자치단체 환원, 도담삼봉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 등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군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이론도 있으나 충주호 단양 수중보설치 문제는 지난 6월11일 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타당성 용역계약을 체결, 충북대 안상진 교수가 팀장이 되어 진행중에 있음으로 용역결과에 군민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수중보 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을 범추위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댐 설치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겠음.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면서 지역에 득이되는 방향에서 대응해 나가겠고 제내지 및 간접보상 토지의 지방자치단체 환원 문제는 수공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도담삼봉 도시계획 4차선 확포장 문제는 수공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대전국토관리청과 실무협의 중에 있음.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역량 결집 대책으로 지역현안 추진상황을 군민에 소상히 알려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동참분위기를 조성 소수의 이기주의적 반론에 대하여는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논리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음. 남한강 수계와 충주호 활용계획은 남한강이 우리군의 중심을 관류하고 충주호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으로 군 북부의 남한강변을 친수성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수자원을 이용한 소수력발전 가능성의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수중보 설치와 충주호를 연계하는 주변개발 계획을 현재 용역중인 단양군 관광개발전략 계획에 포함,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강화를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실천적인 경영행정 방법으로는 적시적소에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인력관리,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개편, 인력감축관리, 사무자동화, 불요불급한 재정의 절감, 자치재원을 높이기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이 있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조직진단 개편에 따라 경영사업계를 신설하였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최우선 목표로 산하 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본청 계장급 직원을 선진경영행정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경영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음. 앞으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전 분야에 경영기법을 실천하는 등 장기적인 군정 공통목표를 세우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6급 계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을 하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에도 실시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김종태 의 원	■공직기강확립방안은?	◆'상과 벌'이 엄격히 구분되는 공직자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강하게 추진하겠음. 일부 복지부동 자세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가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6월에 공직자복무자세 확립대책을 수립 시달하여 일차적으로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하에 간단없는 내부통제가 되도록 조치한바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조정과 통제로 공직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 전체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공직자 본연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자체 감찰기능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여 공직자의 신뢰향상과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선거에 틈타 줄서는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조치하겠음.	군 수 정 하 모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장익환 의 원	■ 지역개발세를 군세화 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은?	◆ 금년도 도주관하에 시행되었던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로 저희가 이과제를 발표하였고 본군이 주체가 되고 타자치단체는 공동발의자로 연계한 법개정안 청원서 마련을 위해서 현재 작업중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로서는 법개정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장익환 의 원	■ 단양인맥찾기운동 전개, 농번기 들녘민원실 운영 등의 실적 및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 농번기 들녘민원실 운영기간은 상반기에는 5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마무리를 했음. 2차는 하반기에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농번기에 시행할 계획임. 처리반은 농정과, 지도소, 내무과, 읍면상담소, 읍면 각 1명씩 1개조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음. 주요처리내용은 농정사업상담과 일손지원 신청접수, 일상생활민원, 병해충방제상담, 영농기술 상담등을 추진하고 있음. 상반기에 16회를 실시해서 36건을 처리를 했음. 성과로는 주민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대화와 민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제공에 역점을 두었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장익환 의 원	■ 일향일명품 운동의 추진내역 및 성과는?	◆ 일향일명품 선정은 8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64개 마을에 28개 품목을 선정했음. 분야의 내용은 농작물분야에 15개 품목, 축산분야에 10개 품목, 공예분야에 2개 품목을 선정을 하였음.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우수농산물은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시켜서 관광과 농업이 연계된 그런쪽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박창수 의 원	■ 단양 4단지 고수부지 매립 및 활용건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까지 추진은 지난해에 충주댐관련사무소에 하천전용허가신청을 하는 선, 도의회 댐특위에 건의한 선에 지나지 않았음. 이 부분은 지난 4월달에 수자원공사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수공을 방문해서 다시 이것을 고수부지쪽에 활용이아니라 매립해서 부지화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우선 매포 하괴에서부터 별곡간의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공사 이 부분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도로내에 제내지의 매립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박창수 의 원	■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도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회나 내무부, 철도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의회, 군의 집행부서 실장님, 군수님이 함께 다녔는데 그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은 철도청 분야에서는 주말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문제와 도담역사를 이전하는 것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회신을 받고 있음. 내무부 방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지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환경과장과 국립공원관리소장과 같이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업무협의를 한바 있음.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관광연구원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을 협의해서 일단 군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 속해있는 수자원문제라든가 국립공원문제 이런 현안문제를 함께 문제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김종태 의 원	■군정시책특별연구관의 연구결과는 무엇이며, 군정시책 반영사례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 사례는?	◆지난해 3명의 특별연구관으로부터 6개의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제출받아서 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중 강길환 교수의 "단양군 경영행정의 비전과 전략"은 고객중심의 경영을 본군 행정에 도입하여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광수 연구관의 "전원주택단지 개발"방안을 금수산 문예인촌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음. 정삼철 연구관의 "단양지역기획상품 개발 판매방안" 연구논문에 따라 홍보용 전화카드 500매를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소백산 철쭉제 기획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바 있음.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계장이 발표한 "징수부 일원화 방안"이 우리도에서 채택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음.	
	김종태 의 원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과 돌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총 대상사업 47건중에 부진사업 2건, 시기미도래 3건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음. 부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가곡 상수도 시설관계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부진한 여건에 있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영춘 상리 하수도가 중앙지침에 위배된다고해서 사업지역 변경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및 내용을 변경해서 당초계획을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김종태 의 원	■예산절감 실적이 양호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상경비의 절감실적 및 노력도, 일용인부 절감실적, 낭비요인의 제거를 위한 우수시책 발굴시행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표창을 계획하고 있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우선 관서당경비 등급을 1등급으로 배정하는 문제와 사무장비 우선 배정에 관한 사항,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김종태 의 원	■민선군수 취임이후 경영수익 실적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은?	◆고향담배판매운동에 따른 기금조성 실적관계는 작년도에 4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3억2,2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철쭉제 기획상품 판매로 해서 소백산 부분에 신설한 4개종의 개발지도를 해서 800만원에 판매를 했음. 순이익으로서 200만원정도 순이익을 냈고 소백산을 전국적으로 카드수집자들에게 보내므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적인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경영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 개발가능한 대상지를 경영사업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비에서 3, 4월 2개월동안에 한 20개 대상가능지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가능지내에 군유재산의 분석관계를 지원해서 앞으로 군의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 지역 중심으로 개발하는 문제와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단계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문제를 검토, 계획하고 있음.	
	김종태 의 원	■상반기 감사별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와 병행하여 우수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자체감사나 이 사항들은 171건을 적발해서 128건을 시정, 주의촉구 42건, 개선사항 1건 등 '97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하였음.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따라 부조리 척결 및 군행정 감사결과 유공공무원을 조사해서 상반기중에 4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7월1일 정례직원조회시 4명을 시상하였음. 도부분 감사시 감사 유공공무원 3명을 추천해서 2명이 확정이 되었음.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적발된 내용중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법규연찬미숙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모두가 그사람은 열심히하는 공무원인데 일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용심사 등을 통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김종태 의 원	■소송업무의 급증으로 21건의 소송내역과 소송발생 원인, 향후 대책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3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요공사 심사를 강화하고 이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늘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사전에 나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최상우 의 원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은?	◆지적하신대로 같은 관내에 있는데도 어느 지역은 농로까지 포장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마을 진입로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살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최상우 의 원	■ 고향담배 팔아주기에 개선방법은?	◆고향담배를 소포로 해서 직접 우송하는 것은 절대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인근 제천에 주소를 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송으로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음. 모든 부녀자들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우송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음. 우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런점에 사업이 우려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장용두 의 원	■ 계곡수를 이용한 생수개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계곡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먹는 샘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가 되고 있음. 6월3일자 충청일보에 '계곡물 판매 청신호'라는 보도내용을 봐서 지금 긍정적으로 먹는 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검토되고 있음. 한 시간에 600병 정도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장용두 의 원	■ 단양개발에 실현 가능한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할 수 없는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연도별 또는 시기별 단기계획의 실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 당시의 현실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임. 계획과 현실의 이러한 괴리는 미래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에도 기인하겠지만 개발담당부서의 지나친 과시욕이 원인이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현실분석을 통해서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해서 어느정도 검토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음.	기획감사실 장 류 호 원
	김종태 의 원	■ 소규모 지역문화 행사 발굴 계획은?	◆도담리 도담삼봉의 남한강 뗏목놀이 행사와 어상천 수박축제, 적성면 수양개 선사문화축제 또는 금수산 등반대회 등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 실행을 하면 많은 호응이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고 생각함.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 홍보기법 전환 용의와 개선방안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넘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속에 군·의정은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 등 비중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획, 홍보, 광고 차원으로 홍보방법이 전환되도록 연구 개선해 나갈 방침임. 홍보개선방안으로는 당면한 군정홍보 PR광고는 가급적 지양하고 반회보 등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 홍보토록 하고 군정 및 의정 기획보도를 집중록 보도하겠음. 지역 및 군민이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홍보광고를 적극적으로 전개토록하겠음. 지역주민과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지역의 단합과 결집력을 유도하는 홍보방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김종태 의 원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 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각 시군선수들이 우리군에 와서 1박2일동안 숙박, 식사, 음료 등에 대한 지출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단양을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음. 6월27일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담당과장과 계장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각종 경기장을 점검하였으며, 7월8일에는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문화축제의 준비에 따른 협의를 한 바있음. 7월16일에는 생활체육문화축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각종 경기장 준비와 행사기간동안 문화축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충청북도 생활체육회에서 확보된 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음. 이것은 시상품이라든가 대회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음.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김종태 의 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육상팀을	◆육상팀 운영은 군비와 3사시멘트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입장에서 볼때 계속 육상팀을 운영하여 우수선수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계속 운영할 것인지와 앞으로 단양군청 육상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여 운영할 것인지?	확보와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단양군청 육상팀이 청주에서 거주하고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코치, 선수전원을 단양으로 숙소를 옮겨 7월말까지는 정비하여 단양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선수는 사직처리하고 단양군 초중고등학생과 함께 훈련하여 우수선수 발굴에 한 몫을 하겠음.	
	최상우 의 원	■ 온달산성 관리에 대하여?	◆'96년도에 현상변경 승인을 득해서 0.43ha 벌채하였음. 현재 남아있는 임목은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문화재 관리국에 통보한 다음에 제거하겠으며 온달산성 문화축제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음. 뿌리제거를 하려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근사미를 뿌려서 뿌리를 죽이는 방법을 산림과와 연구검토하겠음. 잔디조성은 '98년도 예산에 현상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음. '96년 이월사업인 산성보수사업은 82m는 '97년 6월10일에 완료하였음. 연차적보수사업으로 '97년도 성곽보수 42.5m는 보수정비 할 계획이며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승인 심의중에 있음.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허수일 의 원	■ 도민체전 입장식 개선 방안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입장식에서 충효와 관광명소, 특산명소의 고장인 우리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예를들어서 선수단 단복을 하지 않고 입장식 요원 50명을 신발해가지고 하나의 입장식 요원화를 시키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볼 방안임.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장용두 의 원	■ 적성면 각기리 선돌을 공원화할 계획, 보존관리할 계획은?	◆향후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 본 사업을 추진한 다음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바꾸는 방법이 사업의 편의상 용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하는 방법을 택할 그런 계획임.	문화공보실 장 한 상 동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자체보존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 지표조사비, 부대시설비 등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음. 중앙고속도로 구간인 기동리 쌀미마을에서 출토된 고인돌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기로 이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것은 회사 자부담원칙에 옮길 수가 있다고 봄.	
	이완영 의 원	■과감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의향은?	◆열심히 민원인을 위해서 애쓴 공무원에 대해서는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음.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요구하는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모든 공직자가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생활민원처리비용 읍·면별 일정액 확보 견해는?	◆생활민원 처리비용 확보문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약 200~3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읍면장들이 관내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공직풍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보상계 신설은 업무의 이원화가 걱정됨.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신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장익환 의 원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 및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상 문제점, 조직개편 이후 자체진단한 문제점, 농촌지도소 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력진단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서 민원택배 같은 것은 일부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읍면장들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민원처리 결과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도시과 수도계와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기능이 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와 중복이 되어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음. 이점은 부서별 협의로 우선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음. 농촌지도소 인력진단문제는 당초에 금년 2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었음.	내무과장 김 동 성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박창수 의 원	■ 인력진단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 인력진단은 내무부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하지를 못하고 있음. 우선 시급한 것이 읍면 직원들의 정원문제, 우선 일선조직 보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음. 연말까지 지침시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박창수 의 원	■ 최근1년간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내역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향후개선 방안은?	◆ 군발탁자 21명중에 18명을 군전입시험 우수자로 발탁을 했고 3명은 소양고사 우수자로 발탁을 했음. 비리 공무원은 직위해제 1명하고 해임 1명으로 인사조치를 했음.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발탁을 해서 우대를 하고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문제 공무원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확행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김종태 의 원	■ 유사업무의 일원화 용의는?	◆ 내무부 지침시달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내무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김종태 의 원	■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방안은?	◆ 선거가 임박해 왔으므로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이 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을 할 것임. 읍면 위임사무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자체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지도관리를 하겠음. 공무원이 출장복명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	내무과장 김 동 성
	김종태 의 원	■ 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배치의 문제점 개선방안?	◆ 앞으로 직제문제를 같이 결부해서 조만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직제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최상우 의 원	■반회보 배부의 문제점은?	◆참만족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함. 읍면 직원들, 군청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자기 담당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음.	내무과장 김 동 성
	김종태 의 원	■ 도담삼봉 민자유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선정 취소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회사인 (주)단양파라다이스가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민자유치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주)금비종합레저와 우리군과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음. 문제점으로는 근간의 행정력 손실과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도담삼봉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분골쇄신하겠다는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향후계획은 현재 계획되어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세세히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알찬 사업이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음.	관광진흥과 장 김 천 유
	김종태 의 원	■ 관광안내지도와 여행책자에 단양관광지가 어느정도 홍보, 수록되었는지, 수집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도와 책자, 향후 계획은?	◆도담삼봉, 고수동굴 등 주요관광지는 대부분의 관광지도에 표기되고 있으며 기업체의 사보 및 각종 잡지 등 전국단위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지가 계제 홍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각종 관광정보에 기존 관광지는 물론 신규개발관광지가 많이 수록되어 우리군의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97년 하반기중 그동안 수록된 자료의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광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음.	관광진흥과 장 김 천 유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각종 관광편익시설 사업의 건실한 시공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97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미비한 부분은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명령하여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내무 행정업무보다는 현장위주로 현장을 순회하며 주재감독하도록 하겠으며 시공회사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음.	관광진흥과 장 김 천 유
	김종태 의 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내 관광시설정비와 예산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자연발생유원지는 소선암공원외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그중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소선암 공원에는 취사장과 화장실, 음수대 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그외의 유원지에는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음.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황정, 가대, 군간유원지에는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통 설치예산 2,29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파된 소선암 유원지 취사장에 대하여 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이 보수하고 있음. 주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도 각종 관광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관광진흥과 장 김 천 유
	장익환 의 원	■국·공유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은?	◆국유지 54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또는 매각한 실적이 한 건도 없고 단지 공유지만 15건이 매각이 되어 있음. 국·공유지가 매각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현재까지 매수관리하고 있는 임대자가 매수신청을 해서 관리계획을 적부심 검토를 한후에 저희군에서 재경원에 관리계획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현재까지 개인이 매수신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태임. 공유지 95건 중에서는 지난 '94년도에 공산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감정까지 했음. 감정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의 판단보다는 비싸서 그런지 15건밖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재무과장 임 형 규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죽령휴게소 관리대책은?	◆앞으로 입찰당시의 보증금 1,500만원은 저희군에 귀속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 계약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약을 못한 상태로 있었음. 현재 자진 건물명도는 할 수 있도록 우선 설득을 시켜본 후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 가처분 신청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추진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건물명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죽령휴게소가 금년간 마무리되면 매각을 검토해서 저희 군재산으로 좀더 낳은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재무과장 임 형 규
	김종태 의 원	■'96 감사시 미활용 행정재산의 활용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매포복지회관은 1987년도에 임대해서 현재까지 민간에 임대 상태에 있음. 가곡복지회관은 현재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보수하고자 했습니다만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후에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음. 매포소방파출소는 1986년도에 건축이 된 것이지만 그동안에 중대본부로 사용을 해왔었음.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후에 임대하도록 하겠고 단성면에 위치한 구농산물검사소도 현재 방치상태에 있음. 이것도 보수후에 임대하도록 조치하겠음. 대강면 상수도는 시설폐쇄는 되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사업부서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시설보존을 할 계획으로 있음. 적성지도소장 관사는 건물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각기농공단지 관리사는 적성 각기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주가 안된 상태로 있음. 농공단지의 업체가 좀더 입주가 되면 바로 입주해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음.	재무과장 임 형 규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지방세 자동이체 계약체결을 농협군지부 1군데만 체결한 이유는?	◆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충청북도 금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임. 앞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재무과장 임 형 규
	김종태 의 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방세 산출내역은?	◆재산세는 매년 5월1일 현재 관내 건축물로서 건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됨.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1㎡당 기준가액 15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검토해서 1㎡당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게 됨. 그다음에 가감산 특례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산출세액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음. 재산세액의 일반세율은 시가표준액의 3/1000이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200만원부터 4천만원 초과까지 6단계로 3/1,000에서부터 70/1,000까지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무과장 임 형 규
	최상우 의 원	■수의계약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률개선 사항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음.	재무과장 임 형 규
	허수일 의 원	■ 유휴재산 현황과 신재원이 될 수 있는 필지의 유휴재산 활용 방안, 미등기 건물의 권리보전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유휴 군유지는 총1,566필지로서 1,016,530㎡에 달하고 있음.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는 하반기중에 필지별 현지조사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경작이 가능한 부분은 대부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음. 등기보존을 위해서 추진상황은 등기의뢰가 6동, 건물대장 정비추진이 34동, 면적정정추진이 8동 모두 현황에 나와있음. 관련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존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재무과장 임 형 규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 등 기 부 와 건축물의 관리 대장 불일치 건. 재산권행사에 미치는영향은?	◆불일치는 약 31.4%인 3.104건이 되겠음. 주민이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등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활용할 때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아 그 틀리는 사항을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후 발급 받는 불편이 있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일제 정리를 하고 있음.	지적과장 진 철 두
	김종태 의 원	■중대한 임무를 일용직을 고용하여 재정비하는 것은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정규직원은 2명뿐으로 각종 토지이동이나 현지조사 또 전산입력. 민원처리등 업무의 형편상 정규직원이 등기부대조 및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일용직으로 하여금 등기부를 대조. 정리하고 있으나 대장정리는 매 필지마다 담당 계장이 그 대조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날인하여서 책임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지적과장 진 철 두
	김종태 의 원	■건축물 관리 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등기를 필한 후 건축물대장 보관청에 등기 필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나 기관이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임. 대책으로는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통 한달에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일부러 가서 찾아 옴. 감정 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때 매년 그 물가변동율, 그 지역의 토지거래 실태. 개발붐등을 감안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바 매년 저희는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약 5~6% 선 이내에서 상향조정 또는 하향할 계획으로 실 거래가의 현실화에 접근하기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97년도 지가를 6월30일자로 결정 공고하였기 때문에 결정된 통지서를 소유자들이 받기전이라도 열람을 하여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병행해서 시행했던 사항임. 앞으로 결정통지문 송부기간과 열람기간의 불일치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지적과장 진 철 두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김종태 의 원	■ 그동안 중앙부처나 도에 사회복지분야 지원대책에 대하여 추진한 내용은?	◆ 중앙부처나 도에 사회복지분야의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비 등의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저희에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경로당 104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현실은 127개소가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음. 미흡하나마 경로당 운영비를 104개소에서 127개소로 지원을 받았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또는 공동작업장도 우리도에서 공동작업장이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군이 4개소 공동작업장 지원을 받았음. 금년에 1개소를 추가 지원을 받고 군예산을 반영해서 가곡면에 공동작업장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복지과 장 양 수 자
	김종태 의 원	■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나 실적은?	◆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 독서실과 취미 오락실, 소집단 활동실, 상담실을 갖추고 청소년실을 개관하였으며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수련실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계획하였지만 전문관리자의 미배치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미숙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실정이었음. 군에서는 청소년 수련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 및 개교 교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수련실을 활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EBS나 DSN등 교육방송중에 인기과목 학습 비디오를 구입하여 상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제를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상담원 배치를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고, 동시에 군민회관내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수련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사회복지과 장 양 수 자

회 차	질 문		답 변	
	의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장용두 의 원	■관내 청소년 탈선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군내 청소년 문제가 법적으로 야기되었던 사항은 없었는지?	◆청소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 단양군 청소년 수련실과 청소년 공부방을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실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들이 수련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97년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군에서는 각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단체,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에게 청소년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반상회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엄정한 법 집행과 지도·단속을 할 계획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제한구역 설정등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조례를 도와 협의해서 제정하고자 함. 청소년 문제가 법적으로 야기되었던 사례는 '97년 7월 현재 단양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총 40건으로 되어 있음.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학생갈취폭력이 2건, 본드·환각제사범이 23건, 청소년 성폭력이 3건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사결과로는 구속 2건, 불구속 38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탈선 방지책은 경찰서와 교육청,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나가겠음.	사회복지과 장 양 수 자
	박창수 의 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과 현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 현 매립장의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포화상태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임. 현 매립장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충발생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성토량을 많이 줄이고 있음. 백광소재의 소석회를 지원 받아 가지고 뿌리면서 소독등을 통해서 성토량을 줄이고 있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고 건설 폐자재로 인한 매립량 증가도 사실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집오수등으로 발생되는 건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받을 수가 없음.	환경위생과 장 조 성 덕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유도하면서 매립량을 줄이고 있음. 신규로 조성될 위생매립 소각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립용량을 줄이면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방침임. 그동안에 캔 선별압축기를 통해서 47톤, PET병 압축기를 통해서 3.5톤, 스치로폴 용융기 1.5톤등도 처리를 해서 자원재생 공사에 판매한 바 있음.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따른 미화요원의 복지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집 의무에 따라 수집되는 것이고 판매된 금액은 세외입금 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기금으로써의 전환은 어려움. 다만 본 수입금에 대해서 일부는 미화요원들의 후생과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김종태 의 원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과 현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 국·도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운 것은 정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따른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됨. 국비 15억원을 받았고, 도비 3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정액부분이라면 2억원밖에는 없음. 그러한 것 때문에 국·도비 확보 관리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도 방문해서 이사장님이하 간부급들을 만났을때도 저희 단양군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대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의 특이성을 부각하면서 국립공원측과 1차 지원 협의를 한 바 있음. 앞으로 국립공원측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국립공원측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비는 부족함.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국·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고자 함.	환경위생과 장조성덕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최상우 의 원	■ 광산작업 차량의 공해방지 대책은	◆사지원지역의 11번 군도가 확·포장이 완료되었음. 문제시 되었던 광석 납석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세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다만 그 광업소가 영세한 업체로써 행정지시한 부분이 쉽게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임. 세륜시설을 하기전에 살수차를 통해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음. 다른 광업소에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그러한 곳도 세륜시설과 살수차를 운행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락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간간히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음. 이러할때마다 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강력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	환경위생과 장 조 성 덕
	허수일 의 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사료화 퇴비화등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을 수 있는 통 또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장비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임. 현 인력으로 1차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작년부터 어상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에 대해서 수차례 운영사항을 살펴보기도 했고 조합장도 만나서 의견도 개진해 보았음. 그곳이 동물성 잔재물을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만드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될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보고자 욕심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상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의 개선내지는 전환부분도 있을 것임.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전문적인 검토를 못해 보았지만 이곳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임. 연구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내에는 그러한 공장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음.	환경위생과 장 조 성 덕

회 차	질 문		답 변	
	의 원	내 용	내 용	소관부서
제66회 임시회	장용두 의 원	■ 자연발생유원지의 여름철 안전관리방안은?	◆ 자연발생유원지를 조성하다보니까 처음에 지정했을때는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했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춰서 그들이 잘 놀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지정했던 부분임. 금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안전관리문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됨.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현 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음.	환경위생과 장 조 성 덕
	이완영 의 원	■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진 이유와 개선대책은?	◆ 도에서 사업계획량을 2ha를 배정해서 금년도 1월31일까지 사업대상자 및 지역을 확정해서 보고토록 지시가 되었음. 이 지시를 받고서 각 읍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이 신청이 부진해서 2차, 3차에 걸쳐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신청량이 1ha밖에 되지않아서 도에 1ha로 보고를 했음. 3월13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공문시달이 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도로부터 4월15일날 결정이 되어 내려와서 4월18일날 군비와 같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읍면에 시달했음. 보조금 교부 결정은 지연의 문제점은 없었음. 그러나 그 사업이 5월말내지 6월초순까지 완료된 뒤의 사업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출해주지 못한 사항이 있었음.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일찍 끝내자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 계획량 1ha중 0.8ha를 6월27일경에 완전 완료되었고 미완료사업 0.2ha는 업자와 납품계획을 7월10일까지 납품하려고 했었으나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작물 수확과 동시에 기한내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임. 완료된 3농가는 매포읍 도곡리 2농가와 벌천리 1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서류를 구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농정과장 박 동 명

제5절 의 정 일 지

의 정 일 지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95. 7. 5	군의회 소회의실	전의원	○ 제2대의원 당선자 간담회 · 상견례
7. 7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4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 제2대의회 의장단 선거 (의장 :이완영, 부의장:최상우)
7. 8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2대의회 개원식
7.10	각급 기관단체	전의원	○ 관내 기관단체 방문
7.20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0회 임시회 개회
8. 1	청주시의회	이완영 최상우	○ 시·군의장단 협의회
8. 2	충주 KBS	이완영	○ KBS 녹화 참석 (남한강 초대석)
8. 4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1회 임시회 개회
8.22	군의회 소회의실	전의원	○ 지역현안문제 협의 간담회
9. 3	영춘국민학교	전의원	○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참석
9. 4	의원사무실	전의원	○ 명문고 육성 및 지역교육 환경 개선 방안 협의 간담회
9.11	의원사무실	전의원	○ 결산검사 계획 협의 간담회
9.12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2회 임시회 개회 ·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
9.14	매포읍	이완영	○ 매포읍 도서관 건립 기공식 참석
9.18	의원사무실	전의원	○ 제53회 임시회 협의 간담회 · 지역농업센타 추진실적 청취 설명 : 기획실장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9.20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3회 임시회 개회 · 행정재산 실태조사 특위 · 수해복구사업장 조사특위
9.25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인공폭포 조성 및 삭도시설 계획 협의 간담회
9.30	군부대 연병장	이완영 박창수	○ 협회장기 차지 축구대회 참석
10. 2	상진 군부대	전의원	○ 국군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
10. 3	매포국민학교	이완영	○ 매포읍민 체육대회 참석
10. 5	군청 상황실	이완영	○ 군방위 협의회 참석
10. 6	성신양회(주)	전의원	○ 기업체와의 간담회 · 공장현황 및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10.16	군의회 소회의실	전의원	○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간담회
10.17	군부대 운동장	전의원	○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참석
10.17	현대시멘트(주)	이완영	○ 현대시멘트 노사화합체육대회 참석
10.19	음성,괴산	이완영 최상우	○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
10.20	매포국민학교	이완영	○ 충북지정 교통학교 시범행사 참석
10.21	단양경찰서 회의실	전의원	○ 제5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10.21	제천시청	이완영	○ 제천.단양 청소년 선도위원 자연보호 캠페인 참석
10.22	단양국민학교	전의원	○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참석
10.25	군의회 의장실	전의원	○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 광진구 의회 : 8명 방문
10.26	군청 2층상황실	전의원	○ 충북 시군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 · 의장단 : 13명
10.27	군청 2층상황실	이완영	○ 목요회 참석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10.28	단양국민학교	전의원	○ 신단양 이주기념 읍·면 화합대 잔치 참석
10.29	어상천면	허수일	○ 어상천면 체육대회 참석
10.30	의원사무실	전의원	○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협의 간담회
10.31	군부대 운동장	전의원	○ 농천지도자 협의회 체육대회 참석
11. 2	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1회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 주최 : 단양군의회 · 참석 : 관내 경로회원 200명
11. 3	도의회	김종태 최상우 허수일	○ 고수재 도로 침하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청원서 제출
11. 8	군청 대회의실	김종태 장용두	○ 제1회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참석 · 군의회 의원 발표자 2명 · 군산하 공무원 발표자 24명
11. 9	군부대 운동장	이완영	○ 제33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
11.20	서울 평통사무처	이완영	○ 평통문화예술분과 위원회 참석
11.22	옥천군의회	최상우	○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
12. 7	한일 연수원	전의원	○ 특별정신 교육 참석
'96. 1. 1	단성면 충혼탑	이완영 장익환	○ 충혼탑 참배
1. 5	단양관광호텔	전의원	○ 신년 교례회 참석
1. 5	매포읍 농협	이완영	○ 매포읍 청년회장 이취임식 참석
1.18	구인사 총본산	이완영 최상우	○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봉축 법요식 참석
1.16	각 읍면	전의원	○ 새해 영농설계 교육 현장 참석 · '96.1.16~2.9
1.25	군청 상황실	이완영	○ 목요회 참석
1.29	어상천면사무소	전의원	○ 주민숙원사업 해결 간담회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1.29	대전국도관리청	이완영 장용두	○ 수몰지역 지원사업 협의
1.31	수안보담배인삼 공사 수련관	이완영 최상우	○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
2. 3	단양군노인회관	전의원	○ 노인회관건강관리실 개원식 참석
2. 7	충주댐관리 사무소	장익환 박창수	○ 충주댐 관리사무소 방문 · 단성면 비수몰지 매립방안 협의
2.12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의원간담회 · 제56회 임시회 소집일정 협의 · 각종 조례안 제안설명 · 성신양회 증설에 따른 설명청취
2.15	단성면 가산리	이완영 장익환	○ 도 명예 연구소 현판식 참석 · 버섯재배 연구소 견학
2.24	각 읍면	전의원	○ 경로당 방문 · 경로당 운영현황 파악
2.26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의원간담회 · 성신양회 공장증설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문제점 협의
2.29	내무부	박창수 장익환	○ 월악산국립공원축소 협의 · 내무부 차관 및 관계 공무원
3. 5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6회 임시회 개회 · 기간 : '96.3.5 ~3.9 · 업무보고 청취
3.14	충주MBC	이완영	○ 의정운영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3.15	서울한강사업본부	박창수 김종태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부 방문 · 영월댐 건설에 대한 현황청취
3.18	의원사무실	전의원	○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협의 · 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
3.19	대전 수자원공사	박창수 김수영	○ 수자원공사 방문 협의 · 영월댐 건설에 따른 현황파악
3.25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의원간담회 · '96년도 의료보험조합 운영 계획설명 청취 · 단양마늘 특성살리기 방안 협의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3.27	환경부,건설부	박창수 허수일	○ 지역현안해결 중앙부서 방문 · 영월댐 건설에 따른 대책마련 및 현황파악
3.27	서울 평통사무처	이완영	○ 평통사무처 회의참석
4. 1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의원 간담회 · 영월댐 건설에 대한 대책협의 · 예비비지출승인 협의(기획실장)
4. 2	청주시관광호텔	이완영 김종태	○ 민주평통 자문회의 간담회 참석 · 남북관계 현안 협의
4. 8	의원사무실	전의원	○ 의원간담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재무과장)
4.20	단양군민회관	전의원	○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
4.22	군부대	전의원	○ 제26주년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4.28	단양고교	전의원	○ 단양동문기별 체육대회 참석
4.29	어상천면 임현리	이완영 허수일	○ 어상천면 게이트볼장 준공식 참석
5. 2	군부대 연병장	전의원	○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5. 3	단양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4회 동양일보 테니스대회 격려
5. 4	단성면 장회리	이완영 장익환	○ 두향제 참석
5.11	군청 대회의실	이완영	○ 제51주년 근로자의날 행사 축하 · 근로자 표창 : 7명
5.15	음성군의회	최상우	○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참석
5.17	의원사무실	전의원	○ 김포군의회 의원 래방 및 간담회 · 래방인원 : 의원8,관계공무원
5.21	각 읍면	이완영 최상우 김수영	○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
5.25	서울	이완영 장익환 박창수 김종태	○ 재경 단양군민회 참석 · 지역발전 방안 협의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6. 4	서울 세종문화회관	이완영 김종태	○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회 참석
6. 7	어상천면 대전리	이완영 허수일 박창수	○ 단양마늘 출하 촉진대회 격려
6. 8	청주	전의원	○ 도민체육대회 선수 격려
6.13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58회 임시회 개회 · 의정모니터 위촉
6.25	군민회관	김수영 최상우	○ 제46주년 6.25자유수호 군민대회 참석
6.27	대전국민생활관	이완영 장용두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 참석
7.10	환경부.건설부	박창수 김수영	○ 지역현안문제 해결 관계기관 방문 · 건의서 전달 및 관계관 면담
7.29	충주시 농협회의실	전의원	○ 남한강 포럼 참석
8. 2	강원도 철원	이완영 김종태	○ 수해지역 방문 위문
8.14	영춘면 상리	이완영 최상우	○ 영춘지역 방문 · 느티양수장 모타고장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협의
8.16	대강면 두음리	박창수	○ 죽령 과수집하장 이전 준공식 참석
8.22	경찰서 상황실	전의원	○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 음료수등 전달
8.23	다리안국민관광지	전의원	○ '96하계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관계자 격려
8.29	미국.캐나다	전의원	○ 의원 해외연수 · 기간 : 8.29 ~ 9.9
9.16	여성회관	전의원	○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9.18	교육부	김종태 장익환	○ 교육청 통폐합 반대 건의 및 대책협의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9.21	군청 회의실	전의원	○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9.21	대강면 올산리	전의원	○ 단양축협 창립10주년 기념식 참석
10. 8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60회 임시회 개회 · 기간 : 10.8~10.17 · 사업장 현지조사특위 · 조례안 심사특위
10.17	고수대교	이완영 김수영	○ 관광협의회 참석 · 관광활성화 방안 협의
10.20	영춘면 온달산성	전의원	○ 제1회 온달산성 문화축제 개막식 참석
10.22	군청 대회의실	전의원	○ 안보정세 보고회 개최
10.23	의원사무실	전의원	○ 서울 성동구 의회 의원 래군 · 인원 : 의원 및 직원 25명
10.24	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7회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가선수 격려
10.29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61회 임시회 개회 · 기간 : 10.29~11.2
10.30	적성초등학교	장용두	○ 적성면 화합체육대회 참석
10.30	어상천면 율곡리	허수일	○ 문화생활관 개관식 참석
11. 2	죽령 휴게소	이완영 박창수	○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기공식 참석
11. 5	전북 완주군	이완영 김종태	○ 수자원 부존지역 대책 전국 사례 발표회 참석
11. 8	단양 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2회 의장기 차지 경로게이트 볼대회 개최
11. 9	단양 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34회 소방의 날 행사 참석
11.11	단양 공설운동장	전의원	○ 제1회 단양군농업인 연합대회 참석
11.13	가곡 초등학교	이완영 김종태	○ 가곡면민 화합체육대회 격려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11.18	춘천시의회등	이완영 허수일	○ 선진지 비교견학 · 방문지 : 춘천시의회,괴산군의회
11.20	전북 무주군	김수영 장익환 김종태	○ 선진지 비교견학 · 방문지 : 전북 무주군의회
11.25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62회 정기회 개회 · 기간 : '96.11.25~12.28
12. 4	청주 시민회관	이완영 장용두	○ '96충북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12.10	민주평통사무처	이완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12.11	서울 타워호텔	김종태	○ '96유공평통자문위원 시상식
12.12	서울	박창수 장용두 김수영	○ 시멘트3사 공장장과의 간담회
12.13	국회,교육부	박창수 최상우	○ 지역현안문제 협의
12.13	청주 관광호텔	이완영 김종태	○ '96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
12.18	민주평통사무처	이완영 허수일	○ 민주평통운영위원회 회의
'97. 1. 8	매포농협	이완영	○ 제10대 청년회장 이취임식
1. 6	단양관광호텔	김수영 이완영 김종태	○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1. 7	구인사	최상우	○ 상월원각대조사 탄신봉축법요식
1.10	단양읍 회의실	김수영 허수일	○ '97의용소방대 시동식
1.20	청주관광호텔	김종태	○ 민주평통시군협의회장 간담회
1.24	전원회관	김수영 최상우	○ 자유총연맹군지부장 이취임식
2.5	군청 상황실	김수영 장용두 김종태	○ 단양장학회 이사회 참석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2.25	수양개유적전시관	김수영	○ 음식업조합단양군지부 정기총회 · 대의원 60명 간담회
2.26	서울	김종태 장용두	○ 제천시 민자유치 설명회 참석
2.27	단양관광호텔	전의원	○ 단양라이온스중앙회 초청리장 위로연
3. 9	왕릉숯불갈비	김수영 김종태	○ 민주평통 정기총회 · 현안사항 협의
3.11	충주댐관리사무소	전의원	○ 수중보건설에 따른 설명회 참석 · 지역현안문제 토론
3.12	청주로얄관광호텔	김수영	○ 신단양개발이사회 정기총회 참석 ·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 현안문제 협의
3.17	한일시멘트대강당	이완영	○ 한일시멘트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 · 노사안정 및 지역현안 토론
4.10	문화체육센타	전의원	○ 단양문화체육센타 개관식 · 제1회 단양군배구협회장기 배구 대회 선수단 격려
4.10	군청 상황실	김종태 장익환 최상우	○ 수중보 건설 용역추진 설명회 · 수중보 건설등 당면현안 협의
4.19	군민회관	전의원	○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장애인 복지향상 기관단체 노력
4.22	공설운동장	김수영	○ 새마을 27주년 기념행사 · 경제난국 타개 앞장 노력당부
4.23	대회의실	이완영	○ '97통일정세 보고회 · 통일정세 보고 및 통일염원
4.25	단양게이트볼장	전의원	○ 제8회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 지역구 선수단 격려
4.26	군부대	전의원	○ 충청일보사장기차지 축구대회 · 지역화합 및 선수단 격려
4.28	군청 대회의실	전의원	○ 범군민추진위원회 발기총회 · 수중보 건설등 지역현안 해결협의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4.29	적성면 기동리	전의원	○ 경찰 권총사격장 개장식 참석 · 경찰노고 치하, 민생안정 당부
4.29	대전수자원공사	전의원	○ 수자원공사 방문 · 수중보건설 및 제내지 활용협의
5.17	제천공설운동장	김수영 장익환	○ 한국노총 노사화합 체육대회
5.22	단양군민회관	전의원	○ 지역현안문제 해결 범군민궐기대회 · 수중보 건설등 충주호 관련현안 해결
5.29	단양군민회관	김수영 김종태	○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석 · 축하 및 마늘아가씨 심사
6. 1	소백산 연화봉	김수영	○ 소백산 철쭉제 참석 · 시산제 및 철쭉아가씨 선발
6. 3	교통건설부	김수영 장익환 김종태	○ 지역현안문제 협의 · 수중보 건설에 따른 협의
6. 4	어상천 대전리	김수영 최상우	○ 제10회마늘출하 촉진대회 참석 · 출하농민 및 관계관 격려
6. 9	다리안국립공원	전의원	○ 의원,군수,기자와의 간담회 · 군정협의
6.10	각 읍·면	전의원	○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방지
6.18	서울 역도경기장	김수영	○ 전국기초의원 합동세미나 참석 · 지방자치 발전방향 토의
6.23	군청 상황실	전의원	○ 상진군부대 개발사업 설명회 · 군부대 개발방향 협의
6.23	의원사무실	전의원	○ 농협합병 설명 간담회
6.27	군청 대회의실	전의원	○ 범군민추진위원회 3차연석회의 · 범추위 활동계획 협의
7. 3	제천 여성회관	전의원	○ 의원합동 세미나 참석 · 의안발의 및 행정사무감사 요령
8. 8	어상천초등학교	김수영 이완영	○ 어상천 수박축제 참석 · 참가농민 격려 및 품평회
8.12	농촌문화체육센타	김수영 김종태	○ 볼링센타 개장식 참석 · 축하 및 시구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8.16	문화체육센타	김수영 허수일	○ 도지사기 차지 배드민턴대회 · 참가선수 격려
8.18	가곡 가대리	김종태	○ 치어 방류 현장 방문 · 치어방류 및 관계관 격려
8.19	어상천면 임현리	허수일	○ 임현1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 · 축하행사 및 지역민과 환담
8.21	영춘면 보발리	최상우	○ 현장민원처리 현장 방문 · 관계공무원 격려
8.26	대강면 방곡리	김수영 박창수	○ 방곡도예원 개관식 참석 · 개관축하 및 관계자와 환담
8.29	단성 파크호텔	전의원	○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회 · 음료수 제공 및 격려
9. 2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67회 임시회 개회 ·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9.8~9.12	각 읍·면	전의원	○ 생활개선 시범사업 참석 · 사업설명 청취 및 주민과 환담
9.23~9.26	춘천시,인제군,양구군	김수영 김종태 장익환	○ 댐주변 지역 방문 · 댐주변 지역 현안문제 및 대처 방안 파악
10.2	단양군 보건소	김수영	○ 군민건강증진센타 개원식 참석 · 군민보건 향상에 노력 당부
10. 3	매포초등학교	이완영	○ 제6회 매포읍민화합 체육대회 · 각종 행사 참석 및 격려
10. 6	문화체육센타	전의원	○ 지역현안 해결 염원 헌혈운동 · 지역현안문제 해결 기원
10. 8	어상천면	허수일	○ 문화생활관 개관식 · 개관 축하 및 주민과 환담
10. 9	가곡중학교	김종태	○ 가곡면민화합 체육대회 · 지역화합 및 주민환담
10.11	영춘중학교	최상우	○ 단양-영월군 기술인 체육대회 · 기술공무원 격려 및 행정교류 도모
10.15	충주시의회	전의원	○ 의원연찬회 참석 · 결산검사 및 예산안 심사방법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10.15	어상천면 게이트볼장	전의원	○ 제3회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 지역구 선수 격려
10.20	군청 상황실	전의원	○ 단양장학회 이사회 참석 · 장학회 운영방안등 협의
10.21	경찰서 회의실	김수영 허수일	○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 경찰공무원 격려
10.22	매포읍 영천리	이완영	○ 매포읍 구판장 개장식 · 개장 축하 및 지역주민 환담
10.25	군부대 연병장	김수영 장익환	○ 제14회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 축하 및 선수단 격려
10.29	소백산 비로봉	김종태	○ 여성등반대회 · 등반대회 참석 및 등반 격려
10.31	공설운동장	전의원	○ 소방의 날 체육대회 · 소방관계자 격려
11. 2	온달동굴	김수영 최상우	○ 온달동굴 개장식 · 개장축하 및 동굴관람
11. 6	충주 상공회의소	김수영	○ 충주상공회의소 간담회 ·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협의
11.10	군의회 본회의장	전의원	○ 제69회 임시회 개회
11.13	문화체육센타	김수영	○ 단양적십자봉사회 나눔행사 · 관계자 격려
11.18	군청 상황실	전의원	○ 소수력발전소 건설타당성 중간보고
11.21	단양관광호텔	전의원	○ 전국댐주변 시·군·구의회 의장회의 · 댐주변 현안문제 협의 · 전국대책위원회 구성
12. 1	군청상황실	전의원	○ 행정사무감사 실시 · 특별위원회 운영
12.19	여성회관	김수영	○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 · 자원봉사자 격려
12.23	임협 직판장	김수영	○ 임업협동조합 직판장 개장식 · 개장축하 및 간담회

년월일	장 소	참석의원	내 용
12.26	단양 군민회관	전의원	○ 새마을 지도자 대회 · 새마을 지도자 격려 · 지역발전에 협조 부탁
'98.3. 2	군청 상황실	전의원	○ 도담관광종합센타건립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 경청 및 개발방향 협의
3. 5	단양 군민회관	전의원	○ 농업경영인 결의대회 및 연시총회 · 농업발전 방향 토론 · IMF극복을 위한 농업인 결의
3. 7	단양소방서	전의원	○ 의용소방대원 연합회의 참석 · 의용소방대원 노고 치하 · 봄철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 당부
3.20	단성면 회의실	장익환 박창수	○ 월악산국립공원축소 대책회의 · 대책위원회 결성 · 국립공원구역 축소 결의
4.10	군부대	전의원	○ 지상합동훈련 참관 · 유사시 합동대처 능력 향상협의
4.10-4.13	각 읍면	전의원	○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 · 농업발전방향 논의 · 지역 농업인 격려
5.11	건설교통부	장익환 박창수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 · 주민서명운동 건의서 전달
5.12	가곡면 어의곡리	김종태	○ 산나물 채취관광열차 안내 · 관광객 안내 및 특산물 홍보
6.10	각 읍·면	전의원	○ 장마철 재해지구 조사 · 재해지구 및 고속도로 현장 방문 · 재해 위험지구 재해예방 부탁
6.19	각 읍·면	전의원	○ 주민숙원사업 파악 · 지역구별 주민숙원 사업파악 · 지역현안 해결 도모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충 청 일 보

1996年 3月 6日 (水曜日)

丹陽 개발 촉진 제외 "반발"

단순지표 의한 낙후지역 외면 不合理

郡의회 지정요구 "請願"

충청매일 1996년 4월24일 수요일

단양군의회 임시회 29일까지

【단양】 단양군의회(의장 李完永)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와 환경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사무 조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 군세감면조례,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조례를 상정, 처리한다.

또 96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매포도시계획시설(도담삼봉 유원지)결정, 도시지역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丹陽郡의회는 지난 22~29일까지 열린 제57회 임시회기간중 2개의 특위를 구성,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구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도로확·포장공사장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丹陽郡의원들>

발로 뛰는 議會 주민 든든해라

丹陽郡의회 특위 현지조사활동

丹陽郡의회(의장 李完永)가 발로 뛰는 의회상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제

지난 22일부터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 丹陽郡의회는 이날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환경시설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곧바로 현지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의장을 포함해 의원이 8명뿐인 郡의회는 이 때문에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도 모든 의원이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원수가 많은 市·郡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의원들의 노력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부실시공 사전예방 활동 펼쳐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도 확인

이번 회기동안 郡의회가 구성한 2개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철저한 현장 방문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28일까지 현장확인만 꼬박 7일이 소요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의원들은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벌쳤다.

환경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차昌洙의원)는 무두 77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중 천동산업장을 비롯, 10개업체와 환경기초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환경오염행위 방지에 적극 나서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 단양론 천동뽀 한일유스호스텔의 PVC하수관이 약50m가량 지상으로 노출된 점과 하수구의 최종 방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매포론 어의곡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역을 매일 한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金鍾泰의원)의 활동은 수해복구 사업 및 각종사업장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면서 안전성 및 부실시공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총 보목공사 1백58건 중 수해복구 12건, 도로 확·포장 7건, 주민편의시설 2개소, 기타 사업장 1건 등 22건을 무작위 표본선정해 조사에 나선 이 특위는 가곡面 보발2뽀 용소동 소하천 복구공사 등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이 특위는 또 대강面 덕촌뽀 수해복구공사 등 일부 사업장에서 석축기초가 내려앉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확인에 나선 郡의회 특별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외에도 건실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주문하기도 하는 등 의회가 질타만을 앞세우는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엿보여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丹陽=丁喜浩기자>

동양일보 1996년 4월25일 목요일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군세감면조례등 안건 처리

【단양】단양군의회(의장 이완영)는 22일 제57회 임시회를 개회,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내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환경시설물 관리실태 특위를 구성해 특위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군의회는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군세조례, 군세감면조례,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조례등 5개조례와 올해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매포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의견제시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익용 차장)

1996年 4月 30日 (火曜日)

충청일보

丹陽郡의회 폐회 조례안등 4건 의결

【丹陽】丹陽郡의회(의장 李完永)는 29일 제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 丹陽郡 주민등록사무의 읍·面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郡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郡의회는 또 지난 22~28일까지 활동한 △주요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金鍾泰의원) 결과보고서 △환경시설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차昌洙의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곡面 보발2뽀 용소洞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상당수의 사업장이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일부 부실시공 우려 사업장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경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단양론 천동뽀 한일유스호스텔의 하수관이 지상으로 노출되고 방류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환경시설물의 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조례안 중 郡 간이상수도 관리 운영조례안은 郡수도급수 조례와의 상충으로 인한 중복을 이유로 유사조례와의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 청 일 보 1996年10月19日

부실 工事 척결 '헛구호'

전체 30%가 각종 하자

丹陽郡의회조사 관계기관 감독 강화돼야

각종 공사현장에서 업체 한 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공사가 부실시공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행정 감독권발동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丹陽郡의회 주요사업장 현지조사특위는 지난 10~16일까지 3천만원 이상의 토목공사장과 1억원이상의 건축공사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郡의회는 1백48개 해당 사업장중 분석대상 5곳외 모두 40개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벌였는데 30%에 해당하는 12개 사업장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구체적인 하자내용은 가로폭 보강불량 소화전 수 부족 해빙구조의 경우 불량으로 판정되는 등 5건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郡의회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관계 책임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郡에 촉구하기로 했다.

〈丹陽=張鳳鎬기자〉

동 양 일 보 1996년 11월6일 수요일

지역개발세 시·군세 전환 건의

단양군의회 세원도 대폭 확대 요구 내무부 제출

【단양】단양군의회(의장 이완영)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고 세원도 대폭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내무부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지난 2일 제61회 임시회를 열고 단양지역이 지하자원 채취과정의 자연훼손 등 환경파괴와 제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로파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피해보상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고 세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에 있어 도와 군간의 형평성과 논리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하자원과 같은 부존자원은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이에대한 과세권이 없는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피해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항구적인 근본대책으로 지역개발세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개발세를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존치하는 것은 재정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했다.

지하자원의 세율과 과세대상도 현재 채광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은 반대급부로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현실화 하고 과세대상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발전용수의 과세대상도 현행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에만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까지 과세범위를 확대해 줄것을 희망했다.

발전용수의 세율도 발전에 이용된 물 10㎥ 1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세율은 다른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세율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기자〉

충청매일

1997년 5월18일 일요일

「지역현안 汎군민委」 결성

단양군 수중보 건설·호반도시 건설 촉구

【단양】지난 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댐 관련 지역현안에 봉착한 단양군이 수자원공사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단양군의회의장)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군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단양군민회관에서 결의대회및 출정식을 갖고 군민회관에서 부대 앞에서 수중보건설 가행진을 벌이며 상진군 기원제를 갖는다는 것.

주민들이 수중보및 댐 관련 지영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군민의지를 결집, 표출해 대외적으로 단양의 실상을 알려 수자원공사와 정부당국이 뒤돌게나마 신단양 이주시 약속한 호반도시 건설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중보 건설및 수자원공사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데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炳鎰기자〉

동양일보 1997년 5월20일 화요일 〈음 4월14일〉

"생존권 보장하라" 단양군 실력행사

수중보 설치 강력 요구

22일 총궐기대회 개최

【단양】단양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인 수중보 건설을 위해 단양군민들이 총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단양군은 그동안 정부가 충주댐 건설 당시 전국 제일의 호반관광도시를 건설해 주겠다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과 진정, 건의, 호소 등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기대와 정서에 상반된 충주댐 운영으로 단양지역의 피해가 날로 가중돼 왔다.

군은 이에따라 군의회와 각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자원 관련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영)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현안 해결 노력에 들어갔다. 수자원 관련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는 먼저 오는 22일 오전 10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따른 정부의 호반도시 건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수중보 설치 및 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군민의 수중보 건설 및 영월댐 건설 계획 반대 의지를 결집시키고 대외적으로 단양의 실상을 알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건의나 청원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민의 힘을 모아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단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중보 설치 및 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기자〉



◇범군민 추진위원들이 18일 단양읍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의대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중부매일신문

1997년 7월22일 화요일

세금을 내돈처럼…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단양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활동을 벌인 단양군의회 장익환특위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한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 부실시공이 많다」며 개선책을 군에 요구.

장위원장은 「관급공사는 대충해도 준공검사가 난다는 시공업체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급공사가 다른 공사의 모델로서 정착되도록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

특히 장위원장은 「일부 우선순위를 무시하거나 과다설계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한뒤 「공무원은 군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 〈단양〉

중부매일신문 1997년 7월22일 화요일

관급공사 상당수 예산낭비

단양군의회 조사결과 현지여건반영미흡·민원유발등

단양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관내 주요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각종 관급공사의 상당수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는등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공사의 추방운동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가 예전보다는 훨씬 견고하게 시공됐으나 예산낭비 요인배제와 현지여건반영등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단양군의회가 지난 6월 10~21일까지 관내 6백 33개 사업자중 무작위로 선정한 69곳을 조사한 결과 31개 공사장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양읍 기촌리 국궁장 설치공사의 경우 부대사업인 진입로 포장공사를 먼저하는 바람에 주사업을 하기 위한 중장비 출입으로 입구부터 파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상천면 임현3리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석축을 훼손하고도 복구하지 않는 등 주변환경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양읍 심곡리 옹벽설치공사는 현지 실정과 설계가 맞지 않아 추가공사가 요구되는등 예산낭비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의회는 5년 18일 결산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 시정을 요구했다.

정병상 / 단양

중부매일신문 1997년 11월 22일 토요일

전국 5개 시도 의장단 회의

댐관련 제도개선 촉구

전국단위 투쟁방식 채택 의의
현안논의 상설기구 구성 합의

충주댐건설대책협의회(의장 김수영)주최로 열린 「전국 댐관련 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 회의」는 그동안 댐주변 자치단체간 개별투쟁에서 전국단위 투쟁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자치단체 5개 시도의장단은 6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해 자치단체간 댐과 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립된 상설기구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상설기구의 설립과 기구를 현 집행부에 입법과제로 하고 각종 댐건설로 야기된 댐주변지역의 피해문제와 현의주의적인 댐운영 방식탈피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결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댐과 관련 자치단체의 현안문제는 이번에 구성되는 상설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는 댐과 관련 각종 현안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의 비용분담및 역할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논쟁은 물론 댐주변 지역의 건의사항이 제각각 이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건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지역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는 국회가 댐주변지역 지원과 재원의 국비 출연, 댐관련 자치단체등이 상당수 반영된 법률안이었으나 댐주변 자치단체간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전국 댐주변 의장단모임은 앞으로 댐과 관련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조율해 정부를 상대로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댐문제가 전국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병상 / 단양

동양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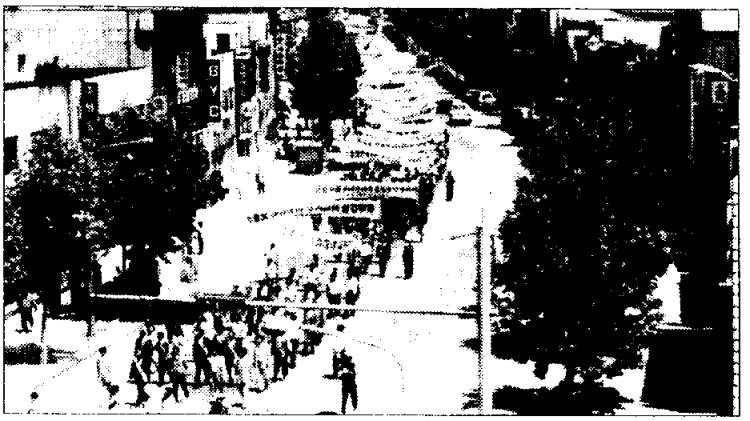
1997년 12월 6일 토요일〈음11월 7일〉

'97 결산

단양군의회

생활현장 밀착 현안해소 총력

행정집행 합리화 실현



◇단양군의회 주도로 지난 5월22일 개최한 범군민 결의대회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을 들었다.

단양군의회는 올해 한번의 정기회와 7회의 임시회를 운영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군민불편 해소에 노력한 것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에도 어느해보다 많은 힘을 기울였다.

올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는 조례안 처리 28건, 특별위원회 운영 28회, 건의문 채택 2건 등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수중보 설치 등 수자원공사 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2000여명이 대거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지난달 21일 전국 댐 주변 지역 시·군·구의회 의장 및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양 관광호텔에서 가진 회의에서는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및 제도 개정을 위해 전국 각지의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효과를 얻기도 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특위, 수자원공사관련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등 28회 걸쳐 운영한 특위활동은 군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깊이 있게 접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에서는 불합리한 공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 각종 공사가 견실하고 안목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올해 있었던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효과성, 예산의 적정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배분해 줘 예산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지난달 25일 개회된 정기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행정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도 병행, 군의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 일부 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나 권위적인 자신의 명예만을 내세웠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의회가 개선해야할 숙제로 남기도 했다. 〈단양=이성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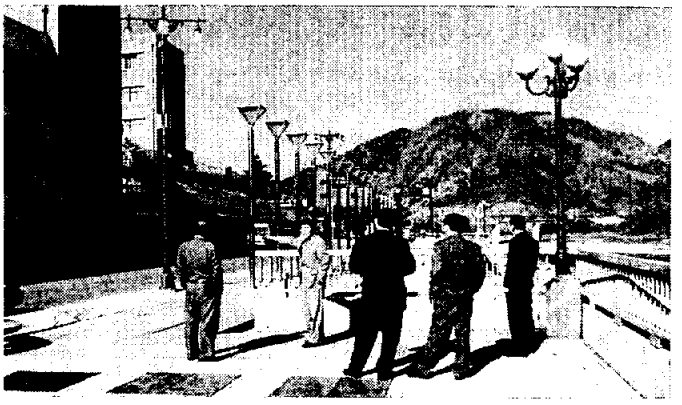
1998년 3월 5일 목요일 서울신문

공공시설물 절전 유도 특위 구성

{金東鎭기자}단양군의회는 계속되는 구제금융시대에 자칫 낭비되기 쉬운 공공시설물의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태를 조사했다.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한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金鍾泰)는 지난달말 5일에 걸쳐 현지조사를 벌였다.

의회탐방 단양군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가로등의 전기이용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 〈金東鎭기자〉

전기이용실태 점검, 요금 절약 방안등 제시

낭비요인 제거…郡예산 알뜰운영 적극 독려

비록 전기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실천과제이기는 하나 전기운영 및 관리실태를 분석,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해 알뜰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군살림을 감독하는 의회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특히의 주요 점검내용은 △심야시간대 전기활용 여부△대행수수료 납부의 적정성과 자체인력 활용방안△필요이상의 계약용량△기본요금만 지출되고 있는 공공시설물△기본요금 절약방안 등으로 방만한 전기관리사례와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군의회는 현장점검과 전문가의 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관련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 전기수용 신청및 관리업무가 이원화돼 체계적인 관리가 않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많은 전기관련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소속직원의 관련 법규숙지및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또 직제정원 조정시 전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경에서 절약된 전기관련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화방안을 공공시설물별로 조목조목 밝혔다. 지난해 1억5천5백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간 상수도정수장을 계절별, 시간대별 소비량을 분석, 심야시간대를 이용하거나 배수지물 부족시는 주간및 저녁시간대의 값싼 전력요금을 적용하면 2천5백여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7군데 공공시설에 3천3백여만원이 소요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무와 관련 군청 전기직공무원 3명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할 경우 자체인력 활용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대덕 에너지기술연구소와 수력시설전문업체의 현지조사를 통해 온달동굴과 수질처리장, 상수도 배수지에서는 풍부한 수력을 이용한 자가 전력생산의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사업추진을 권하고 있다.

복사기와 컴퓨터, TV 등 615대의 행정장비 절전방안에 대해서도 군의회는 플러그뽑기의 철저한 이행으로 연간 1백24만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천8백여개의 가로등 요금체계와 관련 군의회는 절전을 위해 가로등 격등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은 종전과 같이 내는 실태를 고발하고 한전이나 중앙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동양일보

1998년 5월9일 토요일 〈음 4월14일〉

단양군의회, 폐기물처리장 건립 관련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요구

【단양】단양군이 추진중인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 계획과 관련 단양군의회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것을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단양군은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매포읍 하괴리 산 30번지 일대 11만1000㎡ 부지에 13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위생적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은 새로 조성되는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건조 및 사료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상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가 힘들 것으로 판단, 수자원공사에 사업비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여름 장마시 충주호로 각종 쓰레기가 유입,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단양군의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호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쓰레기를 수거 매립 또는 수거하기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만큼 사업비의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양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충주호 수질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자원공사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충주호 부유물 소각처리에 필요한 소각로 시설 예산만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양군은 현재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30억여원중 34억여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가 단양군의회의 건의대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기 기자〉

충북일보

1998년 5월 9일 토요일

폐기물처리시설비 지원 요청

단양군의회 건의안 채택… 수자원공사에

단양군의회는 8일 폐회된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 보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충주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단양군은 여름 장마때 강원도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물로 충주호 일대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해 관광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비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에 수거된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민원발생의 소지마저 안고 있어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1백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또 새로 조성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매립시설만이 아닌 1일 10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현대식시설로 계획되고 있어 완공시 충주호 수질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자원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단양/성열창기자